

第144回國會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6 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12月7日(水)

場 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145號室)

議事日程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

審查된 案件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 1面

(10時 開議)

○委員長 文東煥 議席을 整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證人들의 證言을 듣겠습니다.

證言順序는 鄭鎬溶證人과 尹興禎證人順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鄭鎬溶證人 證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證言을 듣기 전에 關聯法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에서의 證言 · 鑑定등에 관한 法律에는 證人이 同法을 위반하면 處罰할 수 있는 規定과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證言內容에 대하여 不利益處分을 받지 않는다는 保護規定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證人宣誓가 있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證人宣誓)

○委員長 文東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證言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長으로서 한마디 勸告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人間事에는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설때가 있고 앓을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말하고 行動할 때는 때를 놓친 俳優가 무대에 뛰어

드는 것과 같아서 觀客들의 웃음을 사기가 쉽습니다.

(「설교요 뭐요」하는 이 있음)

(場內騷亂)

조용하세요.

勸勉하는 것이예요.

(「會議進行해요!」하는 이 있음)

會議進行합니다.

인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때가 지나가고 다른 때가 오므로써 歷史는 發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價値가 바뀌고 思考가 바뀝니다.

삶의 자세가 새로워지고 制度가 變化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때도 이런 轉換期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힘이면 제일인 줄 알았지만 오늘에서는 人間愛에 基礎한 合理性이 제일입니다.

어제까지는 총칼이 가장 유효한 도구였음니다라는 오늘에는 대화를 통한 협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轉機에 처해서는 새 것에 대한 깊은 洞察力과 올바른 認識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자기 反省과 옛 것을 清算하는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清算은 個人的으로도 이루어져야 하고 한 나라로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의 동 터오르는 和解의 時代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끄러웠던 과거를 清算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清算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모두가 後悔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것을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歷史 앞에서 證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鄭鎬溶證人에 대해서 民主正義黨에 配定된 時間이 120分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民主正義黨의 金吉弘委員에서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敏燮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말씀하세요.

○李敏燮委員 李敏燮委員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 國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聽聞會를 하면서 이렇게 會議冒頭에 우리 所屬委員들이 말을 하는 것은 이 委員會가 公正하고 客觀性이 있는 條件下에서 우리가 真相을 調査해서 그 모든 것을 國民에게 밝히는 것이 본연의 任務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民主正義黨 委員들은 平和民主黨 所屬의 文東煥委員長이 항상 會議 冒頭에 裁判官의 判決文을 낭독하는 式의 이러한 主觀性爲主의 司會를 보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로 격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司會席에 있는 委員長은 司會를 원만히 進行하는데 所期의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委員長으로서 全體의인 運營에 있어서 우리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冒頭에 이러저러한 자기의 主觀과 마치 證人을 結論을 내려서 被疑者로 단정하는 듯한 이러한 證言이나 또 모든 事態를 證人이 單獨으로 決定하는 듯한 判決性의 이러한 發言을 한다면 앞으로 真相調査 活動에는 커다란 暗雲이 감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公正性을 잃은 司會下에서는 우리가 엄정한 調査를 할 수 없다는 結論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르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런 만큼 委員長께서는 앞으로 司會를 하는데 있어서 客觀的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냉엄하게 司會를 봐주실 것을 촉구하고 더 이상 이러한 客觀性을 잃은 司會를 볼 때는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同調할 수 없다는 것을... 같이 同參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委員長으로서 歷史의 眞實을

보면서 委員長의 判斷에 따라서 권고한 것 뿐입니다.

金吉弘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鄭東鎬委員 議事進行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말씀하세요.

○鄭東鎬委員 民主正義黨의 鄭東鎬委員입니다.

우리나라 議政史上 劃期的인 民主的 制度導入이라고 할 수 있는 國會의 聽聞會가 回를 거듭할수록 國民의 깊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대하여 聽聞會에 참여하고 있는 國會議員의 한사람으로서 本委員은 그 責任과 役割이 가중되고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聽聞會라는 것은 원래 美國과 「유럽」의 民主政治가 일찍부터 발달되어온 政治先進國에서 善用되어 온 制度라고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들 나라에서는 聽聞會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政策決定이나 法案을 審議하기 위해서 專門家의 의견을 듣는 政策的인 聽聞會가 있고 政府의 人事內定者로 決定된 當事者를 직접 불러서 소신이나 前歷 등을 따지는 認准聽聞會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國會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特定事案을 調査하기 위한 聽聞會가 있습니다. 또 이들 나라에서는 聽聞會運營의 좋은 관행들이 쌓여져서 運營 自體가 民主的이고 理性的이고 合理的의에서 眞實을 접근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聽聞會가 아무리 民主的이고 바람직한 制度라 할지라도 그 運營方法이 合理的이고 원만하지 못하면 所期의 目的을 거두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동안 많은 國民과 言論들이指摘했듯이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開催된 우리의 聽聞會에서 그 目的達成을 위해서 改善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問題點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本委員은 우리의 聽聞會가 社會的인 傳統과 慣例를 존중히 하고 訊問過程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는데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聽聞會運營에 대해서 몇가지 提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公正性이나 衡平性 그리고 公正性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訊問하는 委員이나 證言하는 證人이 서로 대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證人이 바로 拘束된 罪人이거나 法廷에 선 被告人은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이나 證人이 上下關係나 從屬關係에 있는 것도 아니고 證人自身은 우리 國會議員들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말하는 바로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憲法이 定한 基本權의 主人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理性和 事實에 입각한 訊問이라기보다는 政治性 發言이나 個人的인 감정의 표현에 치우친 訊問도 없지않았는가 하면 證人에게 意見開陳이나 疏明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던 사실도 적지 않았읍니다. 聽聞은 문자 그대로 訊問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불러놓은 證人의 證言을 충분히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矛盾이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訊問者와 證人의 관계도 平等하고 民主의 關係로 設定되어야 할 것입니다. 訊問하는 委員 자신과 의견이 다르고 기대했던 證言이 나오지 않았다고 證人을 一方的으로 몰아부치는 不公正한 事例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民主와 衡平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證人이 不實한 陳述와 또는 偽證을 했을 때는 國會가 所定の 절차를 밟아 處理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함과 함성과 욕박지름이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聽聞會를 主宰하고 있는 委員長께서는 항상 公正性을 견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委員이나 證人에게 똑같은 發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고 證人만 비판하고 證人에게만 警告를 바란다면 이는 참으로 不公正한 處事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委員들이 알기로는 外國에서는 證人의 發言을 제지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세째 國會의 權威와 委員會 良識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證人에 대한 人身攻擊이나 冒瀆的인 發言이 계속된다면 證人의 명예와 또 人權的인 次元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것은 이미 聽聞會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의 聽聞會는 一方的인 革命裁判이나 輿論裁判으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聽聞會運營에 많은 어려움

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우리가 찾고자하는 真相도 제대로 발견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委員들 스스로가 民主의 原則을 遵守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 訊問內容에 있어서 可及的 重複된 發言이나 議題外的 發言을 피함으로써 聽聞會運營의 效率性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本 聽聞會는 한정된 시간내에 정확한 真相을 糾明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몇번씩 같은 내용의 訊問이나 또 議題外的 發言으로 허비한다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光州問題의 真相糾明이 저절로 遲延될 뿐만아니라 聽聞會自體도 지루한 감을 주게될 것은 뻔한 理致입니다.

이상 몇가지 聽聞會運營과 관련된 本委員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國會 聽聞會의 새로운 傳統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서 議會民主主義發展에 기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委員長님과 先輩 同僚委員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아주 적절한 提言이라고 생각합니다. 될수있는데로 감정을 사로 잡히지 말고 不偏不當하게 眞實을 향해서 議題에서 어긋나지않고 反復을 피해서 여기 證人을 尊重하면서 사실을 추구해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金吉弘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金吉弘委員 民主正義黨所屬 金吉弘委員입니다. 本委員은 光州特委聽聞會에 존경하는 先輩 重鎮議員을 證人으로 나오시게 해서 證言을 들어야 하는 오늘의 政治現實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鄭鎬容委員께서 오늘 證言에 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證人이라고 부르겠습니다.

本委員은 證人의 화려한 公職經歷과 훌륭한 人品으로보아 오늘 證人께서 그동안 一方的으로 받아온 攻擊과 本意아닌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人格과 名譽를 걸고 光州問題와 관련된 訊問內容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證言해 주실

것으로 確信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訊問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실부터 확인하고자 합니다.

證人께서는 1979年 발생한 10·26과 12·12事態 당시 在戰하고 계셨던 軍部隊와 場所를 밝혀 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50師團長을 하고 있었습니다. 50師團은 大邱에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언제 特戰司令官으로 赴任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1979年12月13日附로 特戰司令官으로 命받았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の 特戰司令官 赴任에 대해서 소위 軍의 實勢로 등장하는 일종의 政治의 布石의 人事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政治의 布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特戰司令官이라는 職責은 그것은 아무나 잘 수가 없습니다. 特戰司令部에서 多年間 勤務한 經驗이 있든가 또 特戰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아는 그런 階級에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特戰司令官은 通常 師團長을 마치고 가는 자리이지 師團長을 못 마친 사람들이 갈수 있는 軍의 序列로 보아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特戰司令官을 할만한 사람이 軍內部에서는 그 당시 首警司令官을 한 盧泰愚將軍과 제가 가장 時機의으로 적절한 候補者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吉弘委員 과서에 特戰司에 勤務한 經歷은 있으신지요?

○證人 鄭鎬溶 저는 陸軍大尉때부터 特戰司에 인연을 맺어서 將軍이 된 후로는 근 4年半동안을 特戰司에 있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陸軍參謀總長을 지냈던 鄭昇和씨가 證人께서 다음 特戰司令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鄭鎬溶 예. 저도 직접 들었고 또 鄭昇和將軍께서 「인터뷰」한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50師團長을 通常 師團長의 任期는 2年입니다. 그래서 2年을 거의 다 마친 그런 時期가 되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次後 補職에 대해서 總長으로서의 構想이 되었는데 것이 아

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吉弘委員 5·17非常戒嚴擴大措置와 5·18光州事態 당시 職位는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特戰司令官이었습니다.

○金吉弘委員 예. 그 후에 證人께서 歷任한 主要公職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特戰司令官을 마치고 參謀次長 다음에 第3軍司令官 다음 陸軍參謀總長입니다. 그것으로서 豫備를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國防部長官과 內務部長官을 歷任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옷을 벗고 한 1年 쉬었다가 다시 公職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金吉弘委員 다음 本 訊問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많은 野黨議員들이 證人이 光州問題와 關聯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證人께서는 과연 光州問題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光州問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光州에 제가 指揮하고 있는 3個旅團을 그쪽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3個旅團이 光州事態期間동안에 거기에서 平定作業을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현재 論難의 초점이 되고 있는 特戰司 隸下部隊의 他部隊 配屬과 軍에서 활용 말하는 作戰統制 또는 作戰指揮의 概念에 대해서 알기 쉽게 說明해 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예.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최초로 光州에 내려간 部隊는 第7空輸의 2個大隊입니다. 저는 陸軍本部로 부터 命令을 받아 가지고 第7空輸를 第2軍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陸軍本部에서는 동상 바로 밑에 있는 2軍하고 命令去來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軍에 配屬을 받은 7空輸는 2軍의 作戰指揮에 의해서 1個大隊는 大田에 1個大隊는 全州에 2個大隊는 光州로 보냈습니다. 이 光州로 간 2個大隊는 그 당시 全南北 戒嚴分所長을 하고 있던 戰鬪教育司令官의 指示를 받아서 다시 거기에서 第31師團에 再配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個大隊는 최초 31師團의 作戰指揮下에서 運營이 되었습니다.

○金吉弘委員 隸下部隊를 他 部隊에 配屬해 주

있을 경우에는 作戰指揮權이 移讓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證人 鄭鎬溶 예. 당연합니다.

일단 配屬이나 作戰統制權이 移讓이 되면 原 所屬部隊長에게는 절대 作戰을 指揮한다는 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責任도 없고 權限도 없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러면 作戰指揮權을 移讓한 母體部隊長은 주로 어떤 役割을 하게 되나요?

○證人 鄭鎬溶 軍隊生活에 대한 軍隊關係... 잘 모르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父母가 딸이 있어서 瓜年이 되어서 시집을 보내고 난 다음에 결국은 查頓間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들 위주의 家系를 이리니까 시집을 간 사람은 시집간 그 家風에 따라야 될 것이며 그 시 아버님의 命에 따라서 모든 일을 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집을 따를 일은... 그 父母는 그 딸이 보고싶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서 시집살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걱정도 되고 또 혹시 무슨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래도 시어머니 몰래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이 친정어머니의 마음씨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관계가 設立이 됩니다. 따라서 軍에서 말을 하면 어디까지나 이 部隊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또 이런 방법으로 하라 하는 것은 配屬을 받은 師團長이 權限이 있고 責任이 있고... 그러나 원래 部隊의 長은 혹시 그 사람들이 밥은 잘 먹고 있는 것인지 또 잠자리는 편안한 것인지 그 외에 任務遂行을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등등은 원 所屬 部隊長이 責任을 지고 支援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알겠습니다.

여기서 一般 國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光州事態 당시 戒嚴軍 指揮系統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서울 즉 中央의 戒嚴指揮系統과 光州駐屯 各級 軍部隊의 作戰 指揮系統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中央은 陸軍本部가 中央戒嚴司令部가 됩니다. 물론 陸軍本部 전체가 戒嚴委員會는 아닙니다마는 陸軍參謀總長이 中央戒嚴司令官이 되고 그 밑에 各 軍 司令官이

그 위에서 제일 높은 單位의 1·2·3軍의 戒嚴司令官이 되고 戰鬪敎育司令部가 되는 全南北戒嚴分所는 2軍 밑에 있습니다.

全南北 戒嚴分所長은 31師團과 全北에 있는 35師團을 指揮해서 戒嚴業務를 遂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全南北에 있어서의 指揮體系는 全南北分所長이... 戒嚴分所長이 最高 責任者고 다음은 31師團長 35師團이 그 다음 責任者고 다음에 그 밑에 空輸部隊라든가 他部隊가 配屬이 되면 그 밑에 責任者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光州는 35師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全的으로 31師團의 責任... 光州의 鄭雄 師團長이 소위 全南地域의 戒嚴指揮官 役割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戒嚴分所長은 누구였습니까?

○證人 鄭鎬溶 最初에는 尹興禎將軍이 계시다가 다음에 蘇俊烈將軍으로 바뀌었습니다.

○金吉弘委員 알겠습니다.

證人께서는 野戰 經驗이 많으신 軍事專門家이시기 때문에 軍의 發砲命令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一般的인 경우 軍의 作戰이나 任務遂行時 發砲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경위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통상의 경우 平時에 있어서 아무 일이 없더라도 원래 軍의 施設을 지키는 步哨들은 實彈을 携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步哨가 생각해서 수상한 舉動을 한다가 또는 步哨의 誰何나 制止에 應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銃器를 使用할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危害를 加할 것이다 하는 확실한 心證이 있을 때 또는 相對方이 危害를 할 수 있는 그러한 武器에 準하는 그런 物件을 가지고 있다든가 예를 들면 작목이라든가 무슨 쇠「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豫防的 目的에서도 自衛權이라 할까 發砲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地域에 있어서의 多衆時에 도저히 發砲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鎮壓할 수도 없고 자기의 身體가 또는 國民의 財産이나 公共財産을 防禦할 能力이 없다 했을 때에는 銃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軍隊에서 敎育을 받으면서부터 法的 根據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예 머리속에 들어

가 있는 하나의 概念입니다. 물론 이것은 正當할 때만 뜻하는 겁니다. 個人的인 目的을 가지고 軍이 銃이 있다고 해서 어디가서 제 怨讐라 해서 쏘아죽인다는가 그런 것은 許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任務遂行 中일때 한해서 이 武器를 사용할 수 있는 根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法的 根據는 衛戍令이라든가 軍人服務令이라든가 또는 그의 刑法에 있는 여러가지 正當防衛의 그러한 概念이라든가 이런 데 根據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一部에서는 光州事態를 鎮壓할 당시의 發砲命令에 證人께서 關與했다고 즐기 차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證人 鄭鎬溶 저는 절대 關與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소리고 아마 저에게 뭔가 책임을 轉嫁시킴으로써 자기가 입장이 유리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行爲입니다. 지금까지 즐기차게 그러한 陰謀가 저한테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金吉弘委員 지난 7月 國會本會議 對政府質問에서 平民黨의 鄭雄議員은 5·18 당시 戒嚴을 主管했던 鄉土師團長으로서 보고 느낀 光州事態眞相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말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金政吉議員의 反對質問과 吳滋福國防部長官의 答辯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證人의 名譽를 위해서도 사실을 當時의 證據와 情況에 따라서 具體的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證人께서는 80年5月17日 國防部에서 開催된 全軍主要指揮官會議에 參席하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當時 會議는 왜 召集되었으며 누가 會議를 主宰했다고 기억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당시 國防長官께서 主宰하셨고 國防長官께서 召集하셨습니다.

○金吉弘委員 議題는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議題는 여러가지 時局에 대한 狀況을 확실히 알고 그 時局狀況에 어떻게 對處할 것이냐 그래서 非常戒嚴을 좀 더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全般的인 衆知收斂이라 할까 하는 그러한 形態의 會議였다고 생각됩니다.

○金吉弘委員 그 날 會議에서 證人께서는 非常戒嚴 擴大措置에 대해서 贊成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저는 贊成을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發言하신 내용이 記憶나시면 要旨만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8年前的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이 중에 계시는 분이 아무도 정확하게 記憶하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제가 그 때 發言한 것에 대해서 記錄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全般的으로 제가 말한 것은 여러가지 事態가 위태롭게 보이고 또 이대로 國家의 社會秩序가 문란하다는 것은 좋지 않으니가 이왕 軍人이 들어서서 戒嚴을 할 바에야 좀 똑똑이 戒嚴을 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社會秩序紊亂의 행위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類의 이야기를 저는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알겠습니다.

당시 會議 도중 證人께서 戒嚴令擴大宣布案과 國保委設置案을 上程 指揮官들의 決議와 連署名을 받았다고 당시 光州에서 鄉土師團長을 지냈던 平民黨의 鄭雄議員이 國會에서 證言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鄭鎬溶 戒嚴令에 대한 地域擴大 이것은 戒嚴令宣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테 저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도 애기한 일이 없고 擴大를 하자말자 이런 애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또 上程이라 하는 것은 제가 說明을 충분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贊反對論이 있어야 그것이 上程이 되는 것인데 전연 그러한 행위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 또 國保委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아무도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金吉弘委員 됐습니다.

1980年5月17日 戒嚴令을 全國으로 擴大하면서 全國 主要都市에 戒嚴軍이 配置되었으며 空輸部隊도 戒嚴軍으로서 光州 全州 서울 等地에 配置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金吉弘委員 特戰司 兵力을 全國 各地에 配置한 이유와 경위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누구로부터 指示를 받으셨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軍部隊의 配置는 最終的으로 陸軍本部에서 합니다. 무슨 特戰司令官이 자기 部隊라고 해서 너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하고 생각하는 軍에 대해서 선연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特戰司令官은 許容된 教育計劃에 의해서만 部隊를 보낼 수가 있지 그 외에 作戰目的으로 어느 한 장소에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陸軍本部에서 作命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습니까마는 全國에 소위 戒嚴兵力을 골고루하게 分配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아나시피 郷土師團이라는 것은 兵力이 없습니다. 31師團이나 35師團 같은 것을 우리가 郷土師團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실제 兵力은 전혀 없습니다. 다 司令部에 있는 行政兵이고 제대로 步哨를 설만한 사람도 모자라는 것이 郷土師團입니다.

그러니 戒嚴을 施行하라고 하니 兵力이 필요하다 이래서 陸軍本部에서는 필요한 場所에 될수 있는 대로 가깝게 있는 部隊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光州에 가장 가깝게 있던 部隊의 實際 써먹을 수 있는 可用部隊로서는 7空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空輸에서 그것도 다는 못하고 2個大隊 다음에 全州에 1個大隊 大田에 1個大隊 그리고 이제 釜山같은 곳은 그 부근에 가깝게 있는 것이 海兵隊니까 海兵師團에서 또 支援을 받고 大邱도 海兵師團이 浦項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戰鬪部隊만이 많은 兵力을 가지고 있고 郷土師團이라는 것은 똑같은 師團 師團 그러지마는 그것은 전부 다 합해 봐야 行政要員까지 아마 다 합해봐야 한 1,500名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그 行政要員들 주로 打字 친다든가 軍需物品을 軍需系統에 종사한다든가 그것을 計定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매일처럼 일이 있으니까 어디가서 示威를 하는데 가서 좀 鎮壓을 하라든가 이런 任務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陸軍本部에서 그것은 다 計劃을 해서 그렇게 配當을 한 것입니다. 配當하는 過程에 있어서 本人의 의지는 요만큼도 關與

가 되지도 않고 반응이 되지도 않았읍니다.

○金吉弘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作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作戰命令이란 뜻이었지요?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作戰命令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作戰命令 作戰命令... 軍에서는 흔히 作命 이렇게 생략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全國戒嚴擴大 이전에 部隊를 移動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戒嚴擴大 이전에도 戒嚴이었습니다. 그래서 戒嚴下기 때문에 戒嚴司令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部隊를 移動을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예. 戒嚴擴大에 대한 國務會議議決 전에 이러한 部隊配置가 違法한 節次는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전혀 違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吉弘委員 예. 다음 80年5月22日 당시 朴忠勳國務總理가 光州에 가셨을 때 證人께서 現地에 同行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同行을 하지 않았읍니다.

○金吉弘委員 證人께서 당시 懇談會에서 싸늘이 發言을 했다고 당시 31師團長이 주장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同行은 안 했읍니다마는 저도 별도로 내려갔읍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光州 CAC에 도착한 것이 아마 11時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國務總理께서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제가 늦게 가서 그런지 아마 會議같은 것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懇談會라는 데를 들어가 보지를 못했고 또 그 후에도 누가 懇談會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만 總理께서 오셨으니까 그 동안에 돌아간 여러가지 狀況들을 그 狀況報告를 業務報告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나시피 戰鬪教育司令部는 光州에 있습니다. 거기에 勤務하는 대부분의 軍人들이 光州 또는 全南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 앞에 뭐 奎羅道사람 싸늘여라 光州놈들 싸 죽여라 그 말 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

도 여기에 오늘날 平民黨 委員께서 많이 계시는데 全羅道에서 많이 오신 분 앞에서 제가 무엇때문에 全羅道사람 싸쓸어라 거기에서 싸쓸이라는 말은 그때는 저도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무슨 큰 錯覺을 일으켰든가 또 제가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懇談會라는 것 저는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總理께서 이미 報告를 받으시고 光州市民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 할 談話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錄音을 하고 계시다 하는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總理는 저는 잘 모르는 분이고 해서 어떻게든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심 전에 出發하셨습니다. 그래 점심전에 出發하셨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저도 배웅을 하고 그때 長官님도 몇 분 따라 오신 분하고 인사도 하고 저는 그랬을 뿐입니다.

○金吉弘委員 證人께서는 5月26日 光州飛行場에서 20師團長 또 3個 空輸旅團長을 召集해서 光州事態의 最終鎮壓作戰決行命令을 下達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部隊를 배속시켜 주고 그러면 作戰權이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제가 作戰命令을 내린다 뭐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26일은 저는 光州에 아주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근 밤10시 가깝게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蘇俊烈將軍께서 필요한 措置를 다 끝냈고 또 제가 가서 뭐 어디 사람을 만날만한 그런 위치에도 없었고 저는 光州에 26日 저녁 늦게 내려 올때까지 내일 作戰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飛行場에다 다시 자동차를 타고 CAC司令部까지 한 20餘分 걸립니다. 그래 거기 들어가서 비로소 蘇俊烈將軍을 만나서 비로소 확인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作戰을 결심을 했다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蘇俊烈將軍님 보고 외로운 결심을 했다 이것을 잘못하면 참말 앞으로 歷史의 罪人이 될 것인데 또 그러나 軍人이 任務를 받고 이것을 그대로 무한정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 외로운 결심을 했다 하고 그래 위에다 報告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報告를 전혀 안 했다고 그러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指揮官으로서 그러한 큰 결심을 해서 물론 혼자 責任을 전부 다 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좋지만 또 아래 사람으로서 위 사람에게 돌아가는 狀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報告할 責任과 義務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蘇俊烈將軍께서 이것 괜히 責任轉嫁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李鴻性戒嚴司令官에게 電話를 해가지고 報告하는 것을 제가 직접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金吉弘委員 當時 郷土師團長과 일부에서는 證人을 명백한 證據도 없이 당시 鎮壓作戰의 指揮實勢로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指揮實勢가 되어가지고 되어 줌으로써 자기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자기 입장이 유리해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장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吉弘委員 그러면 當時 證人께서 光州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이며 光州에 몇번 내려 가신 것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證人 鄭鎬溶 천금성씨 등등이 쓴 책에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小說 같은 글을 써 놓았습니다. 저희는 C-54로 타고 내려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려간 것은 20日 처음 내려 갔습니다. 20日 내려간 것은 기억이 똑똑히 남습니다. 20日 내려가다가 기장이 나빠서 井邑부근에서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근에 있는 어느大隊에서 자동차를 빌려타고 그래서 光州에 내려갔더니 근 12시가 다 되어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光州에서 무슨 會議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 會議 하는데 잠깐 들여다 보았다가 저는 會議에 참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 제가 들어가자 마자 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는 그때 旅團長이 會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旅團長들과 만나 얘기를 하고 또 그때는 7旅團만 CAC本部에다가 무슨 指揮部 같은 것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7旅團長

은 사실은 指揮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部隊가 없었습니다. 1個 大隊은 大田에 쫓겨 32師團長이 指揮를 하고 또 1個 大隊은 全州에 쫓가지고 35師團長이 指揮를 하고 2個 大隊은 31師團 光州에 쫓가지고 31師團長이 指揮를 하고 해서 指揮할 뭘 兵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指揮部는 7旅團長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光州戰鬥司令部 狀況室 한 구석에다가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번 들러 본 일이 있습니다. 旅團本部에 ……

그리고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 듣다가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指揮官과 만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指揮官과 만나서서는 光州事態와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많은 流言蜚語가 많다는 것 이런 얘기를 듣고… 뭐 軍의 指揮官이야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절대 희생을 내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 애들 희생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상대방은 市民들이니까 市民들에게 희생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뭐 樂房의 甘草입니다.

○金吉弘委員 光州市民의 희생을 最小化하라는 그런 말씀을 간접적인 作戰指揮權의 행사로는 볼 수 없는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作戰指揮權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作戰指揮라는 것은 뭐 “銃을 쏘라”또는 “거기에서부터 빠져라”아니면 “거기서 들어가라” “들어가더라도 상대가 抵抗이 심하면 強하게라도 밀고 들어가라” 이런 등등이 作戰指揮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行爲를 어떻게 하느냐 그 事態 事態에 따라서… 그리고 이쪽 部隊를 저쪽에 있는 部隊를 여기·와서 “增員을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作戰指揮입니다. 그리고 너무 示威의 정도가 과격하니까 이것은 너무 희생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빠져라든가… 예를 들자면 光州의 경우도 21日 새벽에만 빠져요면 희생자가 훨씬 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빠짐으로 해서 그렇게 희생자가 많이 났는데 이런 등등이 作戰指揮

의 중요한 하나의 要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다음은 光州의 作戰指揮責任과 관련된 중요한 質問입니다

당시 31師團長을 5月20日부터 자신의 指揮下에 배속된 空輸部隊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作戰詳報에 의거해서 전부 다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사실 저는 하나도 몰랐고 또 角逐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해서 戰鬥詳報에 의하면 鄭 雄師團長이 空輸部隊에 대한 作戰指揮權이 면세된 것은 21日 16時로 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렇다면 光州事態가 발발한 18日부터 21日 16時까지의 作戰指揮權과 事態鎮壓措置의 權限은 鄭 雄師團長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당연합니다.

○金吉弘委員 그렇다면 5月21日 16時이후 光州에 파견된 空輸部隊은 누가 作戰指揮를 했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師團의 上級指揮部隊인 戒嚴司令部 分所長이 직접 했다고 생각합니다.

○金吉弘委員 그 분이 누구시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證人 鄭鎬溶 그 당시에는 指揮權이 아직 引受引繼가 되기 전이기때문에 尹興植將軍이 지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指揮權 引受引繼가 22日 10時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蘇俊烈將軍이 그것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郷土師團長은 證人께서 5·18이후 光州에 常駐 하시면서 事態進展에 따라 空輸部隊를 계속 光州에 増派 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光州에 常駐하지도 않았고 단 상당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軍隊生活을 해 보았기 때문에 자기部隊라고 하더라도 결국 上級部隊의 지시가 없으면 移動을 못시킨다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光州에서 11旅團 오라

3旅團 오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旅團이 움직이는데는 전부 다 하나 하나 陸軍本部에 命令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오직 陸軍本部에서만 그 命令을 낼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金吉弘委員 심지어 郷土師團長은 光州事態의 진압을 위한 發砲命令을 당시 尹興禎戒嚴分所長과 證人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을 분명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尹興禎將軍과 무슨 發砲에 대해서 의논한 일이 없습니다.

○金吉弘委員 다음 光州狀況의 진압후 證人께서 훈장을 받으신 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證人이 事態鎮壓에 직접 수훈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時間이 좀 걸리더라도 자세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글썽요. 저도 新聞을 보았습니다. 훈장을 탔으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指揮官이 타는 훈장이라는 것은 본인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陸軍少將이나 陸軍中將이나 된 사람이 M16이나 무엇을 가지고 실제 전투라고 가정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敵을 射殺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部隊들이 그만한 공로를 세우면 덩달아서 指揮官은 그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越南戰鬪 때 海兵隊가 越南戰鬪에 참가했느냐 다만 1個大隊가 참가했다 하더라도 海兵隊가 참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海兵隊司令官은 거기에 참가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海兵隊를 개인적으로 대표하고 상징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뜻으로 3個旅團이 光州事態에 참가했기 때문에 저도 참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個旅團이 물론 현 시점에서는 그것을 잘 되었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陸軍本部에서 보았을 때 수고도 많이 했고 그만하면 任務를 잘 수행을 했다 이래서 그러한 評價下에서 무엇인가 士氣昂揚策으로 또 으레껏 上級部隊에서는 무엇인가 隸下部隊가 고생을 하고 많은 負傷者나 희생자를 낼 때는 아는 척 하는 것이 軍隊의 관계입니다. 실컷 부러먹고 모

르는 척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軍隊의 士氣와 여러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훈장과 표창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陸軍本部에서 대략 이러이러한 훈격은 몇개 몇개 이런 식으로 割當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軍의 이것은 하나의 오랜 전통입니다마는 最高指揮官은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싸인」을 해서 보내는데 저의 功績을 훈장 하나 주십시오 하고 「싸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인」을 한 데에는 제 이하가 「싸인」이 되어가지고 올라갔고 저의 훈장은 陸軍本部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한 部隊指揮官이니까 또 部隊表彰도 주어야 되니까 통상 그때는 部隊表彰이 나오면 으레껏 그 指揮官에게도 부수해서 무엇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光州問題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強硬鎮壓이 먼저냐 極烈示威가 먼저냐 하는 등의 사실이 분명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피해를 입은 側의 證言이나 資料에 비해 作戰命令에 따라서 公權力을 행사했던 戒嚴軍의 입장은 그만큼 자세히 밝혀지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光州問題의 惡化原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글썽요. 光州問題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군대에서도 分析됐고요. 다 分析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戒嚴軍의 過剩鎮壓이 제일 큰 이유였었다 이렇게 分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地域感情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流言蜚語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여러가지 이야기가 다 하나의 요인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過剩鎮壓이다 過剩鎮壓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많은 해석의 방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光州 全南地域에는 軍이 직접 示威鎮壓에 나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警察이 했고 警察이 하는 방법과 軍이 하는 방법은 당연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警察과 軍이 똑같은 방법으로 示威鎮壓을 한다면 굳이 軍人을 보낼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警察이 하다가 안될 때 軍隊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軍隊가 들어갈 때는 물론 警察이 지금까지 하던 방법하고는 굉장히 더 강화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警察의 여러가지 鎮壓方法만 보다가 軍人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過激鎮壓이다 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입니다. 당장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軍隊에서는 결국은 警察이 교육받는 것 보다는 좀더 강한 그러한 鎮壓方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軍隊가 주로 교육하는 것은 바로 暴動鎮壓訓練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過激鎮壓이다 하는 소리가 나온다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示威하는 사람들은 더 감정이 나서 過激示威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거기서 발생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過激示威에 過激鎮壓 過激鎮壓에 過激示威 이것이 결국 몇차례 되풀이 되는 동안에 결국은 견잡을 수 없는 그러한 과격한 상태가 형성되었다 하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말씀 드릴 것은 大韓民國軍人입니다. 大韓國民 國軍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형제이고 동생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어디 그 사람들 以北에서 데려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어서 傭兵을 해서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國民들에 대해서 市民들에 대해서 다만 그 사람들이 L 저 軍人이라는 것은 더 물러갈 수가 없다 또 軍人이라는 것은 後退命令이 나기 전에는 물러나서도 안된다 그런 임무감에 의해서 어떻게든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버티어 보겠다 하는데에서 여러가지 問題들이 過激해졌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軍隊生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섰던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서로 이것은 참 나도 너무했구나

너도 너무했다 하는 수준에서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吉弘委員 지난 2月 民主化推進委員會가 建議한 報告書에 따르면은 光州事態는 光州市民 學生에 의한 民主化運動의 일환으로 規定했고 盧泰愚大統領께서도 特別談話에서 光州民主化運動의 名譽回復과 補償方針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앞으로 光州民主化運動이 그야말로 완전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盧大統領께서 발표하셨고 또 政府에서 발표한데 대해서 그 정신을 全的으로 저는 贊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政府가 그동안 너무 태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 遺家族이나 負傷者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선의 補償이 이루어졌어야 돼고 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光州市民들의 이해와 名譽를 回復이 되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께서는 12·12 당시에는 大邱에 계셨습니까마는 朴大統領弑害現場 카장 가까이 있었던 鄭昇和陸軍參謀總長을 연행한 12·12事態를 지금와서는 어떻게 評價하고 계십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요 저는 12·12事態가 나는 밤에는 大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밤동안 무엇인가 궁금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어차피 내일 아침이 되면은 알텐데 하고 그래서 잤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 4時頃이라고 기억이 됩니까마는 그 당시 2軍司令官이 진중채將軍입니다. 2軍司令官께서 電話를 해서 서울에서 당신을 좀 올려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좀 갔다오시오 그리고 나도 지금 서울에 무슨 總長公館에서 銃擊戰이 나고 總長이 다쳤다는가 죽었다는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다 궁금해 못 살겠으니 서울에 가서 당신이 아는대로 나한테 제일 먼저 電話를 해 주시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그러면 누가 서보고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올라가보면 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兪學聖將軍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電話가 왔는데 保安司令部로 가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제가 保安司令部... 그때 大邱에서 새벽 5時쯤 출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 속도로 가가지고 保安司에 아침 8時 조금 지나서 도착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일어난 것 또 그 전에 여러가지 얘기가 된 것은 저는 전연 모릅니다. 한번도 거기에 議論에 가입을 해 본 일도 없고 저는 또 그 당시에 家族들 하고 전부 大邱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자주 올라갈 필요도 없고해서 그 분들과 한번도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全般的으로 軍隊에서 그 당시 鄭昇和參謀總長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 분이 大統領執事場所에 가가지고 있었느냐 또 그 후에 무슨 여러가지 연관되는 措置에 있어서 혹시 공모한 그러한 것은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밝혀야 된다 적어도 參謀總長이라는 또 戒嚴司令官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그러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國軍 여러가지 總帥 指揮面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번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의 눈초리로 그 당시 鄭昇和總長을 바라본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개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께서는 평소 軍의 政治介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政治介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吉弘委員 反對하시면서 왜 政治에 참여했습니까?

○證人 鄭鎬溶 웃을 뻔했으니까요 웃뻔고 난 다음에야 政治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言論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軍服을 입고 政治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는 극구 싫어했고 또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다음은 조금 議題外 質問이기는 합니다마는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6月 全國적으로 市民과 學生示威가 격화될 당시에 事態의 진정율, 위해서 政府에서 衛戍令發動 등이 具體적으로 검토되었던 것

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野人으로 제쳤던 證人께서는 要路를 찾아 다니면서 이 強硬措置를 挽留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 6.29前 얘기입니까?

○金吉弘委員 6月10日 前後한 그때 이야기입니까.

○證人 鄭鎬溶 예. 제가 그러한 조그마한 역할을 한 일이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께서는 歷史적인 6.29宣言의 결정에 어떤 影響力行使를 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影響力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6.29精神은 옳은 精神이라고 저는 대폭 찬성을 하고 그 당시에 盧候補아닙니까? 盧候補께서 용기를 가지시도록 저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일부에서는, 12.12 5.17光州問題 金大中內亂陰謀事件 國保委設置 등 5共出帆의 重要事案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證人을 署名을 하면서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치 證人에 대한 일종의 政治的 目的의 공세로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證人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특히 光州問題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장 큰 오해의 근원은 결국은 이런 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公式의인 實記도 아닌 이런 記錄物들에 의해서 많이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하나 다 고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이번 이 聽聞會에 있어서 어떤 기록은 왜 틀렸다 하는 것 또 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다 소상히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 또 뭇인가 제가 있음으로 해서 곤란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뭇인가 자기 책임을 전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의 노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뭇인가 제가 그 후로 光州事態以後로 陸軍大將까지 되었습니다. 參謀總長까지도 되고 하나까 별로 주목받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주목받은 사람을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光州事態라고 그러면 法的으로나 책임

과 권한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部隊을 이리로 가라고 그랬고 「데모」를 이렇게 진압하라고 그랬고 強하게도 鎮壓하라고 그랬고 弱하게도 鎮壓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놔두고 光州事態의 제일 主導者로 이렇게 물고 들어 오는것인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聽聞會에서 확실히 밝혀 지기를 저는 지금까지 기대를 했고 그래서 言論에서 여러가지 잘못된 것도 이 기회에 깨끗하게 그것이 세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金吉弘委員 國會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聽聞會에서 일부에서는 12·12事態 5·17戒嚴擴大措置 金大中內亂陰謀事件 國保委設置 光州問題 등 당시에 발생했던 일련의 事件과 事態가 당시에 軍主導勢力들이 政權을 잡기 위해 故意的으로 造作 陰謀했다는 내용을 줄기차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당시와 현재의 政治實勢로 지목 받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아는 한은 12·12事態나 5·17事態는 政權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일으켜서 政權을 잡아 보 겠다든가 뭘 어떻게 해 보겠단가 하는 것은 한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2·12事態를 저는 「구테타」나 이런 개념으로 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12事態後에 바로 政權을 잡고 들어 갈 것이지 또 5·17後에 바로 그게 「구테타」라면 政權을 잡지 무엇 때문에 우물우물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한번도 政權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5月17日 非常戒嚴擴大 할때까지 한번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누구하고 議論해 본 일도 없고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吉弘委員 證人께서는 과거 政府要職을 두루 歷任하셨고 역시 作戰指揮權은 행사 안하셨지만 母體部隊 指導官이었다는 점에서 光州問題에 대한 道義的 責任같은 것은 느끼지 않고 계십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많은 道義的 責任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光州事態로 인한 遺家族 그대 幽明을 달리하신 분 또 오늘날

부상을 입으셔서 生計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光州市民들도 같이 무슨 暴動인양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그 명예가 더럽혀진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政府에서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 충분한 補償과 名譽回復과 또 政府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서 하루빨리 이 큰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大統領閣下께서 아주 一大 決斷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만약 그런 계기가 있으면 저도 그 治癒하는데 한몫을 할 수 있는 기회 있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다음 마지막 質問드리겠습니다.

보통사람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證人께 質問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證人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光州에 파견된 戒嚴軍도 國民의 税金으로 운영되고 있는 國軍이고 光州에서 示威를 하던 市民들도 우리 國民입니다. 다 같은 國民인 우리 國軍이 지난 聽聞會에서도 주장했습니까마는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무고한 여자나 어린이들을 무차별 殺傷했다고 하는 本委員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불가피한 사정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또 誤認이라든지 誤發이라든지 이로 인한 殺傷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래동안 軍에 몸 담고 있었던 證人께서는 과연 우리 國軍이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저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난장판이 되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정신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하에서 國軍이 어떤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찢어 죽인단가 더군다나 아녀자나 어린애를 무자비하게 殺傷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하기도 싫고 또 그런 일은 저는 절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점에 대한 流言蜚語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하나 앞으로 증거를 대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金吉弘委員 오랫동안 訊問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金吉弘委員이 權海玉委員의 時間을 借用해서 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두번째로 辛基夏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40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辛基夏委員 證人은 盧泰愚大統領과 慶北高等學校 同期同窓生이시지요?

○證人 鄭鎬溶 質問입니까?

○辛基夏委員 예.

○證人 鄭鎬溶 예. 맞습니다.

○辛基夏委員 證人은 全斗煥 盧泰愚大統領과 더불어서 陸軍士官學校 11期生으로 역시 同期이시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리고 證人등 3人은 모두 空輸部隊特戰旅團長出身이시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證人은 12·12事態때 全斗煥씨의 命令을 받은 軍人들의 銃擊으로 당시 首都警備司令官 張泰玩少將과 特戰司令官 鄭柄宙少將을 逮捕·監禁한 사실을 바로 그날 아셨지요? 아셨는가 모르셨는가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그런 銃擊戰이 特戰司에서 있었다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13일에... 그리고 張泰玩씨한테에도 監禁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못들었습니다마는 特戰司令官은 그때 病院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病院으로 갔고 張泰玩씨는 監禁이 되었는지 病院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辛基夏委員 언제 아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13日 알았습니다.

○辛基夏委員 13日 아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辛基夏委員 같은 날 盧泰愚씨가 首都警備司令官으로 證人이 空輸特戰司令官으로 앉음으로서 在京 3主要軍部隊인 保安司令官에는 全斗煥씨 首都警備司令官 特戰司令官에는 盧泰愚少將과 證人 등이 차지함으로써 이른바 陸士11期の 時代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時代가 열렸다는 말은 좀 이상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1期가 3部隊의 長으로서 장악한 셈이되지요?

○證人 鄭鎬溶 예. 11期가 그렇게 3個部隊指揮官으로 補職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保安司令官은 그 전에 받고 있었고 저하고 首警司令官은 같은날에 받았습니다.

○辛基夏委員 이듬해 4月14日에는 全斗煥씨가 소위 維新政權과 崔圭夏政權下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保安司令官과 中央情報部長까지 차지함으로써 명실공히 全斗煥씨 중심으로 權力이 옮겨간 것입니다. 證人은 지난 10月23日 字 週刊朝鮮記者와 「인터뷰」한 내용을 아까 答辯하셨지요 金吉弘委員의 質問에 答辯하셨지요. 일부... 그 내용은 1980年5月27日 새벽 이른바 鎮壓作戰을 한 것은 5月26日밤 10時쯤에 光州에 가서 당시 戰敎司令官 소준열씨로부터 들어서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辛基夏委員 그리고 5月25日에는 保安司令部에 들어서 당시 保安司令部 全斗煥씨에게 鎮壓作戰이 벌어지기 전에 情報蒐集을 하려면 필요한 便宜服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셨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證人 鄭鎬溶 사실입니다.

○辛基夏委員 그런데 保安司에도 便宜服이 없어서 하루 기다렸다가 26日밤 늦게야 便宜服을 신고서 CAC司令部에 갔는데 作戰開始를 위해서 兵力이 이미 投入되어서 갖고간 便宜服은 사용해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辛基夏委員 결국 鎮壓을 결정한 사람은 現地司令官인 소준열將軍이었고 李煥性戒嚴司令官은 證人의 권유로서 소將軍이 電話를 받고서야 비로소 鎮壓事實을 알았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辛基夏委員 그러나 證人은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證人들이 作成한 公文書에 의해서 僞證임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證人 鄭鎬溶 僞證이라는 것을 말씀해보세요.

○辛基夏委員 첫째 그날밤 證人이 光州에 도착하기전인 26日 9時에 證人의 部下인 空輸部隊 下士官들이 便宜服 服裝으로 市內에 投入되어서 이미 偵察을 실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은 戰敎司 戰鬪詳報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陸軍本部에서 提出한 陸軍參考資料

紙作戰命令 및 지시를 보면 1980년 5월 25일 宇陸軍本部 作戰指針에 作戰開始日時는 別名이 없는 限 1980年 5月27日 零時 그러니까 零時1分이후에 실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受信은 戰敎司 司令官이고 發信은 戒嚴司令官 陸軍參謀總長 陸軍隊長 李煥性해 가지고 親筆署名까지 되어 있고 그 밑에 作戰參謀副長 金在命少將의 確認署名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李煥性司令官은 戰敎司令官에게 26日에도 이와 동일한 作戰指針을 두번이나 내려보내서 착오가 없도록 만일의 경우에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證人의 말이 맞습니까?

○證人 鄭鎬溶 두번째 말한 것은 그것은 戰鬪詳報입니까 무엇입니까?

○辛基夏委員 陸軍參考資料誌 作戰命令 및 指示입니다. 그리고 陸軍本部 作戰指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陸軍本部에서 우리 特委에 보내 준 資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證人 鄭鎬溶 글썽요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편의대라는 것은 꼭 저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戰敎司에서도 구해서 쓸 수도 있고 또 他部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제가 갖다 준 편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이야 제가 그것은 證據能力이 없겠지요. 그것은 제가 갖다 준 것은 아니니까 분명히...

두번째 計劃은 언제든지 며칠전에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計劃하고 다음에 언제 실시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指揮官이 날짜를 決心을 했을 때 그 때가 바로 施行하는 實施입니다. 통상 사람이 어떤 登山을 간다 했을 때도 한 이틀이고 3日전에 누구하고 가겠다든가 登山할 때 무엇을 준비해 가겠다든가 하는 計劃은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登山을 가는 날짜는 그 때가서 갑작스럽게 정할 수도 있고 미리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作戰을 해야 되겠다 하는 必要性은 그 당시 이미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벌써 CAC司令部에서도 한 2日전부터 여러가지 作戰의 保安問題때문에 그 시간과 날짜를 決定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이 제가 26日 가서 비로소 소준열 將軍한테 27

日을 기해서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報告를 드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辛基夏委員 그런데 陸軍本部 作戰指針으로서 단순히 計劃文書로서 陸軍本部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發信人은 司令官 李煥性大將이고 受信人은 戰敎司 司令官으로 되어서 그것이 2次3次까지 확인해 가지고 戰敎司 司令官에게 보내져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證人의 말은 말이 맞지 않든가 李煥性將軍의 말이 맞지 않든가... 우리나라 陸軍의 體制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證人 鄭鎬溶 아니 그 文書는 못 보았읍니다마는 27日... 그러면 零時이후라면 반드시 27日 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28日도 가능하고 29日 해도 되는 것입니다.

○辛基夏委員 27日... 그러니까 “零時1分이후에 실시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글썽 그러면 27日이전에는 하지 말라는 그 소리지요.

○辛基夏委員 그러니까 零時이전에는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적어도 零時부터는 해도 된다 그 말을 의미하는데...

○證人 鄭鎬溶 예.

○辛基夏委員 戒嚴司令官의 말은 零時이후에도 해도 된다는 그 基準線이 零時1分에 바로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는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그러한 統制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作戰을 언제 하느냐 또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위에서 決定하기보다는 現地司令官이 決定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그것은 現地司令官만이 그 때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권한이 통상 現地司令官에게 委任을 시켜 주는 것이 軍隊의 常例로 되어 있습니다.

○辛基夏委員 騷擾鎮壓作戰인 忠正計劃은 空輸特戰部隊內에서는 언제부터 충정訓練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라는 말씀만 해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忠正訓練은 아마 空輸部隊가 創設되고부터 얼마 안있고부터 계속한 것입니다.

○辛基夏委員 아니 예전에는 暴動鎮壓作戰이라고 하였고 충정計劃을 세워서 충정訓練이라고 바뀌어 제가 알기는 1980年 2月28日頃부터 空輸特戰司에서도 충정訓練이라는 이름으로 訓練을 한 것인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십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가서 特戰司令官 赴任을 해서 그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가지 그 훈련은 의례것 社會가 좀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면 의례것 하는 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의 일환으로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辛基夏委員 證人이 指揮했던 特戰司戰團詳報에 의하면 學生들의 校外示威가 거의 없었던 80年 5月3日 發令된 陸軍本部 作戰命令 12-80號에 의거해서 9空輸特戰旅團이 首都軍團에 配屬되었고 5月6日에는 陸軍本部 作戰命令 13-80號가 發令되어서 11空輸特戰旅團과 13空輸特戰旅團이 特戰司令部 및 1空輸特戰旅團 地域인 서울로 移動하게 됩니다.

11旅團은 사실상 5月10日 1시에 13旅團은 사실상 5月8日 1시에 移動이 實施됩니다. 역시 證人이 指揮했던 特戰司 戰團詳報에 의하면 육각상진 0-203號에 의해서 80年 5月14日 首都 江北地域의 所要事態鎮壓을 위하여 首警司의 4個 空輸特戰旅團 江南地域 首都軍團에 1個 特戰旅團 그리고 1個 特戰旅團의 作戰統制權을 2軍에 이양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5月3일부터 충정作戰의 일환으로서 空輸部隊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光州에 제일 먼저 도착한部隊는 7空輸旅團의 33大隊와 35大隊이지요? 그렇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이들이 光州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空輸部隊를 現地部隊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陸軍參謀總長이 現地에서 요청이 없어도 證人의 建議에 의해서 보낸 것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本人이 建議하지도 않고 現地の 요청과 陸軍參謀總長의 決心에 의

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또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陸軍本部에서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실제 兵力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번 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여러번 해 왔기 때문에 다 그런 요소에 의거해서 다 實施되었을 뿐입니다.

○辛基夏委員 現地部隊에서 요청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신다 그 말씀입니까?

○證人 鄭鎬溶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辛基夏委員 언제 도착했습니까? 光州에...

○證人 鄭鎬溶 새벽 2時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辛基夏委員 며칠날... 18日 말씀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런데 7空輸 33大隊와 35大隊가 光州에 도착한 시각은 31師團 戰團詳報에 의하면 5月18日 2時26分으로 되어 있고 陸軍本部 狀況日誌에는 5月18日 1時19分으로 제각기 달리 기재되어 있으며 어쨌든 모두 18日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7空輸旅團이 光州에 도착한 시각은 5月17日 23時30分이었습니다. 戒嚴이擴大되기도 전에 다른 사실상의 특별한 상황이 있기도 전에 軍이 먼저 움직인 것이 틀림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先發隊가 23時몇分경에 도착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部隊移動이라는 것은 部隊移動에 主部가... 部隊의 主要部가 다 도착을 한 시간을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기록에 보면 02時30분이 아마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등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事前配置가 아니고...

○辛基夏委員 사실 관계만 물어본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예.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사례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몇時間差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31師團의 作戰統制를 시킨 것은 언제 시켰습니까? 33大隊와 35大隊에 대해서...

○證人 鄭鎬溶 02時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辛基夏委員 그 命令이 2時부로 나온 것입니까?

○證人 鄭鎬溶 아닙니다.

○辛基夏委員 作戰 統制命令이 陸軍參謀總長으로부터...

○證人 鄭鎬溶 그것은 명령이 이렇습니다.

命令이야 간단히 無電으로 電話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部隊라는 것은 이쪽에 있다가 目的地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든지 自動車を 타든지 걸어가든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辛基夏委員 제가 물어보는 것은 電話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陸軍本部에서 2軍司令部로 作戰 통제명령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내려 갔는가 그 날짜만 물어본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제 생각에는 17日 내려갔습니다. 17日 午後로 생각합니다.

○辛基夏委員 17日 午後 몇 時頃인줄 기억이 안나십니까?

○證人 鄭鎬溶 19時頃이 아니겠느냐 19時에서부터 20時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辛基夏委員 20時頃.....

○證人 鄭鎬溶 예.

○辛基夏委員 그런데 戰鬪教育司令部 戰鬪詳報를 보면 5月17日 19時40분에 2軍 충정作戰指示有效 같은 날 20時25分에는 戰敎司 충정作戰有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시각은 18日 零時1分입니다. 그런데 非常戒嚴擴大決議案을 通過시킨 臨時國務會議은 17日 21時40분에 끝났다 말입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충정作戰 有效指示는 非常戒嚴擴大決議가 있기도 전에 政治軍人들의 事前計劃에 의해 움직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證人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軍을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는 戒嚴司令官은 地域의 擴大나 縮小에 관계없이 部隊移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辛基夏委員 戒嚴下는 말이지요? 戒嚴下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證人 鄭鎬溶 예. 戒嚴下에 戒嚴司令官이 部隊를 그러면 필요한 戒嚴業務를 遂行하기 위해서 部隊移動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辛基夏委員 제 말씀은 10月27日이후에 戒嚴이

되어 있어서 非常戒嚴下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당시 5月17日이나 5月18日의 狀況이 特別한 狀況이 아니고 오히려 5月16日이전의 狀況보다는 훨씬 더 평온한 狀況이었는데 이러한 戰鬪部隊를 戒嚴軍으로서 光州에 파견한다는 것은 證人의 말로는 납득이 안가지 않아요?

○證人 鄭鎬溶 아니 다음에 戒嚴擴大를 前提로 해서 그것은 한 것이지요.

○辛基夏委員 아 戒嚴擴大를 前提로 해서 한 것이다?

○證人 鄭鎬溶 대략 그것은 상정을...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辛基夏委員 알았습니다. 戒嚴擴大는 臨時國務會議에서 通過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압력을 넣어서라도 國務委員 느그 정도는 눌러가지고 擴大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하에서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렇게만 표현을 하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통상 事業을 하던 軍隊의 일이든 대략 豫想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投資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國會議員인데 常識으로 얘기를 해야죠.

○辛基夏委員 알았습니다.

5月15일에 말이지요 아마 31師團에는 空輸部隊 2個 大隊가 31師團에 作戰統制되어 5月17日밤에 도착한다는 指示가 내려와 가지고 31師團은 7空輸가 사용하게 될 천막이 全南大學校와 朝鮮大學校에 가설된 것도 5月 바로 17日입니다. 그래서 31師團長은 全南大學校에 5月17日 午後에 12개 朝鮮大學校에 12個 24個를 設置를 했는데 이것은 戰鬪教育司令部가 7空輸가 쓸 천막을 31師團에 지급한 것은 非常戒嚴 擴大決定보다 이틀 이상 앞선 5月15日입니다.

이것은 陸軍本部에서 가져 온 충정作戰報告 兵站補給 첫째줄에 明記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을 보면 5月17日밤에 도착한 것은 분명하러니와 모든 計劃이 5月15日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5月17日 會議에 나가서 非常戒嚴擴大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이지요...

○辛基夏委員 되었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나 그 당시 여러가지 이제 戒嚴下에 있었으니까 그런 준비 등등은 언제 든지 해두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辛基夏委員 그래서 7空輸 33大隊와 35大隊는 31師團의 作戰統制를 받게 된 것이 틀림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31師團 鄭 雄將軍이 이들에게 作戰命令을 최초로 하달한 것은 5月18日 16時였는데 7旅團 戰鬪詳報에 보면 同日 12時45分과 14時45분에 33大隊와 35大隊가 각각 鎮壓命令을 96聯隊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1師團은 96聯隊에 作戰統制나 部隊配屬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90聯隊長은 이러한 指示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作戰命令을 내린 사실조차 더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7空輸 33大隊와 35大隊가 形式上 31師團의 作戰統制를 받게 되어 있을 뿐 애초부터 31師團長의 指揮는 사실상 받을 의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空輸 戰鬪詳報에 의하면 7旅團本部가 5月18日 8時에 金馬를 출발하여 同日 11時50分頃에 光州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33大隊와 35大隊는 사실상 7空輸旅團長의 指示를 받아 움직였고 7空輸旅團長은 證人의 指揮를 받아 움직였으며 이러한 33大隊長과 35大隊長은 31師團에 계속 報告를 하고 作戰指示를 받아서 31師團의 師團長室을 출입해야 하는데 한번도 31師團에는 온 사실이 없다는데 이에 대해서 證人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 그렇게 너무 억측이나 추측만 가지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辛基夏委員 아니 전부 根據를 가지고 합니다. 軍部隊에서 보내준 根據입니다. 戰鬪詳報...

○證人 鄭鎬溶 통상 大隊가 가면 師團長이 직접 指揮할 수도 있고 또 그地域에 그 당시 31師團은 그 적은 兵力을 가지고 全南 光州를 다 관장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96聯隊가 아마 光州를 관장하는 地域인 것 같은데 일단 光州地域에

들어가면 96聯隊長의 指揮統制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常識입니다. 그래서 통상 大隊가 붙었다고 해서 바로 大隊의 指揮網이 師團司令部로 직결되지가 않습니다. 指揮 指揮 그러지만 指揮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서 指揮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指揮「팀」끼리 있어서 그 指揮「팀」의 通信網이 위주가 되어서 指揮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6聯隊長이 그 地域防禦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96聯隊長의 指揮를 받았으리라 하는 것은 저는 常識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大隊長들이 31師團長이 主宰하는 作戰會議나 또는 聯隊長이 主管하는 會議에 갔고 指示를 받은 것은 여기에 戰鬪詳報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辛基夏委員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더 물어 볼게요.

○證人 鄭鎬溶 그래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 당시 旅團長은 CAC司令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地域에 있는 사람이 더 가깝게 있지 CAC司令官에 있는 旅團長이 配屬을 주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指揮를 합니까? 그러니 配屬을 주고도 물론 이렇게 추측을 하시겠습니까.

○辛基夏委員 묻는 말만 간단히 答辯해 주세요. 저희한테는 배정된 時間이 있어가지고 證人이 너무 오래 하시면 時間을 빼앗으려고 한 것으로 오인받게 됩니다.

○證人 鄭鎬溶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역시 軍의 여러가지 慣例나 그런 것을 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辛基夏委員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證人이 말씀하시는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證人만큼은 모르겠지만...

證人은 光州에 來往하시면서 31師團長室에 한번도 들려본 사실이 없지요?

○證人 鄭鎬溶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陸軍本部 作戰狀況日誌에 의하면 11空輸増派命令이 狀況室에 접수된 시각은 18日 15時43分입니다. 光州市民은 이 命令이 떨어질 즈음 既存의 7空輸部隊員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각에 空

輸部隊員 744名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또 다시 2,592名の 空輸部隊를 増派한다는 말입니까? 光州市民을 아주 다 죽이겠다는 심산이 있는지... 그때의 과정을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5月18日 午後 4時頃에 光州市 北洞에서는 東亞日報 光州支社에 空輸部隊員 2名이 들어와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짓밟아서 머리에서 분수처럼 터지는 피를 보고 그놈을 그대로 끌고 간 것을 생생히 본 記者가 바로 取材手帖에 썼고... 내일 모레 곧 證人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 市民들도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證人 앞에 바로 대주라고 하면 오늘 午後에 대출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짓밟고 鎗壓棒으로 치고 軍靴발로 차서 무자비하게 옷이 찢겨진 것을 그대로 裸體로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고 두 발을 들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해서 끌고 간 흔적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의 證言에 의해서 볼 수가 있고 그 장소는...

○證人 鄭鎬溶 저는 그런 것은 믿기 어려우니까 證據를 여기에서 하나하나 채택하기를 원합니다.

○辛基夏委員 가정집이든 길 노상이든 어디할 것없이 심지어는 新婚旅行가는 夫婦가 차안에 新婚旅行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꺼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자비한 잔악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天下에 公開된 사실뿐만 아니라 證人 이외에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鎗壓狀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證人은 證人の 部隊가 그렇게 命令系統이 잘 서있고 軍紀가 서 있는 部隊가 이런 것을 저지른 사람이 司令官인 證人에게 虛偽報告를 하고 證人이 지금까지도 이 순간에 계속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證人은 空輸特戰旅團을 잘못 指揮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證人 鄭鎬溶 저는 지금까지 光州事態에서 그러한 報告를 한번도 접해본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완전한 證據를 채택을 하셔서 그것이 證據로서 證明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허위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물론입니다.

그 다음에 證人은 光州에 가 계시는 시간이 5月20日 5月22일부터 27일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辛基夏委員 그래가지고 5月21日和 18日 19日是 안 계시다고 그랬지요?

○證人 鄭鎬溶 5月20日是 왔다가 다녀갔어요.

○辛基夏委員 그러니까 18日和 19日 21日...

○證人 鄭鎬溶 예. 없었습니다.

○辛基夏委員 혹시 崔慶祿씨라고 軍의 大先輩를 아십니까?

○證人 鄭鎬溶 압니다.

○辛基夏委員 證人은 5月21日 새벽零時부터 2時 사이에 光州에서 崔慶祿씨에게 市外電話를 했다는 사실이 遞信官署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光州에서의 모든 作戰指示가 끝났다고 崔慶祿씨에게 報告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도 거짓말하실 것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당시 崔慶祿씨는 무엇을 했습니까?

○辛基夏委員 모르겠어요. 나는...

○證人 鄭鎬溶 무엇인데 제가 崔慶祿씨한테 電話를 해서 報告를 합니까?

어쨌든 國會議員이나 되시는 분이 그렇게 常識의이지도 않은 말을 믿습니까?

○辛基夏委員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證人 鄭鎬溶 崔慶祿씨가 그때 現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國防部長官도 아니고 그 분이 崔慶祿씨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證人은 答辯만 하세요.

○辛基夏委員 가만히 계세요. 내가 묻는 것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委員長 文東煥 質問하실 委員은 質問하시고 證人은 答辯하시고 질서를 세워주세요.

○辛基夏委員 證人께서는 적어도 空輸特戰司令官과 陸軍參謀總長과 內務部長官 國防部長官 현재 國會議員에까지 제신분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을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에 와

서 상식이하의 짓으로 歷史의 證人이 아닌 歷史의 罪人으로 계속 절곡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本委員이 證人을 건져주는 입장에서 歷史의 罪人을 歷史의 證人으로 만들기 위해서 묻는 것이올시다.

○證人 鄭鎬溶 예. 감사합니다.

○辛基夏委員 證人은 1980年 5月27日 아침에 光州道廳에서 이른바 鎮壓作戰이 成功했다고 해가지고 證人과 周永福國防長官 최세창 신우식 등등 이른바 空輸旅團長들이 道廳위에 太極旗를 꽂고 애국가를 불렀지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것만 答辯해 주세요.

○證人 鄭鎬溶 그 당시 周永福長官님하고 蘇俊烈將軍님하고 蘇俊烈將軍은 그때 CAC司令官이었으니까 저하고 그외에 그 때 당시 作戰에 나왔던 20師團長이나 旅團長이 한 두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 게양했어요 안 했어요?

○證人 鄭鎬溶 태극기를 게양하고 그런 것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애국가를 부른 기억도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道廳屋上에 올라 간 사실도 없습니까?

○證人 鄭鎬溶 올라 간 사실도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래요?

○證人 鄭鎬溶 그 앞에 와서 그 때 제가 그 CAC司令部에 있으니까 國防長官께서 오셔서 道廳에 나가 보자고 그래서 蘇俊烈將軍하고 다 같이 모시고 나갔다가 왔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런데 證人께서 말이지요. 5月21日 오후 1時경에 처음으로 空輸部隊에 의해서 100萬 光州市民을 향해서 바로 發砲가 되어 가지고 많은 市民이 희생되었는데 적어도 陸軍本部나 軍部隊에서 제출한 資料에 의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후 3時가 넘어서 市民앞에는 총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光州稅務所에서 총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는 당시 거기에 불이나게 되니까 豫備軍中隊長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가 實彈도 없는 총 17정을 軍部隊 勞動廳앞에서 이관시켜서 그것을 보관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전혀 아무런 武器도 없는 市民에

게 M-16를 쏘아 가지고 희생을 시킨 것이 바로 自衛權의 一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그 당시 제가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벌써 21日 새벽부터 武器庫가 많이 奪取되고 또 實彈도 많이 奪取되었습니다. 그래서 21日 13時경부터 상당히 그 示威가 과격했고 또 그때 사람도 차에 치어 죽었고 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제 武裝을 해서 發砲를 戒嚴軍에다 대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戒嚴軍도 부득이 威脅射擊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전부 들은 얘기입니다.

○辛基夏委員 그런데 말이지요. 戒嚴狀況日誌에 의하면 5月21日 오후 2時半에 제일 처음으로 羅州警察署 三浦支署 靈光派出所 錦城派出所 老安派出所 등에 있던 豫備軍 武器가 被奪되어서 市民들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이 記錄上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和順 武器庫가 21日 오후3時50分 이것은 戒嚴司令部 戒嚴狀況日誌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證人께서는 20日 오후 3時頃 7旅團을 방문한 사실이 있지요?

○證人 鄭鎬溶 예.

○辛基夏委員 그리고 5月19日 保安司 企劃調整室長 최예섭准將과 함께 비행기로 光州에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까?

○證人 鄭鎬溶 내려온 일이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그 다음에 5月18日 내려온 사실이 없다고 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5月21日 내려왔고...

○證人 鄭鎬溶 5月20日 내려왔습니다.

○辛基夏委員 5月21日은 證人은 戰敎司 狀況室에서 최세창 3空輸旅團長 신우식 7空輸旅團長 최웅 11空輸旅團長과 함께 作戰會議를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날 午後 6時에 自衛를 위한 發砲許容命令을 내린 것이 證人이라는 사실을 20日밤 新驛앞 그리고 21日 正午 道廳에서 이미 集團發砲가 있는 칠선 위의 일이지마는 이러한 發砲命令을 證人이 그날밤에 내리셨다는데 것인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辛基夏委員 月刊朝鮮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證人의 부하였던 최 웅旅團長이 證言한 것이올시다.

○證人 鄭鎬溶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新聞을 보니까 許某라고 하는 사람이 21日 光州에 保安司令官이 왔다 가고 나를 비롯한 尹興禎將軍 또 旅團長들이 戰鬪教育司令部 機密室에서 무슨 發砲에 관한 會議을 해서 그래서 내가 우거대서 會議도 못하고 發砲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연 사실하고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21日 光州에 가 있지도 않았읍니다. 光州에 없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戰敎司 機密室會議에 參加할 수가 있으며 參加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辛基夏委員 證人은 그렇게 否認하시겠으지요?

○證人 鄭鎬溶 아니 否認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辛基夏委員 그 다음에 5月22日 敎司戰에서 朴忠勳國務總理가 내려오셨을 때 거기에 參席해가지고 한 말에 대해서는 “이번 機會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光州를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 일을 否認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鄭雄師團長과 또한 朴忠勳 당시 總理도 이러한 말을 間接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同僚委員의 質疑에 이어 대해서는 否認했기 때문에 다시 答辯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23日 아침에 證人은 다시 서울로 上京하었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래서 上京後 國防部에 가서 周永福國防部長官 全斗煥保安司令官 등과 함께 對策을 論議하던 중 “最後通牒을 하고 전차를 앞세우고 대포로 허공에다 요란스럽게 팡팡 울리면서 正功夫를 쓰자. 그러면 光州 暴徒들도 겁을 집어먹고 도망갈 것이다.”고 證人이 進言한 사실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이에 周永福 國防部長官이 만류하였고 全斗煥씨도 조금 두고 보자고 해서 證人은 다시 光州에 내려갔는데 그런 사실도 없다 그 말씀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23日 空輸部隊 司令官인 證人과 蘇俊烈씨가 계속 熟議를 해서 鄭鎬溶將軍이 캐히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蘇俊烈씨의 民和委에서의 證言內容이 나옵니다. 3旅團 7旅團 11空輸旅團에 대한 作戰統制權은 CAC司令官에게 있고 證人에게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런데 왜 CAC司令官이 證人에게 熟議를 합니까?

○證人 鄭鎬溶 위에 관한 熟議입니까?

○辛基夏委員 空輸部隊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作戰에 대해서 熟議를 했다는 것...

○證人 鄭鎬溶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한번도 저는 熟議를 한 일이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일절 作戰에 대해서는 相議해본 사실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證人 鄭鎬溶 다만 最終作戰을 언제 한다 하는 것은 그 때는 결정도 안했고 그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 제일 좋겠느냐 하는 뜻은 바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희생을 내겠느냐 하는 뜻이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個人的인 의견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辛基夏委員 됐어요. 없다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5月25日 崔圭夏大統領이 周永福國防部長官을 대동하고 光州近郊에서 錄音을 하고 있을 즈음 黃永時將軍과 함께 서울로 갔었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26日 證人은 午前 10時頃에 保安司에 도착해서 全斗煥保安司令官 盧泰愚首營司令官 白雲澤9師團長 蘇俊烈戰敎司令官과 함께 申請作戰計劃을 논의한 후 最終鎮壓作戰指示를 받고 蘇俊烈將軍과 함께 光州로 내려왔지요?

○證人 鄭鎬溶 그런 일은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蘇俊烈將軍과 함께 光州로 내려온 사실은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날 밤에 혼자 내려왔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辛基夏委員 26日 午前 2時쯤 證人은 光州 飛行場 司令官室에서 20師團長과 3個 旅團長을 불러서 최후 忠正作戰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밤 10시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사실이 아닙니다.

○辛基夏委員 처음에는 3旅團에게 모든 任務를 맡겼다가 나머지 두 旅團의 반발에 부딪쳐서 결국 3旅團은 道廳 7旅團은 전일「빌딩」 觀光「호텔」 YWCA建物 11旅團은 光州公園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內部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辛基夏委員 그러면 證人은 아까 忠武武功勳章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묘하게도 忠武武功勳章을 받은 사람이 證人과 당시 20師團長인 朴俊炳少將 그리고 崔世昌准將 3個旅團이 내려왔는데 崔世昌准將 3名만 받았읍니다. 최 兪准將과 신우식准將은 받지 못했읍니다. 大統領表彰 정도로 격하되었지요.

그런데 賞勳法 第13條에 의하면 「武功勳章은 戰時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 戰鬪에 참가하여 뚜렷한 武功을 세운 者에게 수여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證人께서 말씀하신 대로 戰鬪에 일용 空輸部隊가 참가하면 空輸部隊의 長은 참가하는 것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大韓民國의 陸軍의 어느 한 部隊가 어디 間諜作戰에 참가했다고 해서 間諜을 잡았다고 그래서 間諜잡을 때마다 陸軍參謀總長이 武功勳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리가 아니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마찬가지로 證人이 指揮했던 部隊가 31師團이나 戰敎司에 作戰統制 또는 部隊에 배속이 되어가지고 戰敎司令官이나 31師團의 指揮에 의해서赫赫한 功을 세웠다고 한다면 31師團이나 戰敎司令官이 武功勳章을 당연히 탔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作戰指示權이나 指揮權이 없는 원 所屬 部隊의 長인 證人은 받고 당시 司令官인 尹興禎

中將이나 蘇俊烈中將이나 鄭俊烈中將이나 鄭 雄少將은 하나의 칭찬은 커녕 表彰도 받은 사실이 전연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蘇俊烈將軍의 證言과 기타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證人은 光州에 있는 光州의 空輸特戰團에 대해서 사실상 軍部隊의 指揮系統을 무시하고 證人이 직접 3旅團 7旅團 11旅團에 대해서 指揮를 해가지고 사실상의 5月27日 아침의 결과를 초래했고 그간의 무자비한 鎮壓作戰을 전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證人의 證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적 證據와 證言과 物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면서 證人의 이에 대한 答辯을 구하고자 합니다.

○證人 鄭鎬溶 勳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그러면 31師團長이나 尹興禎將軍이 왜 못랐느냐... 참 불행하게도 그 당시 李光魯將軍께서 그때 報告書를 작성을 한 거기에도 31師團長은 실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한 그 연유로 인해서 6月 몇日인가 결국은 補職解任이 되었지 않습니까? 補職解任된 사람을 補職解任시키면서 勳章준다는 법은 그것은 상식에 맞겠습니까? 그래서 못 탄 것이고 그리고 尹興禎將軍은 그 때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遞信部長官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옷 벗은 사람한테 어떻게 武功勳章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은 旅團長이 세사람이 있는데 신우식將軍 최 兪將軍 뭐 공로는 다 같습니다. 다 같지만 그 때 忠武勳章이 할당된 것은 딱 하나밖에 할당이 안되었어요. 勳章을 줄 때는 통상 陸軍本部에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3旅團長이 가장 先任이고 또 고생도 釜馬事態도 있었고 이래서 고생도 했고 해서 3旅團長이 가졌고 다음에 將軍은 화랑 정도를 가지는 조금 階級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화랑 정도는 大隊長들이나 또 부상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할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화랑도 못 타고 충무도 못달 값이면 大統領 表彰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해서 준것이고요. 저의

경우는... 가서 그 당시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고생을 많이 했으니 그래도 特戰司令官도 그 밑에 旅團들이 고생을 했는데 하나 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람들끼리 議論을 해서 저한테 하나 준 것입니다.

그리고 蘇俊烈將軍은 그 때 22일부터 정식 그 部隊를 인수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22일부터 그 作戰이 끝난 것은 27일인데 그 4일 동안에 무슨 兵士들이 누구 間諜 하나 射殺해서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指揮官은... 그러니까 4일 동안의 功을 가지고 勳章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상하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 業績을 축적시켜 가지고 年末에 忠武勳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指揮官의 勳章이라는 것은 兵士들하고 틀려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에 적절한 部隊의 指揮期間이라든가 또 그 部隊의 밑에 있는 隸下部隊가 어느정도 任務遂行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兵士들이 받는 勳章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辛基夏委員 地域統制部隊인 31師團에서 직접 배속해 가지고 統制를 하는데 指揮를 하는데 원 所屬部隊에서는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特戰司의 戰鬪詳報가 31旅團의 戰鬪詳報보다 훨씬 자세하게 記錄되느냐... 作戰에 관한 것은 원 所屬部隊에는 報告할 필요가 없지요. 地域 配屬部隊에다가 해야 되는데 왜 特戰司의 戰鬪詳報가 훨씬 자세하게 記錄되어 있고 31師團의 戰鬪詳報는 그저 흘러가 버린 식으로 몇 字 적어져 있고 마느냐 이것은 바로 特戰司令官의 지휘에 의해서 사실상 戰鬪라고 하는 作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글쎄 이것 당연한 質問이라고 생각이 됩니까마는 이것이 다 軍隊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니까 戰鬪詳報라는 것은 그 때 일어난 때 그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하나의 戰鬪行爲라든가 作戰이 끝나고 난 다음에 歷史記錄을 남기는 目的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때 27日 事態가 끝나고는 28日附

로 전부다 우리 部隊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전부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特戰司令部에서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31師團이 그것을 한 며칠간 데리고 있었다고 해서 詳報를 다시 달라고 해서 자기가 종합해서 구차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그것을 종합해서 그리 뒤 特戰司詳報가 詳細하다는 것은 거기에 旅團詳報를 세밀하게 붙였기 때문에 詳報한 것이지 特戰司司令部내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別添1·2·3·4 해 가지고 무슨 몇 旅團 몇 旅團 戰鬪詳報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移牒物로 해서 다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31師團에 갖다가 移牒物로 붙여도 되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붙여도 되는 것인데 이왕 저희들 部隊 그때 다 돌아왔으니 저희들이 종합해서 陸軍本部에 올려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까지나 하나의 歷史資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바로 그저 18일에 뭐 일이 생겼다고 18日 그것은 뭐 日誌지요. 그래 그런 日誌 등등 해서 전부 다 抽出을 해서 필요한 事項 등등을 만들은 것이 戰鬪詳報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吳景義委員의 순서입니다마는 한時間 停會하고 午後 1時10분에 續開하겠습니다.

(12時8分 會議中止)

(13時11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辛卿植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주세요!

(「進行하세요」하는 이 있음)

(「우리도 주세요」하는 이 있음)

○委員長 文東煥 꼭 하셔야 되겠어요?

벌써 民正黨에서 議事進行發言에 대해서...

(「마이크 넣어!」하는 이 있음)

그냥 하십시오. 벌써 여러번 하셨는데...

○辛卿植委員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發言해야 되겠어요.

(場內騷亂)

내용을 들어 보시면 이것은 정말 委員長님께서 백번 잘 하셨다고 하실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辛卿植委員 委員長님 말씀도 제쳤고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딱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聽聞會에서 李敏燮委員께서 特委委員들에 대한 협박전화 또 위협전화 또는 威脅의인시위 이런 것이 횡행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委員長님께 촉구를 했습니다. 國會議長과 行政府側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어제 당부를 했는데 지금 오늘 午前中에 저희 聽聞會가 끝나고 나니까 그 質問한 委員이나 또는 答辯한 證人 집이나 事務室에 지금 말할 수 없는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전화 가운데에는 정말 잘 했다는 격려 전화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협박과 위협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님께서서는 어제 저희 李敏燮委員께서 촉구하신 政府와 國會議長에 대한 이같은 特委委員들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될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점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 聽聞會에 特委員이 아니지만 같은 黨所屬의 國會議員들이 先輩 同僚議員들이 많이 나와 제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 所屬政黨 特委委員들의 발언이나 또는 아는 證人에 대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것은 서로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이 特委委員아닌 同僚議員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質問이나 또는 證人の 答辯內容을 가지고 會議場內에서 큰 소리를 한단든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會議場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委員長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가지고 會議場 분위기를 좀 엄숙히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議事進行發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밖에서 오늘 전화에 관한 것을 우리 議事進行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은 國會議長에게 이 사실을 연락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議事進行發言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訊問하실 委員들의 명단을 일단 편의를 위해서 발표해 드리고 그리고 吳景義委員께서 訊問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午後에는 吳景義委員 玉滿鎬委員 李肯珪委員 金泳鎭委員 金光一委員 金文元委員 李敏燮委員 朴燦鍾委員 崔鳳九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상당히 뒤로 돌아갑시다마는 李仁濟委員 李海瓚委員 張石和委員 權海玉委員 趙贊衡委員 朴泰權委員 趙洪奎委員 이런 순서가 됩니다. 이제 吳景義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시간은 25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統一民主黨의 吳景義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끼리 이렇게 聽聞會에서 만나게 되어서 政治無常을 생각을 합니다. 證人께서는 아까 午前答辯에서 光州에 3旅團 7旅團 11旅團이 간 것을 시집간 딸에게 비유를 했는데 딸을 出嫁를 해서 간섭을 안한다고 하셨던가요?

○證人 鄭鎬溶 딸이 出嫁 가면 시집 가서 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려운 것은 없는지 또 시부모나 남편은 잘 모시는지 안모시는지 그런 것을 보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吳景義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出嫁外人인데 딸을 시집을 보내놓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마는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딸네집에를 너무 자주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돈의 생활에 대한 一舉一動을 너무 간섭을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금 證人께서는 당시에 20일부터 26일까지 光州를 여러차례 오르내렸는데 그 오르내린 날짜를 기억하세요?

○證人 鄭鎬溶 예, 압니다.

○吳景義委員 한번 언제 가셨던가를 例를 들어보시지요.

○證人 鄭鎬溶 20日 午前에 갔다가 午後에 올라왔고 22日 午前에 갔다가 23日 午前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3日 午後에 다시 내려갔다가 25日 午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6日 저녁에 갔다가 27日 午後에 올라왔습니다.

○吳景義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證人께서는 21일은 光州를 안가셨다고

하는데 21일이 중요한 날인데 지금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記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는 辛基夏委員 質問에서도 21일은 光州에 안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證人의 部下인 崔 雄씨가 空輸 11旅團長인가 했지요?

그 분 말을 빌려도 證人께서는 3·7·11旅團長과 尹興禎 등과 함께 戰敎司에서 앉혀놓고 지휘를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렇다면 證人은 아까 말씀대로 部隊가 가있으니까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部隊가 가있는데 시집살이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지 마는 시집을 잘 적에 너무 많은 혼수감을 보냈다가 또는 「아파트」도 사주고 농도 사주고 했다는 것으로 판정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證人은 당시에 光州에 物資를 뭐뭐를 보냈는가를 기억을 하세요?

○證人 鄭鎬溶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정식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끼를 더 준다는가 夜食을 준다는가 하는 그런 措置고 다음에 마지막에 말하는 便宜服 이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사소한 것은 그때 軍需參謀가 거의 같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軍需參謀가 여러가지 任務遂行에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무슨 방석모라든가 또는 무슨 彈藥에 보호하는 보의같은 것 있습니다. 보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면 裝備를 무엇을 보냈는가를 지금 기억을 못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마지막 作戰을 할때 「스타트」 彈에 대한 支援要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트」彈은 아마 저희들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指揮系統에 의거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스타트」彈이 아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한번 다시 그 부분을 환기를 시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裝備와 補給物資 彈藥 등을 보냈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해드리

겠습니다.

5월21일 3空輸에서 세열수류탄 1,590個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7空輸 세열수류탄 3,300個를 보내고 5월22일 3空輸에는 TNT 100 「파운드」 M60 기관총탄을 2萬發 「크레모어」 180個 7空輸에는 口徑 50徑 銃彈을 264發 그리고 60기관총탄을 6,400發 또 23일에도 3空輸에서 TNT 350 「파운드」 7空輸에서는 「크레모어」 50個 航空隊 20mm 발칸포탄을 1,500發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物資를 그렇다면 보냈습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 그 記錄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별로 信憑性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部隊의 例規는 訓練을 간다든지 또는 駐屯地를 어디로 나와서 어디 판데서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規定된 裝備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의 경우 언제 무슨 對間諜作戰이 일어날는지 또는 언제 무슨 事態가 일어날는지 軍人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 이러한 忠正作戰이 아니더라도 어디 太白山에 훈련을 간다 또는 雪岳山에 訓練을 간다 이런 때는 그러한 規定돼 있는 그런 實彈이라든가 또 彈藥 爆發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은 特戰部隊는 一般部隊하고 編成이 틀립니다. 그래서 特戰部隊는 통상 10분지 2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다 主特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作戰兵이 있고 火器兵이 있고 爆破兵이 있고 醫務兵이 있고 무슨 通信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爆破兵의 裝備는 爆破 「세트」하고 爆破藥입니다.

○吳景義委員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충 그런 정도로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證人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목적으로서 간 것이 아니고 여기는 光州를 갔다는 말입니다.

○證人 鄭鎬溶 光州가 아니라 판데를 가더라도 항상 그런 것은 가지고 갑니다.

○吳景義委員 글썽 판데로 간것이 아니고 光州로 갔거든요 일단 光州로 갈때 가지고 간

것이 그것이 문제인데 판 곳으로 잘 적에 그렇게 가지고 갔다면 軍作戰上 그것이 필요했다고 이해가 가지마는 光州를 간것만은 틀림이 없고 光州를 가계끔 作戰指示를 한 것도 틀림이 없는데 光州에 이렇게 많은 物資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 그것이 오해의 부분이 됩니다.

이 記錄은 國會에서 우리가 資料를 提出했더니 特戰司戰鬪詳報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根據는 확실한 것인데 그렇다면 光州에 이런 物資를 가져갔는데 그런 중에도 「크레모어」라는 武器는 어떤 武器입니까?

○證人 鄭鎬溶 「크레모어」라는 것은 埋伏作戰 때 使用를 합니다.

○吳景義委員 그렇다면 光州鎮壓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光州鎮壓에 「크레모어」를 사용한 일은 없습니다.

○吳景義委員 가지고는 갔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光州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나갈 때는 그러한 戰鬪準備는 다해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軍隊의 常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軍隊生活했을 때 잘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언제든지 어디 部隊移動할 때마다 그러한 장비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吳景義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 우리나라 特戰司의 設立目的이 뭐지요?

○證人 鄭鎬溶 特戰司의 正式名稱은 空輸特戰部隊입니다.

그래서 앞에 空輸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은 이제 주로 낙하산을 하고 敵地域으로 침투한다 하는 뜻에서 空輸를 붙였고 主任務는 特戰입니다. 그 特戰이라는 것은 特殊作戰을 말합니다.

우리가 軍隊에서 크게 나누면 正規戰과 非正規戰으로 나누는데 그 非正規戰中에 特殊作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空輸特戰部隊는 非定規戰 위주의 作戰을 하는 것이 主任務로 되어 있습니다.

敵의 후방에 들어간다는가 또는 敵 후방에 있는 어떠한 特定目標를 점령한다는가 또는

미리 들어가서 위험한데를 개척하고 뒤에 들어오는 正規作戰部隊하고 連結作戰을 한다든가 하는 등등이 결국 特殊作戰에 부여된 任務들입니다.

○吳景義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空輸特戰團이 생긴지는 언제 생겼습니까?

○證人 鄭鎬溶 한 때 오래된 58年인가 59年인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60年度인가 그렇다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全斗煥씨 盧泰愚씨 2名の 大統領을 배출하시고 特戰司에서는 그 외에 두분의 參謀總長 다섯분의 警護室長 등 權力 核心分野에 있는 모든 人物들은 特戰司를 거쳐서 지금까지 배출이 됐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特戰司에서 그런 主要人物들이 배출됩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特戰部隊를 陸軍에서는 일반적으로 精銳部隊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체조건이 좋고 또 정신력이 좀 강인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훈련에 낙오되지 않을 만한 그런 기민성과 이런 등등 강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特戰部隊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등등은 軍隊生活을 하는 데는 아주 좋은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질 등등이 기반이 돼서 그런 경우가 생겼지 않겠느냐 그리고 警護室長 같은 것은 결국 직업으로 봐서 特戰部隊에서 훈련받던 여러가지 그런 훈련 요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선발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예. 훌륭한 인재를 양성을 하고 또 우리 60萬 國軍이 다 훌륭하십니까마는 이상한 것은 거기에서 政治 軍人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 그래서 特戰司가 아니고 特政司가 아니냐 그런 오해가 지금 불려일으키게끔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많은 軍人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特戰司를 거쳐야만 앞으로 본인에 대한 어떤 軍隊에서의 진출이라든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鄭鎬溶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많은 將校들이나 士兵들이 特戰司에 또 안가겠다고 명령이 나와도 나는 못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特戰司같은 데 가서 강인한 훈련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陸軍만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데 꼭 特戰司만 다 總長을 하고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吳景義委員 예. 鄭柄宙少將이 特戰司令官했지요?

○證人 鄭鎬溶 예. 맞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분이 떠나게 된 배경이 됩니까?

○證人 鄭鎬溶 12日 그분도 결국은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吳景義委員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고 鄭昇和 陸軍參謀總長의 불법연행에 대해서 혹 장애물이 되어 가지고 鄭柄宙少將을 연행한 것이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그런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吳景義委員 證人께서는 아까 鄭昇和씨를 의심했습니다. 銃害때 공모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鄭昇和씨를 그렇게 연행한 이유를 댔는데 그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證人 鄭鎬溶 글썽 그때 저는 50師團長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제가 딸들이 아직도 어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통상 師團長級정도 되면 서울에 집을 두고 임지에는 혼자 가 있는 것이 통상인데 저는 어쩌다 결혼이 늦어서 애들이 그때만 해도 많이 늦었습니다. 어린애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애들하고 家族을 전부다 大邱에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陸軍에 制度上 한달에 2泊3日間씩 指揮官에게 自由時間을 주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러한 規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통상 大邱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돌아가는 것을 제가

그때 잘 몰랐는데 大邱에서도 그때 10·26때 鄭昇和씨가 바로 宮井洞과 安家 옆에 있었다. 그리고 또 金載圭씨가 鄭昇和씨도 여기와 있는데 너희들 마음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저는 모르겠습니다. 鄭昇和씨가 진짜 거기에 공모를 해서 협조를 해주려고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金載圭씨의 單獨計劃에 의거해서 뭇 모르고 간 것인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당시 軍隊에서 그래도 鄭昇和씨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國家元首의 銃害를 가늠케 했다 하는 그런 시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吳景義委員 예. 알겠습니다.

證人은 그날밤 거기에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마는 鄭昇和씨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10·26이후의 12·12라든지 혹은 5·18이라든지 지금 악순환이 거듭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밀어 붙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악순환을 거듭하고 힘으로써 무력으로써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問題點들을 우리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吉花는 開 吉實이고 區花는 開區實이라고 했거든요. 좋은 꽃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꽃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인데 善한 것을 뿌리면 善한 것을 거두고 착한 것을 뿌리면 착한 것을 거두는 것이 理致인데 지금까지 보면 일부 政治軍인들이 자꾸만 물리적인 힘으로써 그렇게 惡을 뿌려놓고 善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날 있었던 그 일은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써 많은 證人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證人은 부하에 의해 司令官이 체포당하고 그 과정에서 측근부하가 射殺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鄭鎬溶 불행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戒嚴下에서 戒嚴司令官을 大統領의 許可도 없이 체포한 것은 軍形法上 무슨 罪에 해당하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刑法은 몇 條인지는 잘 모르

것입니다마는 아무 허가 없이 무조건 指揮官 자기의 上官을 체포한다든가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吳景義委員 그렇습니다.

刑法 5條에는 叛亂罪에 적용된다는데 그렇다면 鄭昇和 당시 陸軍參謀總長 이자 戒嚴司令官은 12·12事態는 일부 政權慾에 눈이 어두운 政治軍人들에 의해서 反亂이 되었다고 말하고 歴史的 패륜아라고 規定짓고 있으며 鄭炳宙 당시 特戰司令官과 김진기憲兵監은 사전에 치밀하게 計劃된 下剋上的 反亂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證人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證人 鄭鎬溶 저는 구분들하고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당시 國家元首가 弑害되었을니다.

그래서 合同搜查本部長으로서 그 弑害의 顛末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사실을 밝혀야 할 그러한 義務와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까마는 合同搜查本部는 戒嚴司令官 밑에 있는 機構이고 자기가 上官으로 모시는 분을 조사한다는 것은 펍 거북하고 어렵다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大統領의 決裁를 맡은 것과 동시에 지체없이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은 大統領決裁를 맡으러 가면서 한편은 이미 行動開始를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證人은 누구보다도 軍의 士氣와 指揮體系를 중요시하는 훌륭한 上官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데 12·12 不法「쿠데타」 이후 特戰司令官에 취임한 후 軍의 士氣와 指揮體系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犯法行爲한 特戰司令部 指揮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 당시는 이미 전반적인 하나의 公論이라 할까 이런 것이 이미 형성이 되고 난 다음이고 또 12·12에 대한 것은 大統領閣下の 또 裁可가 이미 나왔을 때입니다. 제가 실제 指揮權을 引受받은 것은 14日입니다. 그래서 보통 軍隊에서는 引受引

繼式을 합니다마는 그때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前任者가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러한 引受引繼式도 못한 상태에서 14日부터 特戰司令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平常時에 있어서 본다면 그것은 法律違反이고 軍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12·12事態에 連累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저는 그때 그것을 不問으로 해버렸습니다.

○吳景義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文書檢證班員으로서 國防부와 陸軍本部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당시에 證人도 거기에 참석을 했던 분중의 한분인데 마흔네사람의 全軍主要指揮官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主要指揮官들 會議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5月17日 저녁 7時부분부터 18日 8時30分까지는 戒嚴狀況日誌도 지금 없어졌는데 李煥性씨는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을 처음 여기와서 알았고 그 다음 周永福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하는데 證人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會議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證人 鄭鎬溶 會議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5月17日 主要指揮官會議때 제가 發言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도 그 會議錄을 찾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입수를 못했습니다.

○吳景義委員 좋습니다.

그 당시에 會議錄이 그렇다면 80年度 그때 없어졌습니까 지금와서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언제 찾았어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와서 찾았어요.

○吳景義委員 최근에 와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찾았다...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가 근간에 어떤 新聞을 보니까 大院君이 자기한테 불리한 歷史史記까지도 없애 가지고 칼로 다 잘라 버렸다는데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會議錄이 없어지고 作戰日誌와 狀況日誌

가 없어졌다는 부분은 그 당시의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은폐하기 위해서 偽作하고 毀損시킨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本委員은 지적을 합니다.

「나치스」가 600萬 良民을 虐殺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史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恨中錄이라든지 여러가지 「드라마」에서도 봅니다마는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보존해야 되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後孫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 당시에 참석한 軍人들이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중요한 會議錄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記錄을 없앨 수 있느냐 그것이 저로서는 참 불만스럽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證人께서는 處罰했으면 좋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확실히 없었는지 作成을 안했는지 저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故意로 그것을 없앴다면...

○吳景義委員 그 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없었고... 없었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 사람은 당연히 法の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吳景義委員 없앤 것을 제가 확인을 現場에 갔던 사람인데 5月17日 7時15分부터 8時30分까지는 一連番號가 2,282番에서 3·4·5番이 빠지고 2,286番으로 경충 뒀었습니다. 한장을 뺐습니다.

○證人 鄭鎬溶 狀況日誌입니까?

○吳景義委員 예, 戒嚴狀況日誌 한장을 뺐고 全軍主要指揮官 會議를 한 부분도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國防部에서 온 결과 요청을 했더니 무엇이라고 왔느냐 하면 "會議資料도 없고 會議錄 및 錄音「테이프」도 없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우리 文書를 檢證을 했는데 딱 이 두가지만 없습니다. 그날 것만 없습니다.

17日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 낮에도 10時부터 午後3時까지 全軍指揮官會議를 했는데 그 會議錄이 없습니다.

다른 것 다 있어요. 17日 무엇을 했는가를 證人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가장 중요한 날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모든 光州問題라든지 全國의인 문제를 戒

嚴擴大를 한다든지 金大中씨를 잡아넣는다든지 金泳三씨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發砲는 어떻게 하고 光州를 어떻게 處理할 것이다...

그런데 그 會議錄은 은폐시켜서 빼손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證人 鄭鎬溶 그러나 國防部 主要指揮官會議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한번도 논의한 일이 없습니다.

○吳景義委員 했다는 얘기는 아직 한번도 못 들었으니까요. 李煥性씨는 모른다는데요.

○證人 鄭鎬溶 그런데 44名이라는 그때 參加한 사람이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 名單도 여기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래서 물론 8年前의 이야기니까 그때 뭐 확실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그 말 그대로는 도저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력을 더듬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강은 거기에서 주로 무엇 어떤 것이 論議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證明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時間이 다 되었으니까 정리 해주십시오.

○吳景義委員 證人께서는 證人도 그날 그 資料를 찾으려고 했다는 말씀하셔서 저도 상당히...

○證人 鄭鎬溶 저도 그것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 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것은 꼭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그 記錄을 절대 우리가 保存해 가지고 잘못 되었다라도 그 記錄만은 남겨서 後孫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證人 鄭鎬溶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吳景義委員 時間關係상 마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共和黨의 玉滿鎬委員 35分이 割當되어 있습니다.

○玉滿鎬委員 共和黨의 玉滿鎬委員입니다. 먼저 12·12事態부터 몇마디 質問하겠습니다.

證人께서는 1979年 大邱에 위치하였던 50師團長에 제설배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玉滿鎬委員 階級은 少將이고...

○證人 鄭鎬溶 예. 少將입니다.

○玉滿鎬委員 少將의 進級은 언제 되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78年1月15日 했습니다.

○玉滿鎬委員 證人께서는 79年12月13일에 처음으로 서울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證人 鄭鎬溶 예. 맞습니다.

○玉滿鎬委員 거기에서 새로운 補職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玉滿鎬委員 13日 午前입니까 午後입니까?

○證人 鄭鎬溶 補職이 결정되었다는 소리는 13日 저녁에서야 들었습니다.

○玉滿鎬委員 13日 당시 2軍司令官 陳將軍의 전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通報를 받았다. 그래서 8時半頃 13日 保安司令部로 가셨다고 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玉滿鎬委員 保安司令部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12·12事態의 總長公館에서의 銃擊戰 다음에 그 당시 30師團에서 모였던 이야기 또 大統領問題에 대한 그런 裁司問題 그래서 제가 그후에 陳鍾琛將軍에서 꼭 그런 부탁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陳將軍님한테 또 제가 모시는 軍司令官이니까 서울에 와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다 하고 제가 報告를 올렸습니다.

○玉滿鎬委員 12·12事態 7時이후부터 4時半까지의 상황을 대략 설명을 드렸다 그 말씀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玉滿鎬委員 補職命令은 陸軍本部에서 받았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玉滿鎬委員 비교적 閑職이라고 할 수 있는 50師團長으로부터 급작히 特戰司令官에 任命된 동기와 그리고 經緯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저희들 師團의 配置問題는 과거 玉先輩께서 軍隊에 계실 때는 그때는 豫備師團이라고 그랬습니다. 豫備師團長을 하고 前方師團長을 나가고 通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師團長을 할 때는 郷土師團이라고 해서 郷土師團이나

前方師團이 조금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豫備師團때는 통상 准將이 했지 少將이 한다는 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師團長을 할 때는 지금은 완전히 前方師團이나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郷土師團을 더 重要視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前方의 任務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後方의 임무는 역시 地方長官하고의 접촉도 있고 地方民하고의 접촉 또 平時에 있어서 오히려 여러가지 對民關係등등이 郷土師團이 더 중요하고 또 地位도 豫備軍 防衛兵 해서 指揮하는 幅도 郷土師團이 더 넓어졌습니다.

저는 50師團이 제가 스스로 支援을 해서 갔습니다. 고향이고 이왕 師團을 指揮하려면 2軍 師團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사실 저는 50師團을 보내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師團이 끝말이 없는 師團이라고는 저는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도 상당히 끝말이 있는 師團입니다. 50師團은...

○玉滿鎬委員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本委員의 견해는 補職面에서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12·12事態의 主要「멤버」였던 將軍中에는 證인과 高等學校의 同期生 陸士 11期生の 同期生 고향의 같은 地域 그리고 一心會의 「멤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特殊한 因果關係가 軍의 定期的인 移動이 아니고 非定期的인 狀況下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다분히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質問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玉滿鎬委員 空輸部隊란 執權者로서는 아주 써먹기 좋은 部隊이다 그것은 機動性이 있고 輕量化되었으며 戰鬪力은 一當百이고 一線部隊를 매달 매처럼 美軍과의 節次등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暴動鎮壓이나 政治目的에 이 部隊가 자주 이용되었다고 바로 證人の 前任者인 鄭炳宙 前特戰戰鬪司令官이 말한 바 있습니다.

방금전 同僚委員께서도 質問이 계셨습니다마는 바로 이 特戰司는 오늘에 와서 2名の 大統領과 2名の 參謀總長의 大統領警護室長을 비롯해서 大統領의 警護 및 親衛部隊로서 首

警司와 함께 警護 및 유지하는 兩側으로 막중한 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히 首都警備司令官과 3軍司令官은 12·12事態에 決定的인 役割을 한 人物이 동시에 補任이 되었습니다. 證人이 50師團長에서 特戰司令官에 任命된 것은 단지 崔圭夏政權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役割이 아니라 9個月後 政權 장악을 위한 新軍部 포석을 위한 것으로 本人은 생각할 수 있는데 證人の 전해는 어떻습니까?

○證人 鄭鎬溶 지금 玉先輩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人脈이 奏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特戰部隊라는 것이 꼭 그러한 政治目的으로만 活用되지는 않습니다. 首警司하고 特戰部隊하고 비교하면 特戰司令官은 1년에 한번도 大統領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首警司令官은 경우에 따라서는 大統領한테 직접 報告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니까지나 特戰部隊라는 것은 그야말로 野戰냄새가 물경물경 나는 것이 特戰部隊입니다. 세가 뭐 그런 人脈도 다소 있었을지마는 그러나 세 經歷이 이 特戰部隊에 나와가지고 特戰司令官을 맡으려면 적어도 特戰部隊의 經歷과 師團長을 歷任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師團長을 歷任한 사람중에서 特戰部隊의 經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 鄭昇和將軍께서 그대로 계셨더라도 저를 特戰司令官으로 任命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政治目的으로만 저를 任命을 했다 하는 것은 제가 納得이 잘 안갑니다.

○玉滿鎬委員 그러나 흔히 世間에서는 政治의 中心圈인 首都 서울에 바로 首都警備司令官部가 있고 또 特戰司令部가 있고 外廓線에는 3軍司令部라는 거대한 部隊가 있습니다. 이거기에 政治權力을 이신하는데에 필요한 兩個司令官과 3軍司令官을 동시에 任命을 하지 않았느냐 또한 거기 「멤버」는 아까도 말씀드렸을지마는 12·12事態의 중요한 役割을 한 人物로서 補任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本人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證人께서는 12·12事態에 직접 關與하지는 않았으나 事態後 新軍隊 核心勢力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新軍隊 核心勢力의 입장이나 현재의 政治的인

위치를 떠나서 단순히 軍人으로서 陸軍總長을 歷任한 軍人으로서 證人은 12·12事態를 어떻게 評價하고 계십니까?

○證人 鄭鎬溶 12·12事態를 저는 正常的인 狀況下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評價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大選때 지금 大統領이신 盧泰愚候補계서도 當事者로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누누이 說明이 있었고 解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國家의 하나의 非常事態의 概念에서 그 行爲를 또 알아봐야 되고 照明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12·12事態에 대해서는 그 당시 大統領을 누구를 뽑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핫 이슈」가 된 그런 事項인데 이미 그것은 國民으로부터 우리가 審判을 다 받은 事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2·12事態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있겠습디마는 그 일으킨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전에 協調를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玉滿鎬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몇번 여러 委員들도 質問을 하셨습니다마는 또한번 本委員도 質問을 하겠습니다.

大統領의 裁可없는 參謀總長의 連行과 당시 特戰司令官을 直屬部下인 空輸旅團의 一部兵力이 銃撃을 가해서 司令官을 직접 逮捕하고 軍統帥權者인 大統領과 上官인 國防部長官 및 參謀總長의 命令系統을 무시한 部隊出動이 適法한 措置였다고...

○證人 鄭鎬溶 適法한 措置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文東煥委員長, 金仁坤幹事와 司會交代)

○玉滿鎬委員 다음은 5·17關係에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 證人께서는 80年 5月17日 國防部에서 開催된 全軍 主要指揮官會議에 參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國保委問題를 本人이 提議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證人 鄭鎬溶 예. 提議하지 않았습니다.

○玉滿鎬委員 本人이 생각기로는 당시 新軍部 核心勢力이었던 證人이 불과 그로부터 1週日 이내에 즉 5月27日 發足하게 된 國保委設置에 대해서 事前에 전혀 몰랐다는 것은 常識

的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제가 보기에는 國保委에 從事하고 있었던 사람이 상당한 高度의 기도비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무슨 일을 해야할 그런 責任이나 그러한 任務를 저는 賦與를 받지 못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아마 고도의 秘密을 지켰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玉滿鎬委員 參考로 한 말씀 더 드리지요. 5月17日 全軍指揮官會議를 召集하였던 國防部長官이었던 周永福證人이나 당시 陸軍總長이었던 李煥性將軍이나 國保委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會議에 들어가기 전에 權正達씨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證人들은 말하였고 이제 이 자리에서 申鉉鎬證人은 國防部長官과 李煥性總長으로부터 國保委問題에 대해서 報告를 받았다고 그렸습니다.

○證人 鄭鎬溶 저도 聽聞會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玉滿鎬委員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玉滿鎬委員 다음은 光州事態에 대해서 몇마디 質問을 하겠습니다.

證人の 隸下部隊인 空輸旅團을 光州에 최초로 전개한 날짜 및 兵力의 범위를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최초 光州에 들어간 部隊는 7空輸隸下の 2個大隊입니다. 33大隊 35大隊입니다.

그 다음에 11旅團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旅團이 들어 갔습니다. 다 하루씩 날짜차이를 두고 들어 갔습니다.

○玉滿鎬委員 7空輸旅團의 大隊는 裡里에 位置하고 있었지요. 전개전에... 裡里에 있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玉滿鎬委員 調査에 의하면 證人の 隸下部隊인 7空輸旅團이 최초로 전개된 位置가 全南大學 날짜는 18日 02時입니다.

裡里에서 光州까지 移動하는 시간은 대략한 4시간정도... 自動車이었더라도... 사전에 準備를 필요로 하면 最小限度 6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移動命令은 17日 戒嚴擴大措置이전에 移動開始가 됐다는 말이 되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移動兵力은 제 기억에 19時에서부터 20時 사이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玉滿鎬委員 다음은 이러한 部隊移動을 위한 作戰命令에 포함될 事項중 狀況說明 移動部隊의 任務... 그 전에 指針 任務 後方支援 및 指揮 通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正式으로 國防部에 文書申請하였을니다마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억이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證人 鄭鎬溶 저희들이 部隊를 投入한 것은 陸本 作戰命令 第18-80號 80年5月17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騷擾事態鎮壓을 위한 部隊投入 이런 題目입니다. 그래 여기에 의하면 學校를 각각 占領을 하라 그래서 1旅團 5旅團 11旅團 13旅團은 首都圈 江北地域을 말아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이 指揮는 首警司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9旅團은 首都圈 江南地域을 말아라 이래서 이것은 首都軍團이 指揮權을 넘겨달라...

○玉滿鎬委員 光州事態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지요.

○證人 鄭鎬溶 7旅團은 大田 全州 光州를 말되 2軍作戰統制下에서 作戰을 하라 이것이...이 내용이 바로 18-80입니다. 다음에 19-80號에 의거해서 首警司作戰統制下에 있던 第11特戰旅團을 2軍作戰統制로 바꾸어라 하는 것이 19-80號입니다.

○玉滿鎬委員 다음 2·3日후의 얘가지요?

○證人 鄭鎬溶 이것이 80年5月18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0年5月19일에 第20-80號 陸軍本部 作戰命令입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3旅團을 다시 2軍作戰統制下에 보내라 이래서 部隊를 逐次的으로 내려 간 것입니다.

○玉滿鎬委員 本委員이 알고 싶은 것은 특히 任務와 後方支援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任務는...

○證人 鄭鎬溶 任務는 忠正作戰 任務遂行입니다.

○玉滿鎮委員 忠正作戰...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玉滿鎮委員 後方支援事項중에서 補給은 原隊에서 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他入部隊에서 보충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通常 原隊에서 彈藥을 가지고 있을 때는 原隊에서 가지고 갑니다.

○玉滿鎮委員 다음은 證人께서 최초로 光州에 내려가신 날짜는 언제지요?

○證人 鄭鎬溶 20日입니다.

○玉滿鎮委員 光州에서 事態가 惡化된 가장 큰 原因은 최초로 鎮壓軍이 空輸部隊의 過剩 鎮壓에 있다고 봅니다 5月18日 아침 全南大學校 校門앞에서 學校에 들어가려는 全南大生 200名이 空輸部隊員과의 충돌로 흐트러진 후 市內로 進出하면서 街頭示威를 할 때 空輸部隊員이 再次 그들을 過激하게 鎮壓하자 처음은 냉정한 입장에서 있었던 市民들이 점차 호응 급기야는 全市民이 호응하여 엄청난 事態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證人은 최초의 事態惡化原因에 대해서 報告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玉滿鎮委員 그 原因을 심도있게 分析하고 또한 檢討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對應措置는 어떻게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저는 말씀을 한 것과 같이 直接指揮系統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언제든지 適示性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제가 어떠한 對策을 講究한다든가 方策을 講究할 그러한 責任도 없었고 또 그러한 位置에 있지도 않았읍니다. 다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은 이야기인데 최초 戒嚴部隊가 學校를 占領을 하고 있으니까 09時30分頃부터 그 날이 日曜日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學生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그 앞에는 전부 다 鋪裝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돌을 쫓을래야 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學校에 들어 가겠다는 것을 어제 戒嚴이 公告되어서 다 休校令이 되어서 學校 못 들어간다. 學校에 있던 사람들도 다 잡아서 보냈으니 못 들어간다. 이

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學生들이 우리 學校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느냐 그래서 學生들 머리속에는 결국 戒嚴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農厚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戒嚴軍으로서 자기 임무수행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옥신각신하니까 學生들이 책가방 속에서 돌맹이를 꼬집어내서 戒嚴군에게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戒嚴軍이 아! 그때야 무슨 防石網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부상도 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은 그런 것으로 끝났는데 그 후에 이 學生들이 市內에 가서 口號를 외치고 하니까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午後 4時 좀 넘어서 警察의 힘 가지고는 鎮壓이 안 되니 空輸部隊가 鎮壓次 나가라 하고 出動이 나왔읍니다. 命令이... 그것이 바로 32師團에서 한 것입니다. 바로 鄭 雄將軍이 그 指示을 했습니다. 그래서 空輸部隊가 示威現場에 나가서 싸운 것은 鄭 雄將軍의 命에 의해서 그 거리에 나가서 싸운것 입니다.

○玉滿鎮委員 證人께서는 그 報告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들으셨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이 現地 大隊長들한테 報告를 들었습니다.

○玉滿鎮委員 9月19日과 20日 現地の 事態惡化擴大로 인해서 11空輸旅團과 3空輸旅團을 追加投入시켰는데 이것은 證人の 判斷에 의한 建議에 따라서 결정된 措置였습니까?

아니면 現地 作戰責任者인 戰敎司 司令官의 要請에 의한 것이지요?

○證人 鄭鎬溶 아마 作敎司 司令官이나 2軍의 要請을 받아서 陸軍本部에서 決定한 措置입니다.

이미 그 때는 저는 部隊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權限도 없고 玉先輩께서 軍隊를 잘아시니까 그 指揮官이 어디 보내고 싶다고 자기 部隊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玉滿鎮委員 部隊를 移動을 시키는 것은 물론 陸軍本部의 命令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狀況判斷은 原隊 部隊를 隸屬시킨 現地部隊의 部隊長의 의견도 있겠습니까마는 現地部隊는 正常的인 編成에 의한 指揮官이 아닙

니다 따라서 原隊의 司令官께서는 이 문제에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光州事態에 대해서는 18日 19日是 狀況報告도 못들었습니다

저는 그 때 4個 旅團이 都市圈에 막 깔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主로 學校에 配置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部隊를 訪問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司令部에 있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光州가 어떻게 되었는지 18日 19日是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玉滿鎬委員 후에 들었지요?

○證人 鄭鎬溶 예. 후에 들었습니다

○玉滿鎬委員 空輸部隊의 最初의 死傷者發生日時 및 場所 그 경위에 대해서는 報告 들은 사실이 있지요?

次後라도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예. 전부 다 次後에 들은 얘기입니다.

○玉滿鎬委員 얼마나 늦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 당시에는 特戰部隊가 저한테 狀況報告 할 그러한 任務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報告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잘못했다 싶은 것은 잘 이야기 안하는 것이 또 사람 常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하는 것은 정말 한참 후에나 알게 된 것입니다.

○玉滿鎬委員 그러면 당시 光州市民의 最初의 死傷者發生日時나 場所 역시...

○證人 鄭鎬溶 글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日 무슨 流彈에 의해서 高等學校 學生이 하나 맞아서 죽었다 하는 얘기가 그 후에 그것도 最近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21日 戒嚴軍이 發砲를 해서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다 最近에... 이제 光州가... 聽聞會가 되고 아래서부터 저는 알게된 狀況들입니다

○玉滿鎬委員 光州에서 한참 事態가 惡化一路에 달했던 5月 21日 現地의 最高 指揮官이었던 尹興禎中將을 蘇俊烈少將으로 交替하였는데 作戰指揮中에 있는 現地 指揮官을 電擊的으로 交替한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鎬溶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尹興禎將軍이 그때 入閣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玉滿鎬委員 그것은 다음 얘기입니다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까?

○玉滿鎬委員 당시 全羅南北道 戒嚴分所長이었던 作教司 司令官은 軍團長을 歷任한 將軍이 補任되는 責任있는 職責으로서 序列이 낮은 陸軍行政學校 校長이 있던 蘇少將을 긴박한 狀況에 있는 光州地域 平定을 위해서 긴급하게 補任한 措置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蘇俊烈將軍을 보낸데 대해서 말씀입니까?

○玉滿鎬委員 예. 그런 상황하에서 指揮官을 交替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본證人의 전해는 어떻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尹興禎將軍께서 入閣을 했습니다. 入閣을 하게 되니까 가장 적절한 後任者를 누구로 할 것이냐 蘇俊烈將軍은 그때 中將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少將중에는 가장 序列 높은 그런 少將級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故鄉도 그 地域이고 그래서 蘇俊烈將軍이 選定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玉滿鎬委員 한마디... 그러면 더 계속해서 묻습니다.

당시 尹興禎司令官은 軍 部隊에서... 8期生입니다. 이러한 上級者요 先輩가 光州鎮壓作戰隊行에 부당스러운 존재로서 생각하여 更迭한 것인지 아니면 事態惡化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交替하여 豫編을 시켰는지 당시 證人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알아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또한번 묻고자 합니다

○證人 鄭鎬溶 저는 尹興禎將軍께서 어떻게 해서 入閣을 하게 되었는지 또 蘇俊烈將軍께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選定이 되었는지 그 選定過程이나 解任過程이나 또는 豫編過程에 있어서는 전혀 關與한 바가 없습니다.

○玉滿鎬委員 이는 陸軍의 定期 人事異動이 아니었지요? 時機的으로 봐서...

○證人 鄭鎬溶 아! 閣僚로 가셨으니까 그것

은 定期 人事異動이 아니지요.

○玉滿鎬委員 그러면 당시 光州에 駐屯했던 作敎司令部 31師團 7·11·3空輸旅團 및 第20師團의 命令系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처음에 7旅團 2個大隊만 갈 때는 그것은 部隊가 적으니까 31師團에 配屬을 시켜주었습니다. 다음에 들어간 部隊가 11旅團인데 11旅團은 31師團의 作戰統制下에 넘겼습니다. 또 다음에 들어간 것은 3旅團인데 3旅團도 31師團의 作戰統制下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師團兵力보다도 거기에 配屬된 兵力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20師團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戰敎司令部에서 31師團에 配屬시켜서 作戰을 주는 것 보다는 적절히 이것을 다시 再統制를 해야 되겠다해서 31師團에 作戰統制權을 解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玉滿鎬委員 5月 27日 鎮壓作戰에 대해서 두 마디만 묻겠습니다.

證人께서는 5月 27日 새벽 光州의 鎮壓作戰은 現地의 指揮官이었던 戰交司令部 단속으로 행해진 鎮壓作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鄭鎬溶 예.

○玉滿鎬委員 本 委員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시의 光州平定作戰은 단지 軍事的인 행동으로만 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분히 政治的 社會的인 문제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狀況이었기 때문에 둘째는 現地의 部隊가 正規 編成에 의한 部隊가 아니고 空輸旅團 20師團을 포함한 他入部隊로서 暫定的인 任務를 遂行하기 위한 暫定的인 措置였습니다. 그러기에 師團作戰 軍團作戰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1個團내지 2個團의 上部의 作戰計劃에 의해서 作戰이 시작이 되는 것이 通常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作戰指示는 반드시 上部機關인 陸軍本部의 作戰指示에 의하지 않았나 本人은 確信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證人 鄭鎬溶 방금 午前中 質問에 27日零時 이후 實施해도 좋나하는 그런 指示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이번에 여기에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나만 作戰 자체는 언제까지는 해서 안된다든가 또는 빠르다든가 늦다든가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 파악한 狀況을 역시 언제 몇시가 가장 좋으나 하는 문제만은 이것은 現地 指揮官이 결정을 해야 될것이다. 그리고 아마 27日 이후부터는 作戰을 해도 무관하다 하는 그러한 陸軍本部의 양해가 있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그日時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결국 時間과 날짜를 戒嚴司令部한테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한다 하는 것을 報告를 안했다고 그래서 제가 蘇俊烈將軍 보고 그것은 꼭 報告를 해야 할 事項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서 그것을 報告를 했습니다.

○玉滿鎬委員 그렇다면은 證人께서는 特戰司令部로서 많은 隸下部隊를 配屬시킨 蘇俊烈 당시 戰鬪兵科司令部에게 忠正作戰에 대해서 進言 助言이나 협조를 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鄭鎬溶 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原所屬部隊 또는 지휘들이 母體部隊라고 얘기하는데 母體部隊의 長은 경우에 따라서 參謀와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助言者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諮問役割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결심이나 또는 指揮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은 所屬部隊의 長입니다. 그래서 蘇俊烈將軍께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는 굉장한 고심을 했습니다. 굉장한 고심을 했고 또 위낙에 國民相對의 作戰이니까 이제 많은 희생이 나오면은 蘇俊烈將軍이 어떤 處罰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事態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외로운 결심을 하신 분이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玉滿鎬委員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仁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玉滿鎬委員 證人께서는 평소 그리고 오늘 아침의 證言에서도 말씀하셨습니까라는 光州問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法的 책임을 사치하고 道義的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光州事態에 대해서 전연 책임이 없다는 말은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道義的인 책임을 아주 깊이 느

끼고 있습니다.

○玉滿鎭委員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仁坤 新民主共和黨所屬 玉滿鎭委員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李肯珪委員 質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30分입니다.

○李肯珪委員 民主正義黨의 李肯珪委員입니다.

同僚委員을 모시고 이런 質疑를 하게 되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證人이라고 呼稱을 여쭙겠습니다. 證人께서는 80年5月18日 午後 2時에서부터 4時 사이에 당시 31師團長 鄭 雄 씨가 「헬」機를 타고 朝鮮大 全南大에 가서 당시 特戰司의 權승만 33大隊長과 金일옥 35大隊長한테 警察力을 갖고는 示威鎮壓이 도저히 불가능한만큼 道廳앞과 錦南路 一帶에 示威鎮壓命令을 하니 직접 나가서 示威를 鎮壓하러 하는 얘기를 직접 命令을 下達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狀況으로 봐서 空輸部隊가 光州市內에 처음으로 出動한 첫 행위가 된다고 本委員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證人께서는 作戰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이후에라도 鄭 雄 씨의 示威鎮壓命令을 아까 玉滿鎭委員 質疑에도 대답하신 것 같은데 직접 이 大隊長들한테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說明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證人 鄭鎭溶 제가 大隊長한테 얘기를 듣기도 그때에 師團長께서 직접 와서 大隊長한테 도저히 警察 힘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 示威를 막아달라 이렇게 命令을 했다고 그러합니다. 그것은 제가 大隊長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李肯珪委員 空輸部隊가 光州市內에 나가게 된 첫번째 行爲가 되는 거지요 그때가...

○證人 鄭鎭溶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原陸軍本部 計劃은 學校만 占領하는 計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問題의 示威現場에 나가는 그 出動命令을 바로 거기에서 내린 것입니다.

○李肯珪委員 이 기회를 빌어서 하나 더 여쭙겠는데 證人께서는 그 당시에는 指揮系統에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光州狀況을 잘 모르시

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現地 現場狀況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일로 정확하겠습니까?

○證人 鄭鎭溶 그 당시 出動이 되었던 大隊長 또 그 밑에 있던 中隊長 그 다음에 31師團의 各 參謀 31師團長 등등이 現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李肯珪委員 역시 現地를 指揮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겠지요?

○證人 鄭鎭溶 그렇습니다.

○李肯珪委員 證人께서는 지금까지 光州事態 당시 證人께서는 參加는 했는데 參加의 概念이 저희들이나 一般 視聽者들이 參加의 概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參加의 概念에 대해서 좀 說明해 주시지요.

○證人 鄭鎭溶 參加라는 것은 特定部隊가 光州事態에 參加했다는 概念과 特定司令官이 光州事態에 參加했다는 概念은 똑같습니다. 特定部隊가 光州事態에 參加했다면은 特定部隊가 사실은 7個旅團이 있습니다. 그중에 3個旅團이 參加를 해도 特戰部隊는 參加했다고 말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光州에서 作戰指揮權을 行使 안 해도 제가 指揮하고 있던 部隊가 光州事態에 參加했기 때문에 그 指揮官은 參加한 것입니다.

○李肯珪委員 證人께서는 당시 部下인 空輸部隊員들을 配屬시킴으로써 光州事態에 參加는 했으나 作戰指揮權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命令은 한 사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軍을 잘 모르는 一般人을 위해서 軍의 指揮系統 즉 作戰指揮系統을 좀 說明해 주실수 없겠습니까?

○證人 鄭鎭溶 글썽 조금 전에도 說明을 했읍니다마는 일단 作戰統制를 시킨다든가 配屬을 시킨다든가 할 때는 다시 그 部隊에 자기 任意의 命令을 내려면은 그것은 解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韓美關係에서 여러번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평소 美軍의 作戰統制下에 있는 部隊를 韓國政府나 韓國軍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반드시 美軍部隊에서 作戰統制되어 있는 것은 解除를 시켜야 됩니다. 解除를 시키기 전에는 命令을 내릴 수도 없고 또 命令을 받은 部隊가 그 命令에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命令은 예를 들자면은 너희들은 示威隊를 鎮壓

하지 말고 撤收하라 제가 指揮權이 있으면은 그렇게 指揮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撤收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撤收에 대한 責任은 撤收命令을 내린 사람이 집니다. 또 너희들은 鎮壓을 하라 警察의 힘으로 안되니까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指揮權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그것은 指揮權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있었고 서울의 司令部와 現地에 있는 大隊長하고는 通話도 안되고 指揮手段도 講究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 제 자신이 忠正作戰에서 證人이 勳章을 授與받은 것은 本人이 光州事態를 잘 收拾한 功勞가 아니라 部下들이 參加했기 때문에 部下들의 蓄積된 功勞로 인해서 단순히 그들의 上官이기 때문에 勳章을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上官이라는 것은 部下의 功에 의거해서 勳章도 받고 處罰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指揮官이 자기하고 아무 것도 아니어도 결국 잘못했으면 또 저기에 대한 道義的인 地位的인 責任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제가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陸軍本部 功害委에서 저에게 준 것입니다.

○李肯珪委員 午前에 辛基夏委員께서 質疑하는 과정에서 제가 調査한 바와 약간 틀리기 때문에 한가지만 證人한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午前에 辛基夏委員께서 市民側의 武裝은 80年5月21日 14時 이후이며 그 전에는 武器被奪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國防部에서 提出한 戰鬪詳報나 作戰日誌등에서 확인한 바로는 羅州 金城派出所의 武器被奪事件은 80年5月21日 12時이며 同 派出所 등에서 「카빈」 510挺 LNG 輕機關銃 4挺 M-1小銃255挺 AR自動小銃 4挺 및 各種 實彈 10萬3,806發이 이미 被奪되었으므로 5月21日 12時부터는 市民들이 武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날 道廳 앞에서 最初 發砲되었던

時刻보다 1時間 30分 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證人 鄭鎬溶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다음으로 本委員이 光州特委에서 아주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오늘도 조금 전에 거론된 發砲命令과 自衛權 行使問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우리 聽聞會를 보고 계시는 視聽者분들께서도 상당히 문제가 헛갈리리라 생각되어서 이 문제를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自衛權發動과 發砲命令이 이렇게 답답한 문제로 本委員을 비롯해서 야기가 되었고 하니 質疑를 하는 저희들 軍指揮系統을 확실히 깊이 모르는 저희들은 發砲命令과 自衛權行使를 同一視하고요. 여기에서 答辯하시는 軍責任者이셨던 분은 自衛權行使와 發砲命令을 구별하는 前提 밑에서 證言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즉 基本 前提가 다른 상황에서 質問論理를 전개하고 答辯하기 때문에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명쾌한 質問 答辯이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마침 證人께서 軍의 指揮官을 두루 지내신 바 있고 陸軍參謀總長과 國防部長官을 歷任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答辯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發砲命令과 軍의 自衛權行使 指示間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光州事態 있었던 戒嚴軍의 發砲問題를 이 기회에 확실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本委員이 가장 基本的인 常識에서 생각해 볼 때 軍의 發砲는 첫째 正規戰이나 非正規戰에 임한 軍人이 敵과 交戰할 경우 둘째 敵과의 交戰이외의 任務遂行時 職務에 임하여 法令이나 業務로 인한 正當行爲로서 아니면 業務遂行者 自身の 身體나 生命에 대한 危害要素를 除去키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情況이 있을 때 發砲하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證人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런데 軍에서는 통상 敵과의 交戰 이외의 發砲 즉 任務遂行중 무기를 사

용하는 경우를 自衛權行使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李肯珪委員 다시 말하면 任務遂行中 軍인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통상 自衛權行使要件으로 軍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은 自衛權行使는 敵과의 交戰時말하는 發砲命令과는 명확히 구별된다는 것입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李肯珪委員 本委員이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調査한바로는 正規戰이나 非正規戰 狀況에서 交戰함에 있어 軍作戰上 發砲時期를 特定하여 더큰 作戰效果를 거둘 필요가 있을시에 部隊의 指揮官에 의하여 發砲命令이 特定될 수는 있으나 敵과의 交戰 이외에 軍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즉 自衛權行使時는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別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任務遂行이 불가피하다는 상황내지 情狀 판단이 있을 경우 發砲命令이 없이도 自衛權行使라는 개념하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自衛權은 특별한 무기 사용命令이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本委員이 이러한 發砲命令과 自衛權行使 개념에 대하여 本委員의 正義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證人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알겠습니다. 發砲命令 命令하 시는데 원래 戰術的狀況下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은 射擊命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射擊命令은 지금 光州事態에서 나오는 것 하고는 전적으로 그건 틀립니다 그것은 미리 먼저 누가 發砲를 해가지고 敵이 먼저 쏘아대니까 알았든가 하면 결국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잘못 射擊을 괜히 하면 敵도 오기전에 괜히 射擊해 가지고 實彈만 다 낭비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戰鬪時에 있어서는 射擊命令이라고 그러고 發砲命令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自衛權이라는 것은 軍인이 任務를 遂行을 했을때 銃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任務遂行이 불가능하다 이럴때는 그건 發砲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教育을

받았습니다 衛戍令에 근거가 됩니까마는 衛戍令 15條에는 「暴行을 받아 自衛上 부득이 할 때 多衆의 亂動時 兵器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압이 어려울때 身體 生命 또는 土地 기타 물건을 방어할 때 다른 수단이 없을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軍人服務規律 123條는 이걸 大統領令입니다 「身體 生命 또는 財産保護에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暴行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상황이 급박하여 自衛上 부득이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軍인은 들어올 때부터 自衛權이었다 하는 것은 教育을 받고 있습니다 軍인이 항상 一般 사람들하고 틀리다 하는 것은 그 權利가 있다 하는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軍인이 어디를 가나 任務가 있을때 銃을 열러매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一般 民間人하고 틀리다는 뜻입니다 또 軍인이 任務遂行過程에서 武器를 사용하지 않으면 任務遂行을 못하겠다 할 때는 武器使用의 權利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權利가 있다 하더라도 軍인이 함부로 총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實彈分配로서 그것은 統制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實彈은 가지고 가되 그 현장에 예를 들어서 示威鎮壓을 한다든가 이런 현장에는 가지고가지 못하게 그것은 大隊長이나 中隊長의 統制下에서 그것이 직결보유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示威鎮壓을 한다든가 생각할 때는 實彈이 없어서 아무리 감정이 흥분하고 그래도 총을 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 自衛權行爲를 部隊에서는 統制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根本의으로는 軍인은 武器를 사용하지 않으면 任務遂行에 불가능할 때는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사용할 權利가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예. 그런데 향간에 일부는 80年5月21日 13時30分頃에 全南道廳앞에서 示威隊와 戒嚴軍의 對峙時 戒嚴軍이 集團發砲를 하였고 이때 發砲命令者는 證人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證人은 이때 道廳앞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證人 鄭鎬溶 모르고 있었습니다.

○李肯珪委員 당시 상황에 대한 戒嚴當局側發

표를 보면 數十萬의 示威隊가 光州市街地를 대부분 장악했고 마지막으로 道廳을 占據하고 자 最後沮止線을 펼치고 있던 戒嚴軍과 對峙하고 있던 중에 그날 아침 9時頃 防衛産業體인 아세아車動車工場에서 示威隊가 탈취한 軍用 장갑차로 戒嚴軍 沮止線을 돌파하여 戒嚴軍 1名을 즉사시키고 7名の 負傷者를 내자 戒嚴軍은 후퇴하고 곧 바로 역시 示威隊가 버스로 戒嚴軍沮止線을 향하여 돌진시 姓名未詳의 戒嚴軍幹部들이 이 돌진하는 버스를 향해 사격을 한 것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라고 記錄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實彈支給은 士兵들 한테는 支給되지 않았고 幹部들에게만 基本實彈 15발이 支給되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임하여 戒嚴軍이 사격한 것이 어떤 發砲命令이 있어 그 命令에 의해서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이 상황에 證人께서 직접 發砲命令을 내리셨다고 보십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내리지 않았읍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道廳에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읍니다.

○李肯珪委員 앞서서 質疑한 道廳앞의 戒嚴軍 사격은 조금전 本委員이 證人에게 訊問했던 發砲命令과 自衛權行使 둘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보기에 31師團이나 또는 特定... 戰鬪敎育司令部에서 사격해도 좋다 하는 그런 지시가 안내린 한은 현지 指揮官이 알아서 한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李肯珪委員 예. 알겠읍니다. 證人께서 이 부분을 發砲命令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自衛權行使였다고...

○證人 鄭鎬溶 저는 그렇게 봅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 당시 이 道廳앞에서 鎮壓作戰을 직접 遂行했던 장병들의 현장 證言을 통하여 특별한 發砲命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판명되도록 委員長께서는 조속히 證言臺에 責任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訊問을 끝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仁坤 고생이 많았읍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金泳鎭委員 訊問해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20分입니다.

○金泳鎭委員 證人! 訊問하겠습니다.

證人께서는 방금 앞서 民正黨의 李肯珪委員께서 質疑하신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서 民主黨의 吳景義委員의 質問 答辯에 대해서 證言하신 내용중 本委員이 다시한번 분명히 그 사실을 진실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몇가지 부분을 지금 訊問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李肯珪委員의 質問에 대답하시기를 훈장부분에 대해서 答辯하시면서 부하가 잘한 일이 있을 경우 그 상급자의 上司가 賞을 받는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光州를 鎮壓했던 당시 상황과 指揮體系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上司가 당시에 22名이나 주로 作戰事項日誌에 의하면 我軍끼리 서로 誤認해서 죽은 22名の 이 많은 소위 軍 부하들의 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泳鎭委員 그런 피를 생각해 보시지 않고 아무 책임없이도 공에 의해서 훈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 당시 많은 희생자가 났읍니다. 그래서 特戰司에서는 15名이 다 죽었읍니다.

○金泳鎭委員 그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答辯만 해 주세요.

○證人 鄭鎬溶 그래서 주로 훈장을 이 사람들이 땀읍니다. 이 죽은 사람들에 훈장이 배당이 되었읍니다.

○金泳鎭委員 그러면 죽은 사람도 훈장을 받았고 죽지 않은 최고의 上司인 證人께서 훈장을 받은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인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그 당시에 훈장을 주는 사람들의 審査基準에 따라서...

○金泳鎭委員 훈장을 받았던 본인의 심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저야 주니까 받았지요.

○金泳鎭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하의 잘한 일에 대해서 上司가 훈장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아까 證人께서 證言하시기를 부하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셨죠?

○證人 鄭鎬溶 예. 물론입니다.

○金泳鎭委員 부하의 잘못된 일은 분명히 훈장을 받은 것 같은 방식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 좋습니다.

다음 두번째. 묻겠습니다.

吳景義委員의 質問에 證人께서 答하시기를 「크레모아」를 전혀 사용하신 일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證人 鄭鎬溶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金泳鎮委員 당시에 M16 9,646발 M203 19발 수류탄 12발 T.N.T 25「파운드」 뇌관 25개 M60 925발 최루탄 150발 이런 장비를 證人께서 말씀하시기를 對間諜作戰遂行上 평상시에도 지참하는 그런 일반적인 장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이런 숫자 내용도 맞습니까?

○證人 鄭鎬溶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내용은 ...

○金泳鎮委員 그런데 證人께서는 통상 對間諜鎮壓作戰 당시에 지참하는 장비라고 그러셨는데 本委員이 지금 그 證言을 하신 뒤에 關係記錄을 찾아 보니까 깜짝 놀라게도 이것은 평상시에 휴대하는 장비의 숫자와 量이 아니라 탄약을 소모했던 量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16 8萬5,000발 중에서 9,646발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殺傷用입니다.

여기 최루탄은 400발 지참했는데 150발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루탄은 證人도 本委員도 알다시피 이것은 解散用입니다. 그런데 이 최루탄은 400발 중에서 150발을 사용하면서 殺傷用인 무차별하게 鎮壓하는 M16은 9,646발을 사용했다 또 더구나 깜짝놀랄 사실은 武力鎮壓用 「헬리콥터」까지 동원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헬리콥터」는 그냥 군중에게 武力을 시사하기 위해서 恐怖感을 주기위해서만이 아니라 21日 9時에 2軍司令部에서 武裝「헬리콥터」를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21日 오후에 道廳앞 광장에서 이 武裝「헬」機를 무차별 난사를 해서 道廳앞 광장에는 여기 저기서 이 武裝「헬리콥터」의 집중사격에 맞아 죽은 시체들이 나뒹굴었다 이렇게해서 적어도 光州를 鎮壓이 아니라 이 流血을 통해서 무차별하게 鎮壓했던 근거가 바로 이 실태 消耗量 그리고 證人의 부하들이 현장에 가서 했던 행위가 적나라하게 證言되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金委員! 武裝「헬리콥터」가 와서 무차별 亂射했다는 그 證據가 확실히 있습니까?

○金泳鎮委員 證據가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면 武裝「헬」機는 어디에서 어느 部隊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金泳鎮委員 武裝「헬」機는 兵力輸送用 「헬」機는 UH1H機로써 당시에 13대가 동원되었습니다.

武裝「헬」機는 AH-1J機 總 4대가 지원되었습니다. 總 14번 뺐습니다.

19時間동안 비행한 기록이 분명히 여기 關聯文書에 나와 있습니다. 否認하시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뺐을 뿐이지 무차별 亂射했다는 證據가 됩니까?

○金泳鎮委員 調査를 하셔야됩니다.

○證人 鄭鎬溶 그리고 그것을 어느 部隊에서 支援要請했습니까?

○金泳鎮委員 그 部隊內容은 調査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本委員이...

○證人 鄭鎬溶 그것을 전부 다 空輸部隊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비약시키지는 마십시오.

○金泳鎮委員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空輸部隊가 안했으면...

空輸部隊가 鎮壓했습니다.

○證人 鄭鎬溶 空輸部隊에서 그것을 요청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作戰系統이 있습니다.

空輸部隊에서 한다면 31師團 戰鬪教育司를 통해서 2軍에서 지원했습니다.

○金泳鎮委員 光州市民은 무차별한 空輸「헬」機에 의해서 21日날 쓰러져 갔습니다.

(金仁坤幹事, 文東煥委員長과 司會交代)

○證人 鄭鎬溶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한번도 무장「헬」기의 사격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金泳鎮委員 처음 듣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아까 證人께서는 良民虐殺問題도 처음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한번 糾明해 봅시다.

다음 證人께서는 5月25日 光州에서 상경해서 黃永時將軍과 함께 保安司에 들어서 全斗煥씨를 만난 일이 있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그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黃永時將軍하고 保安司令官하고 저하고 있었습니다.

○金泳鎮委員 全斗煥씨도 같이 있었지요?

○證人 鄭鎬溶 물론입니다.

○金泳鎮委員 空輸部隊의 示威偵探을 위한 便衣隊에게 便衣服을 가지고 光州에 내려갔다고 말씀했는데 光州에 도착한 時間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몇 時입니까?

○證人 鄭鎬溶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金泳鎮委員 정확하게 대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8年前입니다. 8年前 것을 金委員은 正確하게 기억하셨습니까?

○金泳鎮委員 아까 말씀하시기를 辛基夏委員의 質問에 밤 10時 늦은 時間이라고 그랬는데...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10時 늦은 時間이 맞습니까? 오후가 아니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오후는 아니었습니다. 夜間飛行한 것은 확실한니까요 그러니까 9時半에서 10時 그 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泳鎮委員 證人은 당시 戰敎司司令部에 갔더니 作戰開始를 위해서 兵力이 이미 投入된 후여서 가지고 갔던 便衣服은 사용해 보지도 못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그 무차별한 道廳鎮壓作戰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다 그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제시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간여하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 作戰命令을 下達하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金泳鎮委員 그것을 물랐다는 증거도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러니까요. 제가 27日 몇時부터 한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作戰命令을 下達할 수가 있습니까?

○金泳鎮委員 그런데요. 證人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關聯文書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任務가 각각 따로따로 부여됩니다. 따로 따로 부여되는데 5月26日 戰敎司의 任務는 27日에 流血鎮壓을 위해서 文官을 道廳에 잠입시키는 그런 任務가 부여되고 있음

니다.

이것은 陸軍本部가 발행한 戰敎司 戰鬪詳報의 근거입니다. 特戰隊는 下士官을 現地に 침투시킵니다. 침투시키되 便衣隊服裝으로 시내에 침투시켜서 정찰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時間은 바로 證人이 도착하기 훨씬 전인 9時前이거든요. 그러면 證人이 주장하는 것은 일치가 되지 않고 지금 證人의 地位와 身分으로보아서도 서울에 便衣服 이것을 가지러가기 위해서 서울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은 어딘지 의심이 가는데 證人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지금 방금 말한 것은 어디서 나온 書類입니까?

○金泳鎮委員 陸軍本部에서 나온 戰敎司戰鬪詳報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러면 戰敎司에서 特定部隊 사람들을 뽑아서 便衣服을 입혀서 활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日에는 저는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25日 오후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戰敎司에서 어떤 作戰準備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金泳鎮委員 證人께서는 지금 記憶을 더듬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本委員은 분명히 陸軍本部가 特委會 제출한 關聯文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거기의 무슨 記錄이 저하고 무슨 關係가 있습니까?

○金泳鎮委員 왜 關係가 없습니까? 便衣服을 가지러 서울에 가셨다는데 이 便衣服을 가지고 이미 證人의 部下가 特戰司令部的 部下가 침투되어서 作戰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방금 그랬습니다. 證人께서 그지와 신분으로 보아서 便衣服을 가지러 다닐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지금 民正黨委員도 의심 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便衣服을 가지러 서울로 가셨다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保安司令部에 便衣服이 있습니까? 保安司令官 全斗煥氏가 便衣服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證人께서는 歷史의 진실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證人 鄭鎬溶 金委員 다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便衣服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는 그 戰敎司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金泳鎭委員 그런데 왜 便衣服을 가지러 서울에 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鄭鎬溶 便衣服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발이었었습니다.

○金泳鎭委員 예?

○證人 鄭鎬溶 가발이요.

○金泳鎭委員 그런 가발 이야기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두번의 質問에 答辯하실 때에는...

○證人 鄭鎬溶 便衣服中에 가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金泳鎭委員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가발이 保安司令部에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래서 保安司令部에서 그런 것을 주로 취급을 하니까 가서 좀 지원을 해 달라...

○金泳鎭委員 保安司令部에서 가발을 취급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어허! 그런 작전을 위한 그런 情報費나 이런 등등이 保安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 것이요. 가발을 살려면...

○金泳鎭委員 證人! 本委員도 軍隊生活를 했고 越南에서 實戰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保安司에서 그러한 便衣服과 가발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證人께서도 아까 證言했듯이 반드시 證人이 서울에 올라갈때는 軍需參謀가 같이 수행하고 따라가서 특히 軍需參謀는 國防部 調達部에 가서 이런 物資를 가져오고 證人은 保安司에 간 것은 27日에 道廳의 流血鎮壓을 保安司令官인 全斗煥氏와 의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그런 심증이 굳어지는데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가발 말고 말입니다. 여기 가져온 장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대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 質問입니까?

○金泳鎭委員 質問입니다. 答辯해 주세요.

○證人 鄭鎬溶 그러면 質問을 하시면 答辯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金泳鎭委員 마대는 어디에 씁니까? 答辯해 주세요.

○證人 鄭鎬溶 우리는 여기에서 우격다짐으로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 하기 위해서 聽聞會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마대를 어디에 썼는지 作戰部隊指揮官한테 물어 보십시오. 왜 저한테 물어 보십니까?

○金泳鎭委員 아니 가발까지 가지러 가셨던 證人께서 이 중요한 마대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그때 作戰指揮를 하는 戰鬪敎育司令官이나 師團長이나 旅團長한테 물어 보시면 됩니다.

○金泳鎭委員 그러면 便衣服과 가발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마대가 3萬5,000매가 光州에 투입됩니다.

○證人 鄭鎬溶 저한테 물어 보지 마십시오. 마대가 어디에 썼는지 저는 모릅니다.

○金泳鎭委員 그런데 證人께서는 25日 서울에 올라 가셨지요? 이 마대는 26日 그것도 비행기로 공수해서 光州에 투입 됩니다. 이 마대는...

○證人 鄭鎬溶 글썽요. 그것은 戰敎司令官한테 물어 보시든가 參謀한테 물어 보시면 저절로 알 문제입니다. 저절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金泳鎭委員 本委員이 추정 하기로는 이 마대는 바로 무차별하게 진압 당시에 사용했던 이 흥기에 의해서 살해당한 光州市民을 이 마대에 넣어서 지금 暗埋葬했다고 하는 심증이 점점 굳어져가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진행중인데 이 마대 3萬5,000매를 통상 지참한 것도 아니고 공수로 26日 隣近部隊에서 그것도 두차례나 지원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證人께서 證言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歷史는 반드시 이 사실을 조명할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마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바가 없습니다.

○金泳鎭委員 그러면 가발과 특수 便衣服은 아니고 마대는 모르신다는 말씀 좋습니다.

다음 두번째 묻겠습니다. 5月 光州現場을 끔찍한 流血事態로 무참히 짓밟은 가장 최대

의 관심사인 指揮體系 二元化와 發砲責任에 대해서 訊問하겠습니다.

李煥性 參謀總長은 5月21日 오후 3時30分 戰敎司에서 指揮體系를 一元化해서 군사가를 진작 시켜라 하고 緊急指示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證人 鄭鎬溶 모릅니다.

○金泳鎮委員 이는 그때까지 指揮體系가 二元化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좋은 증거입니다.

이 21日 오후 3時30분에 戒嚴司令官으로부터 緊急指示가 내려 오게 된것은 바로 1時30분에 證人의 隸下部隊인 11空輸가 道廳에서 상부의 명령없이 光州市民을 향해서 無差別 集團發砲를 해서 많은 良民을 虐殺한데서부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日 바로 이 道廳의 集團發砲가 있기 전인 20日 밤 11時30分에는 進中隊2軍司令官으로부터 隸下傘下에 있는 全部隊에게 發砲命令禁止 銃器를 잘 간수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11空輸部隊에서는 바로 1時30분에 이런 發砲命令中止指示를 무시하고 道廳 앞에서 光州市民을 集團發砲를 하게 됩니다.

이 發砲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요. 저는 陸軍本部에서 指揮體系를 一元化하라 하는 지시가 있는 것도 여기에서 처음들었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金泳鎮委員 그런 지시는 戰鬪詳報에 의해서 지금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저도 戰鬪詳報을 보았는데요...

○金泳鎮委員 戰鬪詳報을 보여드릴까요 보시겠습니까? 立法補佐官...

○證人 鄭鎬溶 그리고 여기에서 二元化二元化하지만 그 二元化를 저하고 연결을 사키지 마십시오.

○金泳鎮委員 그것은 指揮體系一元化問題입니다. 그것 먼저 갖다보여주세요. 잘보시라고 指揮體系를 一元化하라고 지시한 근거입니다. 여기 또 총정작전상보 軍關聯文書를 綜合해보면 3空輸 7空輸 24師團 31師團들에게는 具體적으로 지금 갖다보이고 있는 일사와 시간대에 따라서 實彈支給狀況이 서기 근거로 提示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軍記錄을 봐

도 11空輸에는 實彈을支給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 근거로 보아서 11空輸部隊는 출동 당시부터 이미 無差別 光州市民을 鎮壓하기 위해서 實彈을 휴대하고 온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3空輸와 7空輸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 關係者들의 證言을 綜合해봐도 道廳앞에서 無差別 發砲가 시작될 때 바로 자기들은 實彈이 없기 때문에 11空輸에서 갖다가 거기의 현장에 있는 部下들에게 10발씩 배부했다고 하는 근거가 나오고 있는데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1空輸의 이 잔인한 集團發砲가 바로 光州에서 良民을 처음 학살한 發砲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데 空輸特戰司令官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部隊가 출동을 하면은 11空輸 뿐만 아니라 他 旅團도 전부 實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實彈은 필요한 때 指揮官의 統制에 의해서 분배될 뿐입니다. 한부로 兵士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陸軍本部 31師團 戰鬪詳報에 의하면 96聯隊는 無血沮止分散을 했습니다. 7空輸 33大隊 및 35大隊 역시 無血沮止分散任務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3空輸旅團만은 유독 武力沮止分散을 하고 있는 근거가 여기에 提示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證人이 最高司令官으로 있었던 이 3空輸 11空輸 7空輸는 各各 현장에서 指揮體系를 문란시키고 다른 指揮體系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具體적인 근거가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證人이 光州에 있으면서 이 空輸部隊에 대한 鎮壓을 指揮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부인하시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金委員! 一方的으로 근거없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을... 제가 指揮를 했으면 指揮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指揮받은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제가 指揮를 했으면 指揮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泳鎮委員 證人은 진정하시고 사실만 證言하시면 돼요 證人이 화낼 필요없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니까 一般的으로 추리를 해 가지고 물고가니까 그렇지 사실만 여기에 서 「팩트」만 확인합니다.

○金泳鎮委員 당시 31師團長 鄭 雄將軍은 無血鎮壓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鄭 雄將軍의 無血鎮壓問題때문에 결국은 證人을 비롯한 당시의 強硬鎮壓을 주장했던 強硬派들에 의해서 鄭 雄將軍은 그 指揮體系에서 指揮權을 박탈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證人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저기에 있던 어느 누구도 流血鎮壓을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無血鎮壓을 주장했지요. 아무도 流血鎮壓을 命한 사람은 없어요.

○金泳鎮委員 다음은 戒嚴軍의 殘虐行爲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바로 證人의 部下들인 이 11空輸에 의해서 光州市民이 無差別 良民이 虐殺 당했습니다.

또 本委員은 지난번 松荷洞에 良民虐殺事件도 11空輸에서 일어났는데 그 11空輸團에 의해서 일어났던 良民虐殺事件 지난 11月18日 本委員이 李煥性戒嚴司令官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 國民學生도 바로 11空輸가 射擊을 했고 그리고 하수구에 들어가는 女人도 射殺을 했다고 本委員은 말했는데 當時에 民正黨幹事인 李敏燮幹事께서 根據를 따라 流言蜚語性에 가까운 얘기를 가지고 聽聞會에 와서 얘기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本委員은 바로 그때 松荷洞에서 잔인하게 良民을 학살했던 그 11空輸와 7空輸가 또 다시 그 장소로 옮겨가기 직전에 벌였던 잔인한 良民虐殺事件에 대해서 最高司令官인 鄭鎬溶證人에게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테니까 자 보세요.

光州 주남 良民虐殺事件입니다. 이 虐殺事件은 지난 19日 李煥性戒嚴司令官에게 확인했던 虐殺事件 바로 두시간 전의 事件입니다. 光州에서 和順方面으로 約 7km 地點에 있는 주남마을이 있습니다. 아 마을에 당시 證人의 部下인 11空輸와 7空輸가 朝鮮大學을 통해서... 證人 이것 보세요. 이것 신중한 문제입니다.

11空輸와 7空輸가 朝鮮大學 산을 넘어서 바로 여기 11旅團과 7旅團이 駐屯하고 있습니다.

證人은 이 歷史的인 事實을 안 보십니까? 보십시오.

○證人 鄭鎬溶 글썽요. 간단히 말씀을 해주

세요.

○金泳鎮委員 보십시오.

○證人 鄭鎬溶 봐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작은 글씨를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金泳鎮委員 안 보이십니까? 國民은 보고 제칩니다. 진실을 國民은 보고 제세요.

○證人 鄭鎬溶 그럼 더 크게 만들어 오시는가요.

○金泳鎮委員 그럼 안경을 써보시지요. 지금 안경을 벗고 제신데...

○證人 鄭鎬溶 안경은 이것은 讀書用이 되어서 끼면 더 안 보입니다.

○金泳鎮委員 그래서 光州에서 和順방면으로 「마니버스」에 18名の 市民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18名の 市民이 이 事件地點인 주남마을 입구에 왔을 때 바로 證人의 部下들이 여기 埋伏하고 있다가 集中射擊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15名이 即死을 하고 거기에 3名이 현장에서 불들립니다. 불들어가시고 이 주남마을 입구에서 바로 11旅團과 7旅團 駐屯地인 이 야산으로 끌려 갑니다. 여기서 바로 證人의 部下인 11空輸의 指揮官한 사람이 이 두사람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 사람을 處置하도록 命令을 내립니다. 그래 가지고 證人의 部下가 바로 이 나무밑에 데리고 가서 大劍으로 가슴을 찌릅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4發의 M-16을 그 머리에 射擊을 해서 현장에서 射殺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行爲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제네바」協定 捕虜에 관한 規定에도 보면 戰爭중에 설령 敵軍에 있는 병사라 할지라도 捕虜 되어서 非武裝일 때는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不利益을 해서도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證人 鄭鎬溶 저는 그러한 것을 전연 보고 들은 바가 없고...

○金泳鎮委員 들어보세요. 같은 소위 國民의 軍隊인 우리 國軍이 어떻게 해서 非武裝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學生 한 사람과 농군 한 사람을 大劍으로 찌르고... 證人 웃지 마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같이 있던 춘태女高 學生 하나는 바로 여기서 기적적으로 양심있는 空輸部隊 小尉 도움에 의해서 후송돼서 살아남

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11空輸團에 복무하는 中士 崔中士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이름을 밝히겠어요.

그리고 行爲에 직접 가담했던 河某上兵이 두 사람이 證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良民虐殺行爲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11空輸와 7空輸가 했던 이 殘忍行爲를 끝내고 光州驛 방면을 거쳐서 여기에 約 10km 전방에 있는 松荷洞에 가서 바로 大劍으로 찔렀던 그들이 松荷洞에 가서 지난번 戒嚴司令官인 李煥性司令官에게 本委員이 확인했던 그런 良民虐殺事件을 또 다시 일으킵니다. 바로 그런 짓을 하다가 바로 松荷洞에서 步兵 소위 司令部 屬해있던 그 部隊와 11空輸와 상호 誤認에 의한 사격이 벌어져가지고 천벌을 바로 거기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證人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否認을 하시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말씀 다 했습니까?

○金泳鎮委員 이것이 證人の 部下가 現場에서 저질렀던 만행이고 그리고 우리 光州市民이 당했던 아픔인데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大韓民國軍隊라는 것은 없습니다.

良民을 그렇게 묶어놓고 그 婦女子를 또 허약한 사람을 죽인다든가 찔러 죽인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든지 調査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金泳鎮委員 委員長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李煥性戒嚴司令官을 통해서 송하洞에 있는 良民虐殺事件에 대해서 本委員은 진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또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방금 圖表를 통해서 소위 이 11空輸에 의해서 잔인하게 벌어졌던 소위 전혀 捕虜狀態인 비무장한 이 농민 한 사람 大學生 한 사람에 대해서 大劍으로 찌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確認射殺까지 시킨 이 끔직한 만행이 바로 現場에서 벌어졌는데 당시의 最高司令官

인 證人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고 또 民正黨에서도 또 證人도 이 사실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 내용에 대한 真相調査特別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그것은 다음 19日 20日 21日 소위 光州聽聞會가 열리기 전에 이 문제를 現場調査를 해서... 國民은 이 사실을 보고 어떤 國民은 電話를 저에게 걸어 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사리손 자기 고무신을 주우려고 했던 그 아이를 쏘았던 戒嚴軍이 과연 우리나라 軍隊인가!...

本委員이 듣기로는 光州市內에 있는 어떤 선생님은 光州事態가 진압되고 난 뒤로 學校에 가서 어린이로부터...

○委員長 文東煥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幹事會議에서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으로써 집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金泳鎮委員 “선생님 선생님! 國軍아저씨 우리 편입니까?”하고 묻는 말에 이 선생님은 대단히 가슴아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真相調査 구성하시지요?

○委員長 文東煥 알겠습니다. 내가 혼자 결정 못하고 우리 幹事會議에서 취급하겠습니다.

○金泳鎮委員 결정해서 調査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10分 休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이니까 20분에 다시 續開하게 하겠습니다.

(15時7分 會議中止)

(15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統一民主黨의 金光一委員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豫定時間은 35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光一委員 統一民主黨의 金光一委員입니다.

「모든 指揮官은 그에게 부여된 指揮權은 國民으로부터委任된 신성한 權限임을 명심하고 이를 경건하게 받아들여 항시 진지한 자세로 嚴正하게 行使하여야 한다」이 말은 證人이 著述한 用兵의 原理와 實際라는 冊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證人이 하신 말씀 맞지요?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이 證人의 著書와 또 證人의 경력과 國務委員으로서 國會에서의 速記錄과 光州에 관련된 여러가지 資料를 檢討한 결과 저는 證人을 正常인 戰時에는 武人다운 탁월한 野戰指揮官감이고 正常인 平時였으면 위대한 與黨 政治家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證人 역시 불행한 時代에서 불행한 역할을 담당했던 軍人이었고 또 오늘 현재 同僚議員끼리 이와 같이 證人 訊問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同時代의 불행을 같이 하고 있는 政治人이라고 생각합니다. 證人께서는 이 眞相이 조속히 밝혀지지 않고 또 光州事件의 全般的인 總指揮者로 의심받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언짢으시지요? 또 그 眞相이 하루빨리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런데 이 光州事件의 眞相調査가 이와 같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國民들측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野黨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政府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政府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一委員 예. 솔직한 말씀입니다. 1985년까지는 어느 國民도 어느 政治家도 公開的으로 光州事件을 문제도 삼지 못할만큼 政府에서는 그 문제를 삼는 것을 忌避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싫어한 것이 사실이었지요?

○證人 鄭鎬溶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金光一委員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아닙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光州事態에 대해서는 이것은 5共和國시절에 완전히 그 眞相을 明明白白하게 밝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事後對策도 강구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政府가 무슨 사실을 은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一委員 政府가 사실을 은닉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鄭昇和將軍은 그 金載圭의 殺害行爲現場부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심을 받고 保安司令官에게 逮捕되어 가서 調査를 받았습니다.

證人도 光州事件의 現場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때 만약 保安司令官이 역시 證人을 逮捕해다가 鄭昇和將軍을 調査하듯이라도 調査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軍搜查機關이 그러한 調査權을 發動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시지요?

○證人 鄭鎬溶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金光一委員 調査를 받은 사실은 없었지요?

○證人 鄭鎬溶 없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다음에 1985년 5월 18일 12代 國會가 열려서 光州事件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盧泰愚民正黨代表는 125回 臨時國會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光州事態를 調査하는 野黨의 주장에 대해서 國民 모두의 아픈 傷處를 할키고 혈튼어내는 일은 犧牲者를 위해서나 國民和合을 위해서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일 뿐더러 또 다른 悲劇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을 자극하는 분별없는 處事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證人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鎬溶 잘 기억은 못합니다.

○金光一委員 速記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證人이 의심을 받는 억울함을 당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러한 態度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이 事件을 보는 견해와 證人에게 訊問하고자 하는 要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 光州의 軍事 鎮壓作戰自體의 問題點으로서 첫째로는 鎮壓部隊 軍 自體의 不法投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軍 部隊가 投入할 與件이 아닌데도 투입되었고 그것은 5.17 非常戒嚴擴大와 國保委 出帆을 위한 사실상의 「쿠데타」에 따르는 事前豫防이지 현실적인 騷擾鎮壓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軍部隊을 投入하되 騷擾鎮壓에 부적합한 部隊인 空輸部隊을 投入한 데 根本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직 위력과 軍事的인 방법으로 強壓하기 위한 것이지 宣撫와 對話를 통해서 國民을 保護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部隊을 追加적으로 增強한 것은 光州市民이 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鎮壓部隊 자체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殺傷 이것은 民의 抵抗을 격려화시키고 따라서 追加部隊을 필요로 했고 또 필요없는 侵攻作戰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鎮壓方法에 있어서의 不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目的으로 투입된 部隊은 당연히 위력 시위를 할 수 밖에 없고 反抗하는 者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鎮壓을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方法에 있어서는 軍人 특유의 찌르고 쏘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것이 알려지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엄격한 言論統制가 필요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流言蜚語가 생겼고 流言蜚語는 地域感情을 악화시켜서 事態를 악화시켰다 또 드디어는 자기를 만들어주고 보호해야 할 國民을 敵으로 간주하여서 侵攻作戰을 벌이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두가지에 있어서 저는 유감스럽게도 證人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고 그 책임을 밝히는 것은 동시에 光州事態의 真相을 糾明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證人은 이와 같은 光州事件이 發生하는데 있어서 원인 제공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鎮壓部隊가 反亂部隊의 역할을 했던 사실과 또 政治部隊의인 성격을 가진 그 部隊의 指揮官이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바로 5.17 戒嚴擴大를 보는 눈은 이것은 사실상의 「큐데타」였다고 보고 證人 자신은 愛國의인 견지에서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國保委를 企劃하고 제안하고 또 國保委가 구성되었을 때 執行하는 역할에 證人이 참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족

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兵力投入의 不法에 관해서도 證人이 관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鎮壓作戰을 指揮하는 不法性에 관해서도 역시 證人이 責任者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證人의 責任때문에 그 결과는 첫째로는 軍과 民을 이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民으로서의 良民이 殺傷당하고 軍을 不信하고 軍에 대한 敵對感을 갖기에 이르렀고 또 軍으로서의 國民의 軍隊라는 信賴感을 상실하고 軍 自體가 民에 대해서 敵對感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軍의 生命인 軍의 軍紀를 즉 指揮體系를 문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軍 自體의 士氣를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戰力を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軍 自體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光州事件을 통해서 우리는 國家秩序가 붕괴하고 있다는 위험을 느낍니다.

첫째로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價値觀의 顛倒입니다.

그 다음에 民主主義의 말살이다 國家安保의 弱化다 하는 그러한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가지고 지금부터 證人에 대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時間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 光州事件이 發生할 때 學生들은 戒嚴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고 말씀하셨지요. 證人은... 조금 전에...

○證人 鄭鎭溶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마는 저는 戒嚴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면 戒嚴擴大措置가 없었더라면 戒嚴軍이 그 날 추가로 투입되었을 이유는 없었겠지요? 學校占領自體가...

○證人 鄭鎭溶 저는 그 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戒嚴擴大는 제가 法律에 대한 깊은 常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戒嚴은 그 전에도 戒嚴을 하고 있었는데 그 戒嚴措置가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사근한 상태였었다...

○金光一委員 물戒嚴이라 했지요? 그 때...

○證人 鄭鎭溶 예. 그 때 그래서 물戒嚴

이다 그래서 사실 戒嚴이라는 것은 軍이 하는 것 아닙니까...

○金光一委員 그 說明을 길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바로 戒嚴擴大가 있었기 때문에 그 措置로서 學校에 진주한 것이 아니냐... 戒嚴擴大自體를 論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證人 鄭鎬溶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戒嚴擴大를 하지 않고서도 그때는 非常戒嚴下니까 얼마든지 學校에 진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있었고 또 部隊도 光州가 아니라 만 데도 다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法的으로 봤을 때요. 워 全國 戒嚴을 擴大를 하느냐 또 그 전부터 10月27일부터 하고 있는 地域戒嚴을 하나 결국 그 효과는 軍隊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왜 그 戒嚴擴大를 했느냐...

○金光一委員 그것 묻는 것 아닙니다. 그것 묻는 것 아니고 戒嚴擴大에 따르는 全般的인 軍 學校 占領計劃에 따라서 그 때 7旅團의 두 大隊가 光州에 갔던 것은 맞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또 그 당시에 學生들의 民主化 熱氣가 굉장했고 學生들의 생각은 軍이 權力을 장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軍에 대한 증오심같은 것이 차있었던 것으로 證人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 당시 軍을 그렇게 미워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金光一委員 좋습니다.

空輸部隊에서는 空輸部隊가 왔는데도 學生들이 示威를 그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분노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記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鄭鎬溶 모르겠습니다.

○金光一委員 모르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兵士들간에 그러한 心理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다음 空輸部隊의 主任務가 戰時를 가상해서 敵後方에 침투해서 特攻作戰의 非正規戰의 任務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맞지요?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그 訓練에 있어서도 敵속에 떨어져서 敵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강

인한 體力の 단련을 물론으로 하고 敵後方에서 「게릴라」作戰을 위해서는 殺人 殺傷 傷害 破壞등을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도록 그 행동을 條件反射化하고 自動化 本能化하도록 철저한 訓練을 하는 것도 맞지요?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또 直屬上官에 대한 충성이 곧 國家와 民族에 대한 충성이다 이것은 特戰敎本을 보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上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의 正當性 與否를 가리기 전에 行先地가 어디인지를 알기 전에 作戰對象이 누구인가를 살피기전에 機械的으로 上官命令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特戰部隊뿐만 아니라 軍이 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光一委員 特戰部隊는 더욱 그러한 점에서 명령을 잘 듣는 部隊 또는 戰力이 우수한 部隊로서 陸軍의 最 精銳部隊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金光一委員 명령 너무 잘 듣는 것가지고 나중에 또 하나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上官에 대한 충성이 곧 國家에 대한 충성이라는 特戰部隊가 자기 直屬上官을 逮捕하거나 쏘고 反亂에 가담한 例가 너무 많은 것이 이 特戰部隊가 政治的으로 오염되었다는 욕을 듣는 歷史的인 評價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1960年5月16日 이때는 5.16革命이 났을 때입니다.

特戰部隊가 創設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朴正熙將軍의 革命部隊에 앞장을 서서 陸本을 점령하는등 그 일을 한 것도 特戰部隊였다는 歷史的 事實을 알고 계시지요?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1979年12月12일에 3旅團이 出動해서 陸軍本部和 國防部를 점령함으로써 12.12에서 全斗煥司令官을 頂點으로 한 그 일행들이 舉事를 성공시키는데 決定的인 역할을 한 것도 證人이 알고 계시니까?

○證人 鄭鎬溶 예, 旅團만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旅團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래서 政權擔當者가 그 政權維

持目的을 위해서 사용해 온 것이 평시에 騷擾鎮壓部隊로 써왔다는 것도 政治的인 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騷擾鎮壓이라는 것은 반드시 政治的 目的으로 사용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國法秩序를 유지하고 사회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金光一委員 좋습니다.

戰時에 敵後方에 날아가야 될 部隊가平時에는 일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騷擾鎮壓을 主任務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間諜作戰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軍人이라는 것은 항상 바뀝니다.

戰爭이 일어나면 물론 戰爭해야지요 그러나 戰爭을 하지 않을 때 그러면 軍人은 먹고 노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아닙니다.

매일처럼 고된 訓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軍人의 主任務는 訓練이고 戰爭이 일어나면 訓練받은 戰鬥技術로서 勝利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軍人입니다.

○金光一委員 一般軍人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特戰司令部의 軍人을 말하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特戰部隊도 마찬가지입니다.

○金光一委員 이러한 特性을 가진 部隊를 示威鎮壓部隊로 投入한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과거에도 많이 사용했고 또 特戰部隊를 示威鎮壓部隊로 投入했다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陸軍本部에서 손쉽게 可用할 수 있는 部隊가 制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示威가 좀 있다고 해서 前方에 配置된 部隊를 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浦項에 있는 海兵隊라든지 또는 이런 部隊를 자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金光一委員 좋습니다.

이 特戰司를 投入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證據를 제가 대 보겠습니다.

特戰司 7旅團 光州鎮壓에 動員되었던 部隊지요 이 7旅團의 戰鬥詳報에 맨 마지막 建議事項 部分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特戰部隊의 직접 投入은 신중한 고려 후에

결정을 요망한다.

그 당시에 證人 隷下 旅團에서 建議를 그렇게 한 것을 證人은 알고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어떤 의미에서 그런 建議를 올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런 記錄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光州事件이 鎮壓된 후 戰鬥敎育司令部에서 發刊한 敎訓集이 있습니다.

이 光州事件을 分析 報告하는 敎訓集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外部 作戰部隊의 投入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結論中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후에 美國 軍當局이 發表하기를 空輸部隊의 過剩鎮壓때문에 事態가 악화된 것을 알고 民間騷擾의 鎮壓을 위해서 특수한 訓練을 한 20師團 20師團은 아마 空輸部隊... 약간 살살 다루도록 이렇게 訓練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20師團의 派遣에 동의한 것이라라는 發表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번째로 27日 새벽 마지막 侵攻作戰때 空輸部隊가 3個目標 據點에 特攻部隊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

그 特攻部隊가 服裝을 空挺部隊의 服裝을 입지 않고 20師團 一般部隊의 服裝으로 偽裝한 것도 사실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들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것은 곧 空挺部隊에 대한 嫌惡感 이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최초로 空挺部隊나 特戰部隊에 대해 光州市民들이 嫌惡感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18 光州事態가 난 후로 상당히 特戰部隊에 대해서 싫어한다 이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作戰을 할 때는 그때 戰鬥兵科敎育司令官께서 그러한 배려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一委員 좋습니다.

아까 證人께서는 過剩鎮壓 즉 示威의 激烈化가 먼저냐 強硬鎮壓이 먼저냐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是認하시고 나도 너무 했고 너도 너무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라는 사실 光州事件의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누가 먼저냐 하는 것은 아

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政府에서는 示威가 激烈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여 強硬鎮壓을 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證人は 지금도 같은 견해이십니까?

○證人 鄭鎬溶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警察이 鎮壓하는 方法하고 軍人이 鎮壓하는 方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軍人이라는 것은 警察이 도저히 이상 못 견디겠다 했을때 軍人이 나가는 것이 자 警察이 할 수 있을 때 軍人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軍人이라는 것은 事態만 나쁘지 않았으면 그때의 경우도 그냥 學校에서 우리가 뒤를 바쳐주고 있다…… 그래서 國民들한테 은근히 軍이 뒤를 바쳐주고 있다 하는 것만 보이고 사실 警察이 막아주었어야 가장 事態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光一委員 좋습니다.

다음 물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1985年 大韓民國 國軍을 代表하는 尹誠敏國防長官은 國會 國防委員會에서 6月 7月 이렇게 말 했습니다.

“光州事態가 武裝亂動者들에 의해서 無政府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軍은 끝까지 無益한 자극과 市民의 被害를 염려하여 최소한의 自衛權 發動마저도 自制하였으며 비록 軍人이 亂動者들에게 잡혀 무참하게 虐殺되는 상황에서 事態惡化 防止에 主力하였읍니다”라고 말하였고 戒嚴司令部가 發表한 政府의 公式發表도 마찬가지였읍니다.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음 質問을 합니다.

4·19 당시에요 1960年度 얘기입니다. 3·15 馬山義舉가 김주열이라는 젊은이 한 사람의 죽음때문에 導火線이 되어서 惡化된 것을 아시지요?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총을 얼마나 많이 쏘았느냐 누가 쏘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총알에 맞아 죽어서 한꺼번에 죽는 것 보다 몽둥이에 혹은 무자비하게 맞아죽거나 피가낭자해가지고 또는 칼에 찔려죽거나 할때 一般사람들은 敵愾心이 더 많이 떠오른다는 것은 證人도 인정

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金光一委員 證人は 戒嚴軍의 강경초기진압이 原因이 되어 學生 市民을 격렬화시켜 武裝抗爭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죠? 그 點에 대한 軍隊側 證據를 제가 提示하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光一委員 말씀해 보시죠.

○證人 鄭鎬溶 저는 지금은 이제 제 시각을 고쳐야 되고 政府의 方針에 協調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 생각에는 그러나 물론 戒嚴軍이 잘못된 점도 있고 너무 과격하게 한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光州에서 그 격렬하게 示威하던 사람이 豫備軍이 가지고 있는 그런 武器나 탄약고를 파괴해가지고 거기에서 武器를 탈취해서 武裝해서 이것을 戒嚴軍에다가 마구 쏘면서 덤벼들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들도 잘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참말 따지고 보면 쌍방간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民主化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民主化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武器庫있는 것을 다 무드려 부서가지고 ...

○金光一委員 그것이 하나의 原因이다 그 말씀이요? 예.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누구나가 마음대로 그렇게 총을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총을 함부로 올려매고 다니고 그러면 참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金光一委員 되었읍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光州部隊의 實戰指揮官들에 대한 調査를 할때 밝혀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市民들이 분노해가지고 샅이나 곡괭이같은 것 이런 것을 들고 나왔다는 記錄이 있고 그것이 점점 軍人들의 무차별 사격에서부터 武器庫까지 發展해 나간 記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안파집니다.

그렇게 이 軍人側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해주면 이 문제의 解決이 상

당히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구를 處罰하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證據로서 제가 이렇게 主張을 합니다.

첫째로 이 충청 騷擾鎮壓을 충청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충청作戰指針 자체가 軍投入時 강력응징 딱 한 마디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陸軍의 目標가 옛날에는 對民協調 對民紐帶強化 이런 말이 있었는데 1980年度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이 없어져 버리고 그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네요. 國家目標를 힘으로 뒷받침 1980年度에 이러한 陸軍目標가 設定된 것도 사실이죠?

○證人 鄭鎬溶 저한테는 기억이 없는 일입니다.

○金光一委員 없습니까? 그 다음에...

○證人 鄭鎬溶 지금도 80年度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 國民紐帶強化라는 것은 그것은 傳統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金光一委員 明示的인 目標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요. 7旅團의 戰鬪詳報에서 그러한 建議가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렸고 20師團 戰鬪詳報에 첨부되어서 國會에 提出된 資料에 보면 光州鎮壓을 한 직후에 戒嚴協議會를 열었습니다. 그 戒嚴協議會에서는 中央情報部 實務者 光州市長 또 襄命仁 당시 地方檢察廳 檢事長 등은 戒嚴初에 戒嚴軍이 초기단계에 過剩鎮壓한 것을 市民들한테 是認하고 사과하는 것이 光州事件解決의 급선무라고 建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採擇하지 아니한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것은 軍의 잘못을 是認하여 學生들의 犯法을 正當視하는 것이고 사과는 國家元首에게까지 비화하며 사과는 學生들의 正當性 과시로 일종의 義學化가 된다 이런 이유로 이것을 採擇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證人이 들어 알고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어디서 나온... 光州地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金光一委員 戒嚴事務所에서 戒嚴協議會를 한 것이 記錄으로 남아있는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시면 됩니다.

○證人 鄭鎬溶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金光一委員 예. 그 다음에 戰鬪教育司令部의 光州騷擾事態分析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副題目 敎訓集입니다. 여기에 國會에 나온 資料입니다. 이렇게 問題點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作戰分野 問題點을 騷擾鎮壓 간 地域住民의 環視裡에 暴動群衆과 격렬한 충돌을 발생하였다. 環視裡에...

두번째 해산보다 逮捕 主眼으로 협공하였다.

그 다음에 逃避 群衆을 追跡逮捕하는 과정에서 기물을 파괴하였다 追跡逮捕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一家族이 위협을 당함으로써 다른 家族들이 그 위협에 대한 野蠻의 憎惡感情이 폭발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 敎訓集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軍人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양심적인 軍人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말을 읽어 드립니다.

鎮壓過程에서 일부 과격충돌로 流血事態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자 지금까지 學生示威에 대해서 客觀的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일부 市民들이 격분하여 放火 파괴 약탈 人命殺傷 등 暴徒化하는 것을 초래하였다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戰鬪教育司令部 自體의 敎訓集에 결론이 내린 사실을 證人이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마는 그 말은 다 수궁이 갈 수 있는 말이고 이 敎訓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自體內的 반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에는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軍隊에서는 어떤 任務를 수행을 하는 그 任務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比較評價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한 점도 있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勳章도 타고 합니다는마는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점을 그것은 예리하게 파헤쳐서 그 잘못된 중에 그런 등등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니까 政府에서 이런 전해라도 받아들였다더라면 해결은 훨씬 쉬웠을 것이

아니나 즉 해결을 하자면 相對方 마음을 풀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마음을 풀려면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사실관계를 說明해 주어야 되거든요.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그것이 안되니까 해결이 안되어 온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자에는 역시 다음과 같은 말도 있습니다.

敎訓으로써 射擊軍氣가 엉망이어서 射擊을 함부로 하고 實彈을 남용하였다 그러면서 1人當 實彈使用量이 59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動員된 全部隊員은 이 資料에 의하면 7,800餘名으로 約 8,000餘名입니다. 8,000名이 將校 士兵 합해서 1人當 59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훈련된 部隊가 照準射擊을 했다 하면 몇 명이 죽었겠느냐 이런 것 등을 생각해볼 때 銃彈을 마구 갈기다가 良民도 살해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가셔됩니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책자에 보면 아까 航空機에서 無差別亂射를 했다는 證據가 어디있느냐 하셨는데 역시 이 책자에는 航空機에다가 攻擊目標를 명확하게 하지않고 射擊을 支援했다 射擊支援을 요청했다 하는 것도 반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책자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流言蜚語 이것이 좀 言論統制가 있었던 것은 光州事態 惡化의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流言蜚語中에 가장 큰 것이 慶尙道軍人들이 全羅道사람을 모두 씨를 말리러 왔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 證人도 알고 계시지요?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그것때문에 사실상 이 光州事態의 被害者는 地域적으로 보면 光州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慶尙道사람들이 車가 불태워지고 여러가지 폭행을 당한 일도 있고 그 이후에 이 地域感情은 악화되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言論統制에 대해서는 具體적으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한 例만 들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죽은 것이 분명한데도 한 名도 안 죽었다 이런 식으로 發表했는데 그 對策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확실하면 名數를 즉각 發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라리 確認中이라고 發表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證據로는요. 당시 朝鮮日報記者이던 또 현재로서는 統一民主黨의 國會議員인 徐淸源記者가 그 와중에서 보낸 記事送稿중에도 이와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밖에 現場의 目擊者들의 證言등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陸軍史라는 것이 있지요? 陸軍史...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1년에 한번 발행하는 陸軍史 여기에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初戰鎮壓意志가 부족하여 戒嚴軍이 出頭하여도 暴徒들에게 威壓感을 주지 못했다” 딱 한마디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실을 證人은 혹시 아십니까?

○證人 鄭鎬溶 모릅니다.

○金光一委員 그 다음 이제 證人이 지휘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證人은 아까 20日까지는 光州事態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그것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몇 말씀 答辯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光一委員 그 문제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지적만 제가 해 놓는 것이니까 證人의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證人 鄭鎬溶 알겠습니다.

○金光一委員 20日까지는 證人은 光州事態에 대한 내용을 아까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잘 몰랐습니다.

○金光一委員 證人은 17日 7旅團을 動員해 가지고 18日 새벽에 7旅團이 現場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18日 11旅團을 보내가지고 그 이튿 날 도착했고 그 다음 19日 3旅團을

動員해서 그 이틀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陸本에서 직접 보냈다고더라도 證人 麾下의 두 旅團을 추가로 보낼 때에는 證人 하고 상의했을 것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그러면 왜 光州에 왜 7旅團만 해도 될텐데 두個旅團을 더 보내야 하는데 대해서 證人은 그 光州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旅團을 내려갈 때는 그것은 으레껏 그런措置에 따라서 하는 줄 알았었고 그 다음에 11旅團을 갈 때 저한테 作戰參謀副長 그때 金在明將軍입니다. 저한테 電話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18日 점심 먹고 바로 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旅團을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왜 또 내려보내니까 하니까 光州事態가 惡化될 조짐이다 그래서 좀 내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3旅團은 중요한 陸軍 豫備인데 제가 보기에 서울은 별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서울에 있는 11旅團을 내려보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金光一委員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것은 陸軍本部에서 그 軍이나 戰鬪教育司令部에서 바로 상황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은 판단했고 저는 그 당시 光州에 더 兵力이 필요한지 안한지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점을 더 따지고 싶지만 시간관계로 그 점은 안 따지고 그 다음 두번째로는 證人이 실질적으로 適法한 指揮系統에 있지않았다는 점은 本委員도 認定합니다.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그리고 25日 午後 4時에 證人 麾下의 3個旅團에 대한 作戰指揮權이 鄭雄師團長으로부터 戰敎司司令官에게 移管되었다는 것도 認定합니다.

그러나 證人이 現場에 있었고 사실상 그 部隊를 指揮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에 대해서 사실상 指揮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證人께서는 午前중에 答辯하시기를 空輸部隊司令官 즉 特戰司令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지요?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상당한 경력이 있고 그 部隊에 근무한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야 한다 했지요?

그렇다면 空輸部隊를 一般 豫備軍部隊에다가 보내 놓았다 하더라도 效率的인 作戰指揮를 하기 위해서는 教育司令部的 司令官이나 豫備部隊의 司令官이 잘 할 수 없었지 않았느냐 즉 空輸部隊指揮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證人이 가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의심도 있겠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만약에 제가 그 事項을 알으면 31師團長한테 내 생각에는 이렇게 運用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그 指揮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직접 隸下 指揮官에게 될 指示한다는 것은 그것은 違法이고 脫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그 상황 돌아가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충고나 또는 조언을 해드리지 못했고 다만 마지막 단계에 제가 22日 부터는 주로 光州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蘇俊烈將軍에게 여러가지 조언도 해드리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金光一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는 이제 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現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鄭昇和將軍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鄭昇和將軍이 朴大統領의 弑害現場 가까이에서 있었던 것만으로 의심을 받아서 大韓民國 國軍史에 최대의 反亂事件이라 할 수 있는 이 戒嚴司令官兼陸軍參謀總長이 部下에게 체포되어서 調査 받는 事件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懲役도 7年을 받았습니다.

이 때는 鄭昇和將軍은 招請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또 잠깐 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 자체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한두명 정도입니다. 그랬는데 證人은 말이지요 招請도 안했는데 갔습니다. 또 한동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날 가 있

었습니다. 아무 일도 한 것이 아니라 옷도 구하러 다니고 뭐 補給도 하고 잘하나 안하나 막 살피러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몇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하튼 證人 麾下部隊의 鎮壓作戰과 관련해서 百數十名 또는 數百名이 죽거나 傷害를 입었습니다. 이런 정도 됐다면 證人도 鄭昇和將軍이 받은 의심보다는 더 큰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證人 鄭鎬溶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金光一委員 예. 그런데 鄭昇和將軍은 잡혀가서 懲役을 살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끝나 버렸는데 證人은 그런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指彈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니까 제가 꼭 懲役을 그러면 가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金光一委員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로서는... 國民들은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證人께서 아! 내 미안하다 하면...

○委員長 文東煥 정리 좀 해 주세요.

○金光一委員 제가 10분과 朴泰權委員의 5분을 더 쓰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委員長 文東煥 黨內에 그렇게 合意가 잘 안되었읍니다.

○金光一委員 合意가 됐읍니다.

그 다음에 또 證人에 대한 상당히 유력한 冊子가 있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아까 證人께서도 천금성이란 사람이 쓴 小說같은 이야기를 믿고 國民들이...

○證人 鄭鎬溶 그것은 저에 관한 부분은 다 小說입니다.

○金光一委員 예. 그 점에 대해서요... 그 冊의 要旨는 이렇습니다. 空輸部隊를 增派한 것 그 다음에 再進攻할 때 중요한 대목에서 主要役割을 한 것 같다는 것이 그 冊의 그 冊에서의 記錄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천금성씨는 이 週刊誌와의 「인터뷰」에서 證人을 만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나중에 천금성씨하고 對質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證人 鄭鎬溶 저는 천금성씨가 그 점에 대해서 백배 사과한다고 그랬읍니다.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金光一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심을 받는 점을 지적합니다. 勳章 받은 것인데요. 사실은 아까 시집간 애기를 했읍니다마는 그 鎮壓作戰은 그러면 시집에서 한 鎮壓作戰이란 말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시아버지인 蘇俊烈이가 陣頭指揮를 했다는 것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런데 그 옆에 얼씬거린 친정 아버지가 勳章을 받았다는 것이 시아버지는 勳章을 안받고 이런 것이 상당히 國民들로서는... 勳章이라는 것은 직접 공이 있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國民들로서는... 의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요?

○證人 鄭鎬溶 그러나 그것은 軍의 指揮體制를 잘 아시면 역시...

○金光一委員 그런 指揮體制를 모르는 一般國民은 그렇다 이 말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다음에요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제 말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證人은 아까 軍人이 命令을 받으면 後退를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惡化된 것 같다 하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그래서 이 後退作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역시 그 後退作戰에 관해서 證人의 冊에 遲延作戰의 一種으로서 撤收作戰이라고 되어 있대요. 결국 이 事件의 불행은 말이지요 軍人이 後退作戰을 잘 못해서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의 後退作戰은 具體的인 戰鬪에서 後退하는 것 뿐만 아니라 戰略的으로도 後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1979年 12月12일에 全斗煥保安司令官등이 그 자리에서 鄭昇和將軍을 체포하는 進攻作戰만 할 것이 아니라 國民들의 뜻에 따라서 명예롭게 後退할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또 12.12에서 진진... 攻撃作戰을 했지만 그 후 國民의 뜻에 따라서

5·17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後退를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어떤 資料에는 保安司 李某中領이 軍人이 명예롭게 後退할 수만 있었다라면 5·17의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述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 날의 光州戰鬪에서도 5月21日 외곽으로 撤收作戰을 하면서 12時에 撤收한다고 市民들에게 放送을 해 놓고 17時에 다섯時間 일곱時間이상 지연함으로써 國民들이 믿고 있다가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證人 鄭鎬溶 저는 후에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現地指揮를 했으면은 저는 반드시 21日 새벽에 撤收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兵力을 사용하는 요령이고 그 상황 판단을 하는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늦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니까 後退作戰의 시간지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것은 누구 책임이나 하는 것은 그 당시 후퇴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하는 것을 따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金光一委員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마지막 말을 맺고자 합니다.

光州事件은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名譽回復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光州市民 被害者의 名譽回復입니다.

동시에 光州와 관련해서 一般國民들 전부가 잃고 있는 名譽를 回復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名譽回復을 하자고 하면서 具體的인 名譽回復의 방법은 아무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규정지어진 사람은 名譽를 回復하기 위해서 네가 잘했다는 말만가지고 안됩니다. 相對的으로 나쁘게 규정된 것의 相對方이 名譽를 가지고 있으면 그 名譽를 낮추어 버려야 됩니다.

名譽의 後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5·18光州의 피바린대나는 現場에서 얻은 훈장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名譽로운 것으로 알았지만은 지금이라도 그것이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不名譽스럽다고 생각한다면

具體的인 방법으로 그 훈장부터 우선 반납하면 光州사람들이 아! 저 사람 훈장반납했구나 따라서 우리 名譽도 回復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동시에 光州의 피바다를 건너감으로 인해서 얻은 지위 그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國保委의 여러가지 지위 그 이후에 진급한 지위 그 후에 大統領이 된 사람들은 大統領의 지위 이런 것들을 역시 後退作戰과 마찬가지로 撤收 返納해야만 結果的으로 이 光州의 被害者에 대한 名譽는 回復되고 문제의 根本的인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證人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證人을 저는 참으로 軍人으로서 존경하고 또 어떠한 분보다도 사나이다운 태도와 좋은 品性을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評價를 해서 가볍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證人和 가장 가까웠던 두분 大統領 前職 또는 現職 大統領이야 어떻게 하든간에 證人 자신이라도 현재의 歷史正面에 선 이 자리에서 勇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證人 鄭鎬溶 글썽 어떤 방법으로 勇退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金光一委員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根本意思를 묻습니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렇게 함으로써 光州事態解決의 하나의 具體的인 방법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證人 鄭鎬溶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大韓民國 國軍이 말이죠 어느 市民이나 어느 地方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진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大韓民國 國軍은 /여러분의 바로 형제고 아우들입니다. 다 우리 國民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指揮官이 쓰라고 한다고 해서 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國民이라는 것을 뻔하게 아는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2等兵이라 하고 1等兵이라 하더라도 요즘 軍人들은 다 高等學校卒業이상입니다.

그 사람들도 능히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金泳鎮委員께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못 믿는 것은 우리 大韓民國 國軍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軍人은 저는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光州사람이 미워서 총을 마구잡이로 쏘고 그냥 약한 아녀자를 쏘고 어린 애를 쏘고 할 나쁜 大韓民國 國軍은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國法秩序와 社會秩序를 회복시킨다 하는 뜻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양심론을 들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분도 명예롭고 大韓民國의 軍도 임무수행을 명예롭게 했다 하는 양심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물론 여기에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요 또 여기에 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누구 잘못했으니 어디로 보내고 물론 그것은 現地에서 실제 指揮官도 모르는 사이에 참말 良民을 학살했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刑法의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요.

○辛基夏委員 그 指揮官도 책임을 져야 되지요.

○證人 鄭鎬溶 물론 指揮官은 道義的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金光一委員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證人 말씀이지요 저는 軍全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空輸部隊의 將兵들은 적어도 軍移動을 하고 작전에 투입할 권한을 가진 旅團長級 이상이 아닌 그 이하의 將兵全部는 역시 그들의 명령만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國民과 똑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軍 空輸部隊를 여기에 투입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그런 모든 政治的인 책임 指揮責任을 지고 歷史的 指導的인 위치에서 勇退하실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글썽요. 勇退하는 것을 제가 싫어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委員長 文東煥 그만큼 숙제로 드리고 이 訊問은 여기서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新民主共和黨의 金文元委員 15分間 訊問해 주십시오.

○金文元委員 新民主共和黨의 金文元委員입니다.

證人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證人이 아무리 지금 부정하고 있지만은 光州抗爭 鎮壓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이 鎮壓되었든지간에 그 다음에 펼쳐진 軍部勢力의 政權獲得에 깊은 관계를 했다는 세상 사람들의 불신과 의혹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봅니다. 民族앞에 證言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진지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로 묻겠습니다.

證人은 오늘 午前 特戰司令官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밝힌 바 있으시지요?

○證人 鄭鎬溶 예.

○金文元委員 特戰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特戰司의 훈련내용이 무엇입니까?

軍事機密이 아니면 좀 밝힐 수 있겠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特戰部隊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美國교리에 따라서 美國의 소위 「스페셜 휘시즈」 이 교리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個 「팀」을 12名으로 해서 將校 두名 다음에 나머지 열名은 다 下士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敵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의 敵占領下에 있는 國民들을 역으로 편성해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제릴라」戰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心理戰을 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또 宣撫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또 火器 조작하는 방법도...

○金文元委員 鎮壓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證人 鄭鎬溶 鎮壓하는것은 主任務가 아닙

니다. 그래서 火器 操作法이라든가 또 「제릴라」戰을 하려면 爆破같은 것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鐵道 등등 兵站路 등등 그래서 이런데에 대해서 적어도 敎官資格이 있을만큼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敎官役割을 해가지고 1個 中隊가 편성이 되도록 되어있는 것이 그 基本概念입니다.

○金文元委員 종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北韓인데 北韓은 우리의 동조자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것은 동조자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동조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間接作戰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지금은 直接作戰 형태의 特戰을 해야 된다 해서 人員도 늘었고 이제는 그 敎育하는 방법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戰術概念은 그 時代와 與件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金文元委員 종습니다. 作戰指揮權 문제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隷下部隊를 他部隊로 예속시키면 司令官의 指揮監督權은 隷下部隊에 이양된다는 말씀을 아까 午前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光州鎮壓狀況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發言이 상당히 책임 회피적인 어떤 인상을 받는다 저는 그래서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空輸部隊같은 特殊任務 部隊는 司令官이 作戰範圍內에서 指揮監督權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常例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 그것은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空輸部隊라 하더라도 軍의 원래의 개념을 이탈할 수가 없고 저는 성격상 저한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저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金文元委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더우기...

○證人 鄭鎬溶 그러니까 아마 金委員께서 오히려 역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

게 의심이 갑니다.

○金文元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 여쭙어 보겠습니다. 더우기 당시 상황이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까.

國家運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더우기 당시 全國을 책임져야 할 몇 사람 안되는 軍人중에 한 사람이 證人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指揮權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아까 證言하실 때 마치 그 당시에 강 건너 불보듯이 했다는 식의 答辯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 이해를 하시든 안하시든 저는 指揮權 행사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指揮權을 저한테 주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안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밝히는 이 마당에서 제가 했다고 억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金文元委員 종습니다. 5月21日 空輸旅團을 31師團 作戰統制權에서 戰敎司 作戰統制로 전환시킨 것이 5月21일이지요?

○證人 鄭鎬溶 글썽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對答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책임지고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戰敎司 作戰統制로 전환시켰는데 그 당시에 戰敎司司令官을 特戰司令官 보다 上位職에 있는 것으로 제가 尹興植司令官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시기에 尹興植司令官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行政學校長을 그 당시 2星將軍입니다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作戰 總責任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戰敎司司令官은 特戰司令官보다 자연적으로 격하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論理는 맞는 말씀이지요?

○證人 鄭鎬溶 맞지 않습니다.

○金文元委員 자연적으로 下位가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特戰司令官은 원래 그 자리가 少將이 쪽 있었고요. 다음에 戰敎司令官은

쪽 中將으로 있었읍니다.

그래서 軍의 概念에 있어서 또 戰敎司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部下도 많은 部隊이고 特戰部隊에 비교할만한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尹興禎將軍은 上位에 계셨읍니다. 그리고 또 少將進級도 저보다 훨씬 더 빨랐고 中將級에 속하는 사람이었읍니다.

○金文元委員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하면은 尹興禎司令官이 바뀌게 된 이면에는 말하자면 이司令官이 있어 가지고는 여러가지로 運身하는데 좋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때문에 교체를 별안간 시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물어 봅니다.

答辯 필요없읍니다.

軍에 있어서 發砲는 반드시 法的 根據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지요. 그렇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金文元委員 그런데 아까 아침 午前證言에 중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軍인들이 法的 根據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머리속에 들어 있는 概念에 의해서 發砲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분명히 하셨죠?

○證人 鄭鎬溶 예.

○金文元委員 이것은 光州事態의 鎮壓과 연결한 문제로 생각해 볼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發砲의 法的 根據를 아십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말씀은 任務遂行間이라고 얘기했읍니다. 아무리 軍人이라하더라도 外出 休暇를 가면서 發砲를 한다든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外出 休暇間에 銃器를 휴대시키지도 않습니다.

○金文元委員 문제는 이 중요한 發砲問題가 말하자면 法的 根據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머리속에 들어있는 概念에 의해서 發砲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그 자체가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反論은 필요없읍니다.

證人이 그 다음에 光州事態에 깊숙히 간여했다는 巷說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람들 또한 이로 인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

의 捏造된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證人 鄭鎬溶 어디에 대해서 말입니까?

○金文元委員 光州事態에 대해서 깊숙히 證人이 간여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證人께서는 그것은...

○證人 鄭鎬溶 사실이 됐다 하는 그런 流言蜚語性 말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면 記錄에 대해서...

○金文元委員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捏造流布된 그런 流言蜚語를 한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證人 鄭鎬溶 예.

○金文元委員 그러면 이같은 謀略 捏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자리에서 이름을 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못 밝히신다면 신성한 證言臺에서 確證이 없이 證人이 말하자면 남을 謀略하는 그런 결과를 맺기 싶습니다. 대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꼭 證人을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고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言論이나 혹은 言論이라는 것보다도 무슨 月刊雜誌나 週刊雜誌나 이런 등등에서 얘기를 하고 또 무슨 小說式으로 이렇게 쓰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根據없이 인용을 하고 하는 사람들...

○金文元委員 그러면 雜誌나 小說...

○證人 鄭鎬溶 그것을 가지고 자꾸 또 말을 만들어 내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뭐 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저를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金文元委員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15分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마는 대체로 알겠읍니다. 무슨 말씀인지 80年5月17日 全軍指揮官會議에 참석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非常戒嚴擴大措置에 찬성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證人 鄭鎬溶 했다고 했읍니다.

○金文元委員 나중에 반드시 이 자리에서 非常戒嚴을 擴大해야 한다는 發言을 분명히 하

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軍이 좀 더 결연한 자세를 보여서 이러한 물戒嚴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만 두든가 아니면 한다면 좀 더 똑 바르게 하든가 하는 그런...

○金文元委員 결과적으로는 非常戒嚴擴大를 주장하신 것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 방법이 非常戒嚴擴大가 되는건지 그것은 몰랐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때...

○金文元委員 적어도 그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이 찬성이나 아니냐는 정도는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에 있는 사람들이 공을 세우면 뒷사람은 덩달아서 혼장을 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證人께서 주장한 대로 한다면 光州抗爭 진압에서 空輸旅團만 파견했을 뿐이고 指揮權도 監督權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뒷사람이 과연 이 혼장을 타야 됩니까? 혹시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깊이 통찰을 하시고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이 혼장에 대해서... 이것 나 못하겠다 指揮權도 없고 監督權도 없던 사람이 왜 이런 혼장을 타야되느냐고 거부한 적이 혹시 있으면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지요.

○證人 鄭鎬溶 아시겠습니까마는 자기 공로를 자기가 이렇게 쫓아대 가지고 내 이런 공로 있으니 혼장주시오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또 軍隊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자신을 제가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金文元委員 거부는 분명히 안하신 것이지요?

○證人 鄭鎬溶 그래서 혼장이 나온다 그래서 저도 내가 왜 혼장을 타느냐 사실 그랬읍니다. 저도 한 것도 없는데...

○金文元委員 거부를 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金文元委員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거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아무 말씀 안하시고...

○證人 鄭鎬溶 그것은 혼장이 나온다는 參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公式的인 아무 역

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12·12事態時에 大邱에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연락을 받고 保安司로 그 이튿날 가셨다고 그런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金文元委員 그런데 그 당시 12·12당시때 盧泰愚將軍의 9師團이 출동을 했고 그 다음에 大邱駐在 50師團長으로 계실 때 그 일부가 서울로 출동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밝혀 주시지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可否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證人 鄭鎬溶 그것도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金文元委員 또한가져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證人은 그 당시 光州鎮壓事態 때 空輸部隊 鎮壓棒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證人 鄭鎬溶 박달나무로...

○金文元委員 예. 박달나무지요? 앞에는 쇠불이가 붙어 있었지요? 鎮壓棒이지요? 그게?

○證人 鄭鎬溶 쇠불이는 없습니다.

○金文元委員 어디서 만들은 것입니까? 이제... 어디서 만들어서 지급했습니까? 그 당시에...

○證人 鄭鎬溶 그것은 정식으로 지급한것도 아니고 아마 各部隊가 혼련나갈때 주로 江原道같은데 나갈 때 자기들이 自費에서 아마 장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元委員 特殊訓練을 시킬 때 이것을 가지고 시킵니까? 特殊訓練을 시킬 때...

○證人 鄭鎬溶 무슨 特殊訓練 말입니까?

○金文元委員 空輸部隊에서 訓練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지요? 시킬 때 이것을 가지고 시킵니까?

鎮壓棒이나 大劍 등 사용하는 방법 이런걸 가르칩니까?

○證人 鄭鎬溶 주로 銃器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지... 뭐 鎮壓棒을 사용할 특별한 뭐 재주가 필요합니까?

○金文元委員 그렇습니까?

8月15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東部二村洞 장미「맨션」 16

層3號 김정렬씨 당시 집에서 모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언제 말입니까?

○金文元委員 8月15日...

○證人 鄭鎬溶 몇年度 말입니까?

○金文元委員 崔圭夏大統領 下野하던 그 年度입니다. 아시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80年度말이지요?

○金文元委員 여기서 崔圭夏씨에 대한 下野問題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없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런데 말은 거기서 崔圭夏씨가 말을 안 듣고 용낙을 안 할 때에는 陸本으로까지 가서 설득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鄭鎬溶 그런 것을 누가 發說 했든지요 그런 것을 추적을 하면 조금전에 金文元委員께서 저한테 물은 문제도 그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추적이 가능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요...

○金文元委員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하면 이것이 어떤 流言蜚語든 證人 말씀대로 근거가 없이 나온 얘기든지간에...

○證人 鄭鎬溶 그 流言蜚語가 어디서 造作이 되고 나온 것인지...

○金文元委員 그 당시에 崔大統領... 적어도 國民의 合法에 의해서 당선된 崔大統領을 하야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당시의 政治의인 여러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본 것 입니다.

그러나 證人께서 이것이 流言蜚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訊問을 그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無所屬 朴燦鍾委員 25分 동안 訊問 해주십시오.

○朴燦鍾委員 朴燦鍾委員입니다.

12·12로부터 5·17 과정을 거쳐 5共和國이 들어서고 끝내는 政治的으로 5共和國이 原因

無效가 되는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聽聞會過程을 통해서 이 엄청난 國家變亂行爲의 결과로 야기된 5共和國 이런 政治狀況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있게 그것을 분명한 모습으로 책임을 지려는 그런 몸부림을 아직도 저희들은 확고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 되지만 人間 鄭鎬溶將軍을 잘 아시는 분들은 昨年 6·29 이른바 盧泰愚宣言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당시 어려운 그 與圈의 여러사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감히 진언하고 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그나마 그 속에서 작은 美談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고귀한 좋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次善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次次善은 비록 작은 과오지만 이것을 큰 과오로 인정해서 스스로없이 이것을 인정해서 거래와 民族앞에 숙연히 고개 기울이는 것 이것이라고 옛 사람들은 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申鉉鎬 證人 또 그 앞에앞에 國防部長官 陸軍參謀總長 周永福 李煥性씨등의 證言에서 많이 실망 했습니다.

저는 鄭鎬溶 證人에 대해서 이런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79年12月13日 오후에 特戰司令官 부임 소식을 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맞습니다.

○朴燦鍾委員 14日 部隊本部에서 취임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朴燦鍾委員 司令官室에 들어가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朴燦鍾委員 거기에 엄청난 혈흔 핏자국을 목격 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못 했습니다.

○朴燦鍾委員 이미 치웠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때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었습니다.

○朴燦鍾委員 청소된 흔적도 엿 보이지 않았습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것

을 연상 시키는 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朴燦鍾委員 出入門에 총탄흔적도 물론 말끔히 창문을 다 갈았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런 것으로 기억 됩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이 부임해서 執務室에 들어가기전 바로 실혼여섯시간전에 그 자리에서 이 國家의 法統을 지키는 陸軍本部의 명령을 지키다가 바로 부하에 의해서 사격을 당해서 중상을 입은 鄭炳宙將軍의 피와 역시 證人의 陸軍士官學校 후배인 그리고 이 國家의 法統을 지키려고 하던 그래서 몸부림쳤던 김오랑 少領의 피가 바로 證人이 부임하던 실혼여섯시간전에 그 자리에서 피의 홍수를 이루었던 자리 입니다.

證人은 12·12事態로 바로 그 特戰司 司令官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12·12事態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證人은 아까 證言을 통해서 모호한 얘기를 하셨는데 搜查目的으로 鄭昇和 總長을 연행한 것인데 法을 어겼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朴燦鍾委員 李煥性證人이 바로 이 자리에서 證言을 하기를 鄭昇和將軍을 연행 체포한 것은 어떻게 절차상으로 대단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證人에게 이 12·12事態의 視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鄭炳宙將軍을 射擊을 가하고 鄭昇和將軍을不法하게 逮捕 連行해서 바로 그 下級者들로 하여금 물고문을 가하게 한 그 邪惡한 출발이... 그 邪惡한 출발이 그 이후 엄청나게 많은 無主孤魂 그 亡靈들을 만들어낸 信號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光州抗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지요. 「아웅산」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全斗煥大統領의 警護隊目的으로 濟州道에 갔던 우리 特戰司 將兵들이 沒死했습니다. 朴鍾哲군동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따라서 이 5共和國은 그 出帆이 억울하고 孤魂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12·12事態를 보는 눈은 어제의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눈...

어떻든 大邱에서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신 오늘의 눈으로 證人은 이 자리에서 證言해야 됩니다.

5共和國은 이미 政治적으로 無效宣言이 되었고 證人의 盟友인 盧泰愚大統領에 의해서 光州事態는 光州民主化運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暴徒인 光州市民은 民主市民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視角으로 이 12·12事態를 다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證人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이미 이 質問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炳宙將軍을 총격을 가하고 한것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러나 전체적인 그때 軍의 흐름에 있어서 12·12문제는 大統領께 追認을 받았다 하는 그것이 強點이었었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 죄송합니다.

오늘의 視角으로... 午前 證言을 지금 되풀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視角으로 이事態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證人 鄭鎬溶 글썽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 이것은 國家적으로나 政府次元에서나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여겼고 또 軍의 대체적인 시각 자체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를 않았읍니다.

오늘날의 시각은 이미 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盧大統領께서 大統領候補로 계실때 寬勳「클럽」討論會에서 그 當事者로서 12·12事態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로써 國民들이 납득을 하지않으면 나를 大統領으로 뽑지말라 하는 식의 討論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大統領에 立候補하셔서 當選을 했으면 이것은 이미 國民의인 시각은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결정된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寬勳「클럽」에서 盧候補께서는 이것은 任務遂行過程에 있어서 救國의 次元에서 부득이하게 시행한 것이라고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저도 거기에 따릅니다.

○朴燦鍾委員 盧泰愚候補의 말을 빌어서 證人의 입장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後日 歷史와 國民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2月13日부로 證人은 特戰司令官이 되고 盧泰愚少將은 首警司令官이 되고 그렇게 되었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렇게해서 全斗煥少將은 保安司令官이었기때문에 이른바 特戰司 保安司 首警司 3司의 司令官이 證人의 입장에서 보면 陸士同期고 하나會 「멤버」고 또 盟友들로 장악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鄭昇和證人은 謀反을 감시해야 할 部隊인 保安司가 組織의으로 謀反行爲에 가담해서 特戰司와 首警司의 下部組織이 여기에 장악되었을 때 陸軍의 首腦機能은 마비가 되고 指揮體系는 혼란이 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證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사람 證人을 포함한 이 세사람이 3司를 장악함으로써 적어도 陸軍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組織을 구축했다고 보는데 證人 同意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同意하지 않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 이후 首警司令官인 盧泰愚少將은 12·12이후 1·2·3월에 걸쳐서 수시로 記者懇談會등을 통해서 向後政局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 個人的 입장을 表明한 것 證人 알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證人하고 協議가 있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없었습니다.

○朴燦鍾委員 私인인 懇談會도 없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朴燦鍾委員 이 과정에서 全斗煥將軍과 盧泰愚將軍을 어떤 식으로 公式 또는 非公式 접촉을 가졌습니까? 12·12이후 5·17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저는 政治的 問題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종종 만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議論을 했다가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軍人으로서 끝까지

살려고 했고 제가 許容할 수 있는 범위에 까지 물론 軍人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願해도 나이가 되고 또 어느정도 任期가 되면 어차피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날에 까지만 이라도 최선을 다했어서 저는 軍人生活을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政治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흥미도 없었고 또 저는 저 스스로 뛰어들려고 노력도 안했고 招請도 받지를 않았읍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80年2月17日 「뉴욕타임즈」가 報道하기를 全斗煥將軍 「그를」이 韓國權力의 核으로 등장하고 實勢를 장악했다는 報道가 있었는데 혹시 報道事實을 아십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기억 못합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5月21日 5·17戒嚴擴大 직후에 있었던 改閣에대한 「뉴욕타임즈」에 評價가 이렇게 나와있읍니다. 이제 全斗煥將軍을 頂點으로 한 새로운 軍部가 向後 韓國의 權力을 장악하기 시작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報道를 했는데 報道事實을 아십니까?

○證人 鄭鎬溶 기억 못합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이러한 外信의 視角은 바로 證人의 그러한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證言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3司가 全斗煥將軍을 頂點으로 해서 盧泰愚 鄭鎬溶將軍이 장악함으로써 이러한 客觀的 事實 狀況을 報道하게 된 것입니다.

證人은 空輸部隊의 特戰司令官으로 赴任하신 이후에 어떤 指針으로 部隊運營의 「모토」로 삼으셨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特別한 運營指針이 없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있었읍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의 경우에 特殊한 指針口號 그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때 이 세상에서 제일 그런 용맹한 特戰部隊가 되자 하는 등등이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것이고...

○朴燦鍾委員 地上 最高의 용맹한 部隊員이 되자 例를 들면 그렇습니까? 아니면 恒在戰場 이런 概念입니까?

○證人 鄭鎬溶 제일 가는 部隊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의 「모토」였읍니다.

○朴燦鍾委員 地上最高的 部隊를 만들자...

○證人 鄭鎬溶 예.

○朴燦鍾委員 空輸部隊는 결국 非正規戰 또 非正規戰에 對抗하는 戰術 그리고 충정作戰 대체로 이 세가지가 부여된 任務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래서 落下訓練 射擊訓練 山岳訓練 跆拳道訓練 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된 訓練을 통해서 部隊員의 團結心을 提高를 하고 그래서 同僚의 피해 第三者의 攻擊 行爲나 피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條件反射的으로 여기에 對應할 수 있는 그러한 部隊의 規律를 創出해 가는 것이 그 部隊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바로 이것은 心理學的으로 이 部隊가 排他的 憎惡感을 養生하고 있다 라고 心理學者들은 말하고 있고 따라서 自動化 本能化 條件反射化의 訓練을 반복함으로써 이런 部隊가 大規模 示威隊와 접촉했을 때 어떤 反應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不問可知라고 많은 學者들이 얘기하는데 이러한 견해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學者들 얘기는 세가 그렇게 깊이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特戰 部隊나 空輸部隊가 그저 무자바하고 그저 용맹하고 그런 것만 절대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朴燦鍾委員 本能的으로 어떤 障礙物에 대해서...

○證人 鄭鎬溶 그러나 하나의 條件反射的인 行爲는 그것은 신속을 要하는 문제이기때문에 그것은 강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訓練을 나간다는가 할때는 반드시 별도로 支援「팀」을 보냅니다.

그 支援「팀」은 주로 軍醫官이나 政訓監등이 중심이 돼서 訓練地域에 가면 통상 거기가 奧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病院에도 갈 못하고 또 여러가지 生必需品이 부족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家庭常備藥도 없고 이런 것을 전부 準備해 가서 그 사람들에게 결국 일종의 그것도 訓練입니다. 일종의 宜撫用活動을 하도록 저희들이 일부러 計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國民을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늘상 그것은

教育을 하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알겠습니다. 그러한 司令官의 表面的 指示에도 불구하고 訓練內容이 그러하다는 評價가 있는 것입니다.

80年6月中旬 이른바 光州의 충정作戰이 鎮壓完了된 이후에 證人이 管轄하고 있는 特戰司本部 練兵場에서 일단의 戰鬪警察隊員을 招致해서 特戰司의 「데모」鎮壓 方法에 의해서 示範을 보인 行事를 가진 일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朴燦鍾委員 그 자리에서 特戰司令官으로서 證人은 空輸部隊가 光州事態를 鎮壓하지 않았더라면 國家의 위기가 올뻔 했는데 이 空輸部隊의 示威鎮壓場面을 貴官들에게 보여준다 하는 이런 趣旨의 訓示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戰警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어쩌면 이 聽聞會場에도 있을 지 모를 어느 젊은... 지금은 어느 言論機關의 젊은 記者입니다. 그 記者가 저에게 吐露한 바에 의하면 그 示範場面을 보고 저런 鎮壓으로 저런 方法으로 鎮壓을 했으니 사람이 무수히 다칠 수 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狼狽感을 맛 보았고 지금도 그 示範場面이 뇌리에서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최근까지도 저에게 여러번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空輸部隊는 이런 組織과 訓練內容을 통해서 결국은 政權의 親衛意識을 高揚을 하고 將兵들이 그러한 점에 있어서 優越感을 갖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정작 써 먹어야 할 對敵 「게릴라」戰에는 活用하지 못하고 결국 光州抗爭에 投入된 이런 汚名을 갖게 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證人 저의 이런 見解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예. 同意합니다.

○朴燦鍾委員 그래서 特戰司出身중에 現大統領을 포함해서 두 사람의 大統領 現 警護室長을 포함해서 내리 5名の 警護室長 證人을 포함해서 2名の 陸軍 參謀總長을 배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光州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指

揮 책임이 어떠한 하는것 發砲가 언제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문제와 병행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源泉으로 空輸部隊가 光州示威鎮壓을 위해서 投入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5月18일부터 27日 사이에 光州民主化抗爭에서 엄청난 희생자를 낸 바로 原因이요 動機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證人 同意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空輸部隊가 光州에만 投入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全州에도 나갔고 大田에도 나갔고 제일 主力은 역시 서울에 많이 投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空輸特戰部隊가 가는데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는데마다 다 그러한 문제가 發生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朴燦鍾委員 證人! 저의 質問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같은데 政府가 發表한 대로 하더라도 死亡者中에... 政府發表 死亡者입니다. 이것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데 좌우간 160名이상인 것으로 發表가 되었는데 그 政府發表 統計에 의하더라도 27名이 初期鎮壓過程에서 아까 말한 박달나무의 鎮壓棒 또는 銃劍에 의해서 打撲傷 頭部損傷 刺傷으로 죽은 사람이 27名이라고 李煥性證人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資料에 의하면 5月19日에서 5月21日 이 初期에 15歲以下の 어린이들 13名이 바로 그러한 鎮壓棒과 銃劍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것은 아니나다라는 상처를 입은 이런 資料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初期에 그 示威隊에 대한 示範的 威壓을 보이기 위한 過剩鎮壓이 결국은 이러한 殺傷者를 初期에 내게 되었고 이것이 光州 全域에 맞고 찢려죽었다 하는 大都市에 恐怖를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더욱 強硬示威로 抵抗權의 입장에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空輸部隊는 강경하게 對應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光州抗爭의 犧牲者가 커진 것입니다.

證人도 아까 午前에 動 反動 動 反動이 이것이 上昇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일부 認定하셨는데 그렇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물론 朴委員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뭐 일곱살 먹은 이런 애들이 「데모」에 參加했을 리는 만무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打撲傷을 입었다 이런 어린이들이 타박상을 입었다 하는 것은 반드시 戒嚴軍의 무슨 박달나무에 맞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서 입는 것도 타박상이고 車에 치는 것도 또 타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數字가 뭐 27이라는 것이 맞습니까라는 그것이 꼭 18日날 그런 初動段階에서 다 생겼다는 그런 證據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數字나 이런 것을 꼭 그렇게 자기 이야기 하는데 유리하도록만 갖다붙여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저는 證人이 午前에 이어서 一貫된 그런 見解를 表明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실망합니다.

저는 鄭鎬溶證人이 같은 취지의 말씀이라도 그렇게 안해 주시기를 바랬더랬습니다.

제가 質問中입니다마는 잠시 許容된 發言時間 안에 議事進行發言을 委員長께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聽聞會때 여러가지 諸般情況을 이해할 수 있는 「비디오」나 寫眞에 대한 檢證을 要請한 바가 있습니다. 現場調査도 要請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證人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寫眞에 대해서 이른바 證據能力을 否認하고 계신데 이 점을 저는 다시 委員長께 議事進行發言으로 강력히 要請하면서 質問을 계속합니다.

證人! 5月16日 國防部에서 全軍 指揮官會議는 없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5月16日 말입니까?

○朴燦鍾委員 예.

○證人 鄭鎬溶 예. 없었습니다.

○朴燦鍾委員 틀림없이 없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朴燦鍾委員 당시 戰敎司參謀長이었던 장사복씨가 證言한 바에 의하면 그때 尹興禎戰敎司司令官을 포함하고 證人까지 參加한 國防部

主要指揮官會議가 있었다고 證言하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장사복將軍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16日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복將軍은 아마 그런 會議가 있어도 거기에 포함이 될 그런...

○朴燦鍾委員 장사복將軍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尹司令官이 參席하고 와서 그 狀況을 얘기했는데...

○證人 鄭鎬溶 그러니까 아마 本人이 직접 한 행위가 아니니까 아마 잘못 생각했을 것입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交互訊問이나 對質을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證人은 5·17戒嚴을 말하자면 강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물戒嚴이다 그러면서 證言하시기를 위태롭게 된 事態를 이왕 戒嚴令이라면 戒嚴답게 事態를 장악하고 平靜해야 되기 때문에 5月17日 全軍指揮官會議에서 그와 같은 發言을 하셨다. 그 陳述 維持하시지요?

○證人 鄭鎬溶 글썽요. 제가 그때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雜誌에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왔던데 거기에 기억나는 것은 發言의 順序가 맞다는 것은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公式記錄인 것 같으면 제가 잊어버렸던 것까지 全部다 是認을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是認하는 범위는 아주 적고 全體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서도 거기에 多大數 人員이 말한 것과같이 全般的으로 戒嚴擴大쪽을 支持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 戒嚴擴大를 하지 않으면 안될 위태로운 事態가 5月17日頃에 證人의 판단에서 造成되었다면 證人은 오늘의 눈으로... 8년이 지난 오늘의 視角으로 보셨을 때에 그 위태롭게 된 事態가 유발된 原因이 12·12 變則의인 鄭昇和將軍의 逮捕 그리고 變則의인 戒嚴의 延長 政治日程의 조속한 確定이 안이루어진 데서 오는 早速 戒嚴解除 早速改憲 主張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示威가 增幅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昨年 6·29때 證人께서 그 엄청난 示威事態를 보고 결국 그 示威의 誘發原因인 直選制改憲을 받아들이라는 要路에의 哀情어린 의견을 개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8年뒤의 視角으로 보았을 때 이 위태롭게 된 事態를 早期에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량한 우리 國民들의 그 거울에서 봄에 이르는 일관된 主張을 받아들였더라면 저는 이 誘發原因이 없어졌다고 확신을 하는데 證人이 8년이 지난 오늘의 視角에서도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同意하실 수 없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하나의 假定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분들의 正當한 要求가 다 수용되었으면 또 事態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또 저 역시 假定으로 對答할 수 밖에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尹證人에 대해서 5분이 되어 있는 것을 저에게...

○委員長 文東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있는 時間은...

○朴燦鍾委員 全斗煥將軍이 5月17日 全軍非常指揮官會議에 參席하지 않으셨지요?

○證人 鄭鎬溶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예. 그 안한 데 대해서 證人은 이렇게 말씀하고 제합니다.

당시 中將으로서 軍內 序列과 階級은 낮은 편이었지만은 實力者이기 때문에 그 指揮官會議에는 참석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유지하시지요?

○證人 鄭鎬溶 저는 그때 實力者라고 본 것은 事實이고 그당시 결국 지금 말하는 安企部長 中情部長을 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會議에 나오기가 거북할 것이고 또 國防部長官과 中情部長의 序列 自體가 좀 모호합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으려면 保安司令官이라는 하나의 資格으로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中情部長을 兼한 날로부터 어떠한 國防部の 會議나 陸軍本部の 會議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公式席上에 한번도 나온 기억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5·17戒嚴擴大以後 5月25日 證人 이 保安司令部에 이른바 便宜服 注文하러 갔다 하는 그날 黃永時將軍과 함께 全斗煥將軍은 保安司에서 相面하셨죠?

○證人 鄭鎬溶 예.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朴燦鍾委員 제가 묻는 데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아니 글썽 相面한 것이 아니라 그때 黃永時將軍께서 光州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黃永時將軍께서는 陸軍參謀次長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5日 오후에 崔圭夏大統領께서 오신다 하는 말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崔圭夏大統領께서 오시면 그 「노담」이라고 前後에 飛行機를 못 뜨게 하는 그런 規定이 있습니다. 大統領閣下の 소위 警護 安全을 위해서... 그래서 「노담」에 걸리니까 그때 25日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아주 氣象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유토니-1」이라고 아주 낡은 飛行機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 오셨기때문에 나도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고 또 그밑에서 그 便宜服을 좀 支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하니 같이 올라갑시다 그래서 같이 光州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제가 그 經緯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全將軍은 만났지 않았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 만나고 나온 이후에 證인이 최근에 記者들에게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때 光州충정作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그때 保安司令官인 全斗煥將軍이 證人 등에게 光州鎮壓作戰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기다려서 신중히 하자고 이야기하더라 全將軍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國家의 現在狀況에서 責任을 져야 할 實力者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때 광경을 吐露를 하셨는데 대개 이런 趣旨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그 후에...

○朴燦鍾委員 그 후에 이렇게 吐露하셨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 그후의 이야기고요...

○朴燦鍾委員 그러니까 이런 趣旨인지 아닌지

만 그것만 말씀하세요.

○證人 鄭鎬溶 예. 당시의 꼭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다만 그때 중요한 것은 全般的으로 國防長官이나 戒嚴司令官이나 또는 保安司令官 등등의 그 사람들의 視角은 이 作戰을 좌우간에 어떻게든 좀 늦춰야 된다는 視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自體收拾委員會가 있었습니다. 光州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힘을 얻어가지고 自體的으로 收拾을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대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었고 軍部에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 보세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吐露를 記者들에게 했고 이것이 言論媒體에까지 報道가 됐습니다. 이 말은 이미 당시의 全斗煥將軍은 光州事態 前後로 해서 움직일 수 없이 國家의 統治者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軍內部的 분위기를 證人은 이렇게 不知不識間에 吐露한 것이냐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質問으로 8月16日날 崔圭夏大統領은 辭任하면서...

○委員長 文東煥 이것이 정말 마지막 質問이고 對答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아세요.

○朴燦鍾委員 平和的 政權交替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責任政治 具現을 위해서 나는 辭任을 한다 그리고 8月22日 바로 全軍主要指揮官會議에서 全斗煥將軍은 大統領으로 추대하기로 한 그날 같은 날 退任한 崔圭夏大統領은 새時代 새社會 建設을 위해서 私心 없고 信念이 투철하며 實踐力을 겸비한 全斗煥將軍을 추대한다고 이런 對國民聲明을發表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른 정신으로는 이 두가지 辭任과 推薦辭가 나올 수 없습니다.

證人은 午前에 軍이 政治에 介入해서는 안 되고 나는 그 政治에 介入하려고 마음 먹은 일도 없다고 했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때 이것이 全軍主要指揮官會議의 核이었던 證人의 입장에서 이것이 政治介入이 아니냐 하는데 대한 質問 하나하고 끝으로 이런 과

정을 통해서 證人の 盟友인 全斗煥將軍을 무리한 大統領으로 擁立해 가지고 결국 個人的國家的으로 이런 비극은 創出하고 證人は 끝내 이 證言臺에서 이렇게 長詩間 고생을 해야 할 狀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參考로 周永福證人は 歷史와 國民앞에 자기가 全軍主要指揮官會議의 主宰者로서 全斗煥將軍을 大統領으로 추대한 그 行爲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한 바가 있습니다. 저의 이 質問에 대해서 答辯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저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 당시 상황을 論하려면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는 軍部內에서는 상당히 支持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大統領께서 下野도 하셨고 이래서

오히려 그 당시 나 「스트롱 맨」... 「스트롱 맨」이라는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라의 政權을 잡고 나가는 것이 國家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하는 그러한 시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軍人들도 또 많은 國民들도 支持를 해서 그 분을 大統領으로 앉혔습니다.

오늘날 나는 그 분에 대해서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證言臺에 앉아서 여러가지 구구한 얘기를 하게 된 것도 그 분이 못한 것 그 못한 部分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서 證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の 그 答辯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고 全國民의 支持가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證人께서도 한번 더 再考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崔鳳九委員 訊問하여 주십시오. 15분이 割當되어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平和民主黨의 崔鳳九委員입니다.

證人は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光州事態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지금부터라도 證人께서 光州民主化運動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本委員이 聽聞會場에 나오면서 貴下가... 證人の 과거 여러가지 軍經歷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政界에 발을 디딘 행적을 보고 상당한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이 많은 배일에서 활짝 가려져 가지고 백일하에 露出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기대는 아주 미흡한 그런 真相明瞭狀態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本委員의 訊問에 비록 同僚議員이지만 진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單刀直入의으로 證人에게 묻겠습니다.

5·18光州民主化運動 당시의 慘狀을 證人は 목격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死傷者가 발생했는데 證人の 判斷은 그때 發砲命令者가 과연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제가 아는 바로는 自衛權發動自體가 發砲命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 委員께서 주장하신 바와같이 自衛權發動은 21日날 저녁에 됐는데 어떻게 午後에 그러한 射擊이 있었느냐 發砲가 있었느냐 이 점은 局部的으로 거기에 있는 指揮官의 裁量에 의거해서 射擊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면 戰敎司... 戰鬪司令部라고는...

○證人 鄭鎬溶 따라서 戰鬪詳報에 전부다 보면 그 自衛權發動時期와 시간과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래서 그것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별도로 어디 뒤에서 누가 별도로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推測에 지나지 않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戰敎司 戰鬪詳報에는 20時30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밤 20時30분이지요. 그러니까 午後 8時30분입니다.

그 다음 20師團 忠正作戰 詳報에는 21時입니다. 밤 9時입니다.

그 다음 7旅團 戰鬪詳報에는 18時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部隊長들이 獨自的인 判斷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陸本指示에 의했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指示에 의했을 것입니다.

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그 指示는 누구일까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그때 指揮系統이 32師團 戰敎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指揮系統에 의해서 내려 왔지요.

○崔鳳九委員 예, 좋습니다.

오늘 종일 證人의 證言에는 光州에서 下級部隊가 作戰에 임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 간 것 뿐이고 責任은 없다고 證言했습니다. 世人들은 證人이 光州民主化運動때 流血強硬鎮壓을 指揮한 張本人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世評을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묻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그것은 空輸部隊指揮官이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그러나 저는 責任이 없다 소리는 안합니다. 空輸部隊가 參加했기 때문에 그 道義的 또 그 위의 指揮官으로서의 責任은 痛感하고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指揮官은 作戰指揮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所屬部隊長으로서 指揮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證人 鄭鎬溶 母體部隊長으로서의 느끼는 것입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나 그 이전에 만약에 責任과 權限을 따진다면은 그것을 그 現場에서 直接 指揮한 사람이 있고 또 法的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權限과 責任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 물어봐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崔鳳九委員 알겠습니다. 軍部隊는 正常的인 命令系統의 作戰命令에 따라 移動하고 作戰에 임하지요?

○證人 鄭鎬溶 예?

○崔鳳九委員 軍部隊는 通商 正常的인 命令系統의 어떤 作戰命令에 따라서 移動하고 作戰에 임하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렇다면 7空輸旅團所屬의 33大隊 35大隊가 陸軍本部 作戰命令에 의해서 31師團의 作戰統制에 配屬돼 있습니다. 이 경우 特戰司令官인 證人의 作戰指揮權을 벗어나 證人이 作戰을 指揮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作戰指揮할 수도 없었습니다.

證人의 말에 의하면 시집간 딸에 비유하여 所屬部隊가 염려되어서 光州에 간 것으로 비유하여 證言했습니다.

과연 命令에 따라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이 軍隊인데 證人의 私兵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무슨 필요 말입니까?

○崔鳳九委員 아니! 무슨 部隊를 따라서 光州까지 내려가 가지고 계속 作戰을 지켜본다는 것은...

○證人 鄭鎬溶 저는 光州地域에 있어서 現場에는 한번도 나가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現場에 나가 본 일은 딱 刑務所에 한번 간 일밖에 없어요.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따라 다니면서 본일도 없고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은 저의 경우는 바로 陸軍本部命令에 의거해서 그 軍部로 配屬이 된날 그 시각으로부터 저는 2軍에서 그것을 35師團에 주는 31師團에 주는 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혹시 光州에 있는 駐屯部隊長의 統率能力을 의심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證人 鄭鎬溶 그런 것 없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作戰指揮에 관여치 않고 단순한 염려때문이었다고 하면 光州에 가서 7旅團所屬 33 35大隊의 作戰 統治權者인 31師團長을 한번쯤은 만나 가지고 서로 相議도 해 볼만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證人 鄭鎬溶 많이 만났습니다. 그 戰鬪敎育司令部에서...

○崔鳳九委員 31師團長도 많이 만났습니까?

○證人 鄭鎬溶 아! 만났습니다.

○崔鳳九委員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證人 鄭鎬溶 예.

○崔鳳九委員 陸軍 作戰命令 18-80號가 이것이 5月17日字입니다. 이것 해가지고 7旅團所屬 33大隊 35大隊가 31師團作戰統制에 配屬되었는데 證人의 證言에 의하면 旅團指揮部가 光州에 내려 가 가지고 戰鬪兵科 敎育司令部 狀況室에 本部를 設置했다고 아까 午前에 證

言했습니다.

○證人 鄭鎬溶 예.

○崔鳳九委員 그런데 그 곳에 들렀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 곳이 事實上 空輸特戰團 指揮司令部이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아닙니다. 7旅團長은 4個 大隊를 2軍에... 7旅團作命은 2軍에 配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軍에서는 그 7旅團을 旅團全體로 사용하지 않고 1個 大隊는 全州로 주었었고 1個 大隊는 大田으로 주었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니까 大田에 간 部隊는 32師團長한테 指示를 받고...

○崔鳳九委員 제가 그것은 알겠습니다.

더 說明 안 해도 알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니까 7旅團長은 어디 指揮할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7旅團長 역시 저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光州가 무슨 그런 事態가 없었으면은 거기에 뭐 할려고 내려가겠습니까?

○崔鳳九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걱정이 되어서...

○崔鳳九委員 예. 예. 알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래서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旅團長이 내려왔으니까 그 뒤 指揮部가 따라와... 指揮部라는 것이 參謀 한 두사람하고 결국은 通信施設입니다.

○崔鳳九委員 旅團本部는 作命에 이야기한 대로...

○證人 鄭鎬溶 그래서 그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갔다왔다 이것입니다.

○崔鳳九委員 旅團本部는 作命에 의하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移動이 가능합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이야 旅團長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요.

○崔鳳九委員 旅團長은 그러니까 陸本 作戰命令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旅團本部 司令部가 마음대로 이렇게 移動할 수가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旅團은 2軍에 이미 作戰統制 되었지 않습니까?

○崔鳳九委員 2軍에 作戰統制 되었는데요 旅團 자체가 된 것이 아니고 33大隊 35大隊만 된 것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예. 大隊만 配屬이 되었습니다.

○崔鳳九委員 旅團本部는 지금 位置가 어디입니까?

○證人 鄭鎬溶 旅團本部는 그 때 광주에 와 있었습니다.

○崔鳳九委員 와 있기는 와있었는데 그 당시 作戰命令에 의했습니까?

그런 作戰命令이 없어요.

旅團本部의 移動은 없습니다.

○證人 鄭鎬溶 아닙니다 그것은 旅團長이 그것은 알아서...

○崔鳳九委員 알아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證人 鄭鎬溶 걱정이 되어서 와있었고 그래서 旅團長도 걱정이 무슨 常駐하지 않았고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旅團長도 걱정이 되어서 왔다 갔다만 했지 旅團本部가 移動한 것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證人 鄭鎬溶 그럼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보기보다는 훨씬 더 큰 그래도 旅團 大隊하고 連絡을 할 수 있는 그런 施設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午前에 證人께서는 CAC 狀況室에다가 旅團本部를 設置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예. 일종의 旅團本部입니다. 그것이...

○崔鳳九委員 證人께서는 20일부터 27일까지 光州를 6日間 滯留했습니다.

그 동안 꼭 잊은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20일부터 27일까지... 21일만 빼고 6日間 滯留했습니다 했는데...

○證人 鄭鎬溶 아닙니다.

○崔鳳九委員 아닙니다. 맞습니다.

○證人 鄭鎬溶 21일도 빠졌고 23일날은...

○崔鳳九委員 20日 光州 왔다가 서울 갔지요 22日 午前에 왔다가 23日 午後에 서울 갔지요.

○證人 鄭鎬溶 그리고 25日 올라왔으니까요.

○崔鳳九委員 23日 또 갔다가 25日 올라왔지요.

○證人 鄭鎬溶 예.

○崔鳳九委員 24日 거기서 이틀 주무시고 온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예.

○崔鳳九委員 그 다음에 26日 밤 늦게 갔다가 27日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滯留 日字는 6日間입니다. 6日間인데 作戰指揮權은 31師團長에게 있었고 21日 이후부터는 정당한 命令節次도 없이 戰鬪兵科敎育司令官이 사실상 作戰指揮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證人이 戒嚴司令官이나 保安司令官과 協議를 위해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무슨 保安司令官하고 協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崔鳳九委員 아니 내가 꼭 그 쪽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戒嚴司令官도 있었고 戒嚴司令官이 당시...

○證人 鄭鎬溶 예. 戒嚴司令官은 제가 올라가면 거의 뵈었습니다 거의 뵈었고 그때 누가 와서 蘇俊烈將軍이 와서 光州狀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 입장은 못됩니다.

실제 部隊의 作戰指揮 責任을 말으면 한 시간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무슨 狀況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 狀況이 벌어질 때마다 그 指揮官만이 決心을 해서 作命을 下達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그 通信 軸線上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런데 저는 그러한 責任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光州에 왜 그렇게 내려가느냐...가장 큰 原因은 걱정입니다.

事態가 그렇게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뭐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또 있어 보아야 全部隊는 전부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首警司가 作戰統制하지요 3軍이 作戰統制하지요 2軍이 作戰統制하지요.

저는 指揮할 것도 없었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제가 말이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사실들은 당시 軍部 實務中 한 사람인 證人의 位置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證人이 당시 空輸部隊 73·11旅團의 사실상 作戰指揮權者였을 것으로 世人들이 判斷합니다 그런데 그런 判斷하는데 충분한 蓋然性이 있다고 立證되는데 證人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요. 그 후에 남들이 자꾸 實勢 實勢를 해서 認定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12·12의 核心 「멤버」도 아니었고 저는 陸軍少將이었었습니다.

그 위에 軍隊도 얼마든지 저보다 先任者도 있었고 先輩도 제쳤고 蘇俊烈將軍만 하더라도 어디에 제 말을 들겠습니까?

○崔鳳九委員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런데 그후에 제가 參謀總長도 하고 하나까 實勢 實勢 그러는데요 그때 狀況은 그렇지 않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光州民主化運動이 엄청난 流血事態로 발전하게 된 것이 初期에 示威鎮壓에 投入된 空輸部隊의 流血強硬 鎮壓때문이라고 지금은 判斷하지요?

○證人 鄭鎬溶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現場에 오신 분들하고...

○崔鳳九委員 지금은 判斷이 안됩니까?

○證人 鄭鎬溶 물론 뭐 空輸部隊 잘못된 것도 있지요. 그리고 이쪽 저쪽...

아까 저도 動에 대한 反動 反動에 대한 動 등등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強硬鎮壓이 아니고 그냥 그것은 하나의 自然的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봅니까?

○證人 鄭鎬溶 여러가지 그것은 확실하게 現場에 있었던 분을 가지고 잘... 그것은 調査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면 80年5月 19日 입니다. 31師團長이 參謀會議를 밤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上部의 強硬鎮壓命令을 拒否하고 無血鎮壓命令으로 바꾸어서 所屬部隊에 指示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된 措置입니까? 잘못된 措置입니까?

○證人 鄭鎬溶 強硬鎮壓命令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면 強硬鎮壓命令은 없었는데 無血鎮壓命令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러니까 다... 그것은 現場을 확실히 調査를 하고 그 때에 잘 調査를 해서 一方的으로 듣지 마시고 확실하게 調査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鳳九委員 그때... 世人들은 無血鎮壓指示를 市民의 生命을 尊貴하게 생각하는 참다운 軍人情神이라고 評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어느 指揮官이요. 많은 犧牲者를 내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指揮官이...

○崔鳳九委員 알겠습니다. 軍人服務規律을 보면 거기에는 상당히...

○證人 鄭鎬溶 常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구잡이로 쏘라고 할 大韓民國의 軍 指揮官이 어디 있겠습니까?

○崔鳳九委員 알겠습니다. 軍人服務規律을 보면 軍人은 上官의 命令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絶對 服從한다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물을 만 한 것은 물습니다. 물을 만 한 것은.....

○崔鳳九委員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요. 무조건 服從이라는 것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崔鳳九委員 아니 服務規律에 이렇게 明文化로 되어 있기에 묻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예.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물을 만 한 것은 다 물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12월 12日 밤에 特戰司令官 鄭炳宙將軍이 隷下部隊인 3旅團所屬 將兵의 銃擊에 의해서 銃傷을 입고 逮捕당했는데 이런 사실은 軍刑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데 증인은 다음날 特戰司令官으로 赴任하여 어떤 法律的 措置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아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崔鳳九委員 아니 法律的인 措置를 취했느냐고는 안 물어봤습니다. 분명합니다.

○證人 鄭鎬溶 예. 措置를 취하지 않았습니니다.

○崔鳳九委員 안 했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안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 날 司令官을 지키다가 銃擊에 死亡한 副官 金伍郎少領의 죽음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합니까? 名譽로운 戰死입니

까? 아니면 抗命으로 인한 射殺입니까?

○證人 鄭鎬溶 名譽로운 戰死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그렇게 措置를 했습니다.

○崔鳳九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10分間 停會하겠습니다. 그러면 35分에 돌아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23分 會議中止)

(17時36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기에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訊問 始作하기 전에 아까 金泳鎮委員하고 朴燦鍾委員이 要請했던 現地踏查問題 그리고 朴燦鍾委員이 두번 要請했던 「비디오 테이프」問題 이것은 幹事會議에서도 議論한바 있고 또 계속해서 議論해서 적절히 執行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金泳鎮委員 委員長님!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지난 번 11月19日 全國國民이 지켜 보는 가운데에 中繼된 聽聞會에서 公式的으로 提起된 問題를...

○委員長 文東煥 그것을 書面으로써 幹事會議에다 提出해 주세요.

○金泳鎮委員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 問題를 調査를 안하기 때문에 國民들이 의혹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月19일부터 21日까지 聽聞會가 開催되기 전인 일주일동안 반드시 調査委員會를 構成하도록...

○委員長 文東煥 예. 參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李仁濟委員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입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인사를 省略하고 바로 質問에 들어 가겠습니다.

證人은 우리나라 軍이 創設된 이래로 軍이 政治的인 見解때문에 示威를 벌이고 있는 市民과 衝突을 해서 많은 殺傷의 결과를 빚은 일은 이 바로 5·18光州抗爭 이 事件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그리고 다시는 國民이 세운 이 軍隊가 우리 國民과 衝突을 해서 國民을 殺傷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聽聞會가 그 真相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證人 鄭鎬溶 ……

○李仁濟委員 證人은 그 12·12事態 소식을 大邱에서 듣고 12월13日 서울에 올라와서 全斗煥保安司令官을 만난 일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올라와서 당시 9師團이 出動을 해서 中央廳을 占領하고 또 空輸3旅團의 空輸特戰司令官을 負傷시키고 逮捕하고 또 그 3旅團兵力이 千戶大橋를 건너서 慶福宮을 警備하고 기타 다른 空輸旅團들은 또 國防部와 陸軍本部 등을 占領한 사실도 알게 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그리고 그와 같은 部隊들의 移動은 당시 公式의인 指揮系統이 아닌 全斗煥保安司令官 기타 12·12事態를 주도했던 勢力들이 실력에 의해서 命令을 해가지고 그와 같이 移動된 사실도 부인하지 못하시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그러면 12·12事態로 인해서 首都圈 일원에 가장 核心的인 部隊인 首都警備司令官 그리고 特戰司令官 이 두 職責이 空席이 되어 있기 때문에 陸軍參謀總長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를 메꾸는 작업이 굉장히 긴박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서 묻겠는데요. 證人이 特戰司令官職을 요청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특별히 요청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누구로부터 通報를 받으셨지요?

○證人 鄭鎬溶 陸軍本部로부터 通報를 받았습니다.

○李仁濟委員 당시 全斗煥保安司令官 등과 만났을 때 特戰司令官 자리를 證人께서 좀 도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던가요?

○證人 鄭鎬溶 뭐 그런 의논은 없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나 結果적으로 12·12事態를 주도 했던 勢力들에 의해서 추대된 李煥性當時 陸軍參謀總長보다는 그 주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證人의 特戰司令官職이나 또 다른 首警司令官職 이런 자리들이 결정됐으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부인 못하시지요?

○證人 鄭鎬溶 예. 아까 저도 얘기했었습니다. 마는 그 분들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李仁濟委員 좋습니다. 그러나 원래 統帥系統에 의하면 兵力의 移動도 물론 大統領이 있습니다마는 參謀總長을 정점으로 하는 軍의 統帥系統에 의해서만 移動이 되어야 되고 特戰司令官이라든지 首警司令官같은 것은 陸本直轄部隊이기때문에 參謀總長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中樞的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틀림없지요?

○證人 鄭鎬溶 물론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79年12월12日 당시에 그와 같지 않고 실력에 의해서 軍이 이동이 되고 또 인사가 결정됐다는 것을 本委員은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全斗煥씨의 위치가 80年5월17日 戒嚴을 확대할 때까지 계속 강화되어 왔으면 강화되어 왔지 약화되지 않았지요? 그것도 부인하지 못하시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묻겠습니다. 證人은 80年5월17日 아침 9時에 陸軍主要指揮官會議에도 참석을 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그때는 國防部會議이 있기 때문에 일단 陸軍은 陸本에 다 모여서 같이 가도록 하자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陸軍本部에서 별도 會議이 있는게 아니라...

○李仁濟委員 예. 좋습니다. 하여튼 陸軍本部에서 9時경에 모이서 가지고 11時에 國防部에서 全軍主要指揮官會議을 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10時입니다.

○李仁濟委員 10시입니까? 그때 證人은 아까도 證言을 하셨듯이 당시 戒嚴狀態가 미자근 하니까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發言을 하

셨다고 그랬지요?

○證人 鄭鎬溶 예. 대부분이 다 그런 방향이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당시 騷擾事態 示威事態를 軍事力을 동원해가지고 物理的으로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지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이 示威가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예. 좋아요.

그러면 示威事態를 진정시키는 것은 물론 軍事力을 동원해서 物理的으로 진압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警察力으로 진압을 하면서 政治的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물론입니다.

○李仁濟委員 또 非常戒嚴을 全國的으로 확대하느냐? 또 당시 戒嚴이었지만 아직 軍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軍을 더 투입해서 직접 物理的으로 해결을 하느냐 하는 판단은 政治的인 판단인 것만은 틀림없지요? 大統領이 最終的으로 政治的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證人은 물론 始初段階지만 그와 같은 政治的인 판단이 옳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 會議에 참여를 하셨단 말입니다.

證人은 80年5月17日 당시에 證人 스스로가 나는 政治家가 아니고 軍人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계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그리고 政治에 관해서는 별로 큰 뜻이 없으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없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순수한 軍人이 그와 같은 政治的인 판단을 했을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5月17日 指揮官會議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全斗煥씨와 만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證人 鄭鎬溶 5月에는 만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李仁濟委員 5月에는 안만나고 4月에는 만났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때는 그 분도 바쁘고 나는 나대로 任務를 받은 점이 있고 해서요 제가 또 원래 保安司나 또 뭐 그런 데를 잘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李仁濟委員 保安司는 좋아하지 않으셨겠지만 全斗煥씨하고는 친한 사이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예.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가 이런 경우가 있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4월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全斗煥씨 밑에 있는 部下들하고도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별로 없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全斗煥씨 하고 通話도 한 일이 없습니까? 5월에는...

○證人 鄭鎬溶 5월에는 거의 通話가 없고 특히 光州事態때에는 전연 通話를 하지 않았읍니다.

○李仁濟委員 光州事態 前을 묻고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예. 通話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지난 번에 周永福國防長官은 證言하기를 5·17 직전에 權正達씨로부터 國保衛에 관한 提案도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證人은 어떤 時局에 관해서 保安司要員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證人 鄭鎬溶 저는 權正達씨가 그런 것을 起案을 하고 있다는가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저한테 그러한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좋습니다.

證人이 79年12月4日頃인가요 特戰司令官職을 수행하면서부터 特戰司令部의 최고책임자였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원래 空輸部隊가 창설될 당시에는 지금은 特戰大隊라든지 特殊任務大隊 教範에 보니까 特戰部隊의 원래의 임무에 관해서는 아까 다 나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요.

騷擾鎮壓하고 警護警備任務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騷擾鎮壓 警護警備 이 임무가 추가된 것은 언제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가 있을 때에도 그러한 임무는 있었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證人 鄭鎬溶 그것을 騷擾鎮壓이라 하지 않고 통상 그것을 肅正作戰이라고 그러합니다.

○李仁濟委員 敎範에 騷擾鎮壓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마 國民의 税金으로 特戰司令部 이 空輸特戰部隊 이 얼마나 중요한 部隊 입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部隊입니다. 11名 내지 12名이 1個 中隊兵力の 豫算을 사용하는 그런 아주 고급화된 部隊 아닙니까? 이런 部隊를 창설하면서 처음부터 「데모」나 진압시키는 목적을 부여했을 까닭이 없습니다.

좋아요 證人!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證人 鄭鎬溶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第3共和國에 들어와서 부가적으로 그것은 부여된 임무지 그것은 무슨 敎範에 있다든가 그런 임무는 아닙니다.

○李仁濟委員 敎範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本委員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鄭鎬溶 아니 警護警備 말이지요.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警護警備도 敎範에 있습니다. 명백히 들어 있습니다.

特戰大隊 特殊任務大隊에...

물론 司令官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證人 鄭鎬溶 그것은 아마 별도로 거기에서 만든 것이겠지만 그것은 원래에는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지요. 본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그 후에 추가된 것이지요.

○李仁濟委員 이런 騷擾鎮壓이라는 것은 證人 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가적인 임무이지 본래의 임무는 아니다 이것이지요?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본래의 임무를 위해서 特戰部隊는 엄청나게 강한 訓練을 받지요? 그것은 틀림없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特戰部隊의 特質은 주로 ... 물론 戰略空輸 戰術空輸가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일단 유사시에는 주로 敵 後方이라든지 또는 우리 後方이라도 고립된 지역 「게릴라」가 침투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空輸해 가지고 특수한 任務를 맡기게 되게 되기 때문에 이 部隊에는 후퇴라는 概念이 없지요?

○證人 鄭鎬溶 어느 部隊고 다 後退라는 개

념은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一般步兵部隊야 戰略에 따라서 後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特戰部隊는...

○證人 鄭鎬溶 그것은 命令이 내려야지요 그리고 特戰部隊도 命令을 내리면 철수해야지요.

○李仁濟委員 이 特戰部隊는 敵陣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戰略概念이 有事時에 敵後方에 투입된 部隊를 빼내오는 계획까지도 갖고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물론 입니다마는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입이되면 거의 거기에서 죽을 작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部隊員을 내놓고 그냥 죽일라고 빼내오는 計劃도 안하고 그러한 作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물론 죽으라는 것은 아니고 살으라는 것이지만...

○證人 鄭鎬溶 그러나 참말 빼내온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李仁濟委員 그렇습니다. 後退를 거의 예상하지 않고 거점을 확보해서 敵後方을 교란시키는 것이 主任務 아니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전투를 하다 죽어야지요.

○李仁濟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空輸部隊員들은 어떠한 상황에 임했을 때 포로를 잡는 것은 별로 없지요? 하여튼 敵을 침묵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지 그것을 포로로 잡아서 관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敵地에서 말입니까?

○李仁濟委員 그렇습니다.

○證人 鄭鎬溶 글썽요. 필요하면 情報도 해야 하고 勞務者로도 써야 하고 뭐 여러가지 人力이 필요할 때는 포로도 잡아서 하는 것이고 또 원래 인도적 견지에서 죽일 필요가 없을 때는 살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軍人들의 精神입니다.

○李仁濟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金泳鎭委員께서도 質問하셨고 本委員이 입수한 여러 資料를 檢討해 보면 光州一圓到處에서 체포된 포로를 即決射殺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런 空輸

部隊의 평소의 特質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時間關係上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證人 鄭鎬溶 저는 그것을 참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겠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을 확실한 調査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敵地에 떨어지기 때문에 同僚愛가 다른 一般軍人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同僚가 다치면 자기가 다친 것 이상으로 그야말로 條件反射의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또 이 部隊員들의 特質이라면 特質이겠지요?

○證人 鄭鎬溶 예. 部隊는 精銳部隊가 되면 될수록 戰友愛는 더욱 더 공고하고 강합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습니다. 원래 空輸部隊의 主任務는 이와같이 敵의 後方에 침투해가지고 여러가지 任務를 완수하는 것인데 80年 2月 당시에는 空輸部隊의 訓練이 주로 이 「데모」 鎮壓訓練이었던 것도 부인하지 못하시지요?

○證人 鄭鎬溶 主訓練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主訓練에 부가해서 忠情訓練을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예. 그리고 이 部隊員들끼리 서로 「데모」 鎮壓示範 경기대회를 가져가지고 여러가지 시상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지요?

○證人 鄭鎬溶 모르겠습니다마는 旅團別로 그런 것을 部隊別로 했을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이 5月 17日 全軍指揮官會議에서 戒嚴擴大에 贊成을 표했는데 만일 戒嚴이 확대되고 軍을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소요를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證人은 제일 먼저 證人의 摩下空輸部隊가 투입되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계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저는 말이지요. 그때 5·17非常戒嚴擴大 하고 이런 때는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생각이었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殺傷을 예상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證人 鄭鎬溶 예. 그래서 軍이 결연한 자

세로 나오면 學生들의 示威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이지 누가 이런 光州事態 같은 流血劇이 일어나리라고… 만약 그런 것을 예상했다면 절대 戒嚴擴大措置는 없었을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本委員이 質問하지 않은 사항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文書에 의해서도 그렇고 證人의 證言도 이미 非常戒嚴이 發效한 17日 밤 零時 이전에 7空輸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光州地域하고 全州地域 大田地域에 投入되기 시작했지요? 이동하기 시작했지요?

○證人 鄭鎬溶 아닙니다. 그것은 非常戒嚴發效前이 아니라 非常戒嚴이 이미 發效되어 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전국 非常戒嚴을 묻고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예. 全國擴大戒嚴 有效전에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명령도 나왔고요

○李仁濟委員 그러면 光州地域 全州地域 그리고 大田地域 물론 京仁地域은 論外로 하겠습니까. 원래 京仁地域에는 여러가지 空輸旅團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3個 아래에 있는 이 3個地域만 골라가지고 空輸旅團을 투입하는 결정이 證人은 아까 陸本作戰命令에 의해서 움직였지 다른 어떤 실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證言하셨죠?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지난번 李煥性證人이나 周永福證人이 이 聽聞會에 나와서 證言하는 것을 청취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일부는 보고 일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李仁濟委員 李煥性證人은 5月 17日 밤 零時 이전에 空輸部隊가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몰랐고 동시에 그 시간전에 金大中씨 金鍾泌씨 등 政治指導者들 그리고 民間在野人士들 그 밖에 學生들 일제히 檢學旋風이 부는 지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은 參謀總長의 命令에 의해서 空輸部隊가 光州 등 地域으로 移動配置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실질적으로 그 地域에 空輸部隊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李煥性將軍께서 아마 그때 잊어 버렸던가 陸軍本部의 作戰命令 없이는 部隊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통상의 경우 그러한 作命을 起案하고 下達하고 하는 것은 作戰參謀副長의 책임이고 전반적인 그런 作戰命令은 반드시 總長의 決裁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總長은 몰랐다고 證言했 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것은 아마 그 분이 잊어 버 렸던가...

○李仁濟委員 그것은 나중에 速記錄이 다 證 明합니다.

이미 79年12月12日 公式統帥系統에 의하지 않고 실력으로써 막강한 軍을 移動配置한 경 험이 있는 사람 그 뒤로 조금도 地位가 약 화되지 않고 5月 17日까지 계속 강화되어 온 사람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 그렇게 추리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軍隊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 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실이 왜 79年12月12日에 일어났을까요?

○證人 鄭鎬溶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 지 않았습니까?

○李仁濟委員 5月17日이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그때는 指揮系統이 다 살고 있었습시다. 陸軍總長도 계셨고 國防長官님도 계셨습시다.

○李仁濟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5月 17日에 이동한 것은 아 니지만 그 뒤에 19日인가 11空輸旅團 어디에 있었습니까? 江原道 華城郡인가에 있지요?

○證人 鄭鎬溶 그 당시 11空輸旅團은 서울에 와 있었습시다.

○李仁濟委員 1個 大隊인가와 있었지요? 金浦에 와 있었지요? 다 와 있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3個 大隊가 다 와 있었습 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언제 왔습니까?

金浦로...

○證人 鄭鎬溶 그것이 10日頃이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李仁濟委員 5月10日頃입니까?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그런데 前方에 있는 이 空輸部 隊라고 다른 空輸部隊는 없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있었습시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前方에 있는 空輸部隊 전쟁이 나면 가장 가장 먼저 敵後方으로 침 투시켜야 될 空輸部隊를 왜 金浦로 배놓았어 요? 5月1日 이미...

證人은 그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鎬溶 그 당시는 여러가지 學生示威 들이 있었고 首都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軍隊라는 것은 준비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一般民間人들이나 政治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과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될텐데 이럴 때도 軍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證人 여기 또 나오시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可能한 限 제한된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래서 그 때 시그럽고 그러 니까 미리 배놓은 것 아닙니까.

○李仁濟委員 됐어요 알겠습니다.

證人은 아까 證言에서 空輸部隊 命令에 의 해서 光州地域에 이동시킨 空輸部隊 3旅團 7 旅團 11旅團 이 旅團兵力이 部隊를 이동할 때 실탄을 휴대하고 간다고 했지요? 自隊에 서.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시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그 실탄은 大隊長이나 中隊長이 최후까지 管理하고 있다가 마지막으 로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만 配給한다고 그랬죠?

○證人 鄭鎬溶 그렇습시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移動配置할때 그러니까 實彈을 휴대하고 떠날 때 까지의 指揮權은 證人에게 있는 것이지요?

○證人 鄭鎬溶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配屬을 시켰는데 현지 에 도착하기 전에 部隊를 이동할 때 까지의 原 自隊를 이동할 때까지의 指揮權은 證人에 게 있는 것이지요?

○證人 鄭鎬溶 물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釜馬事態때도 空輸部隊가 투입

되었던 사실을 證人 알고 계시지요?

○證人 鄭鎬溶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때 空輸部隊들이 가서 武力示威을 하나까 작은 충돌은 있었지만 그 분위기에 눌려서 示威가 진정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證人 鄭鎬溶 예. 자세히는 모르니다마는...

○李仁濟委員 그때에도 空輸部隊들은 自隊에서 實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압니까? 어쨌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당연히 가지고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李仁濟委員 당연히 가지고 갔으리라..... 만일 그때 空輸部隊에 武力示威에 그 공포감에 눌려서 市民들이 진정이 되자않고 충돌이 되었었다면은 그때에도 많은 살상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光州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겠지요?

○證人 鄭鎬溶 만약 사태가 악화되었으면..... 또 光州와 같이 그렇게 무기고가 털리고 또 시위하는 사람들이 武裝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戒嚴軍도 부득이 射擊을 했을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습니다. 證人은 5·17 戒嚴을 擴大해서 무력으로 軍事力을 이용을 해 가지고 物理的으로 소요를 진압하겠다고 주장했고 證人摩下의 3隊空輸旅團兵力이 시간은 조금씩 다름니다마는 光州現地를 향해서 내려갔고 내려갈때 實彈을 가지고 갔고 그때까지 證人이 指揮權을 갖고 있었다 말입니다. 光州에 내려간 空輸部隊들이 처음에는 武力示威를 했을 것입니다. 本委員도 실제로 참전했던 참전이라면 이상하지만 참가했던 空輸部隊員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탱크 비슷한 그것을 앞세워 가지고 처음에는 武力示威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 武力示威의 공포감으로 光州市民들이 잠잠해졌더라면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證人! 그것 예상 했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市民들이 계속 일어나서 충돌이 생긴다면은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쯤은

證人이 예상할 수 있었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仁濟委員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상을 무릎쓰고 證人摩下의 兵力이 實彈을 가지고 光州地域으로 출동을 한 것 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실 證人은 法律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法務參謀들의 조언을 들어서.....

○證人 鄭鎬溶 통상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예. 그렇지요? 그래 사실은 저는 證人에 대해서 發砲의 法的根據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엇그제 鄭基用도 당시에 陸本에 法務參謀「팀」中の 한 사람 이었던 그 사람하고 논쟁을 좀 했는데 證人은 이 자리에 나오서 가지고 軍人들의 發砲의 法的根據를 衛戍令15條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軍人服務規律하고 우선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하지요 軍人服務規律은 步哨兵들한테 적용되는 規定이지요. 證人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證人 鄭鎬溶 예. 보조의 임무에 대해서 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그 示威를 진압한 戒嚴軍이 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임무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法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步哨兵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規定입니다.

○證人 鄭鎬溶 아닙니다. 결국은 거기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道廳앞에서 示威隊를 막겠다 하는 것은 그 道廳까지는 그 示威隊가 점령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조의 임무와 그 임무는 동등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임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임무를 받았을 때에 한해서 무기를 사용할 권한도 있는 것이지 어디 휴가간 士兵이나 어디 私用으로 간 사람이 총을 쏠 수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요 당시 示威를 鎮壓한 제엄군은 원래는 보조는 아니지만 보조와 같은 비슷한 任務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法的 근거로 둔다 이런 말씀이지요.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를 지

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좋습니다. 판단할 사람은 저도 證人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할거예요. 그 다음에 衛戍令이라고 하는 것은 1個 軍隊가 한地域에 영구히 주둔을 하면서 軍隊의 질서를 지키고 또 軍의 施設物을 방호하기 위해서 발동되는 것이지 戒嚴令에 의해서 示威群衆을 鎮壓하기 위해서 戒嚴軍한테 적용되는 法律은 아닙니다. 證人 그거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요 그것은……

○李仁濟委員 좋습니다. 이것도 本 委員이 제 法律的인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問題點이 있고요 證人의 말대로 衛戍令 15條에 의한 自衛權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證人은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自衛權이 있기 때문에 實彈을支給받기만 하면은 그냥 戒嚴軍들이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에게 任務가 부여된 道廳防護면 道廳防護 驛前防護면 驛前防護를 위해서 發砲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射擊命令이라든지 이런 命令系統이 별로 필요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軍의 最高 司令官을 경험하셨는데 놀랐습니다.

○證人 鄭鎬溶 兵士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指揮官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軍에서 우리 國會에 보내온 陸軍本部의 作戰敎範 페이지 91에 보면 自衛權 發砲權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때에도 發砲命令을 수령한 隸下作戰部隊指揮官은 이 명령을 末端 小隊長에게까지 직접 하달하고 숙지상태를 확인시키고 그리고 發砲權限을 가진 指揮官은 發砲命令을 하달하기 전에 民間當局과 協議하지만 發砲命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發砲節次는 우선 發砲警告를 하고 空砲發射를 하고 저격수를 射擊하고 일제 射擊을 하게 되는데 實彈射擊은 指揮官에 의해서 철저히 統制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事態收拾이 도저히 곤란할 시에는 指揮官의 狀況判斷에 의거해서 일제 射擊을 실시하되 發

砲에 대한 책임을 作戰責任指揮官에게 있음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어디 末端兵士가 자기 마음대로 發砲합니까? 實彈만支給하면 마음대로 發砲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제가 물어드린 것이 틀림니까?

○證人 鄭鎬溶 틀리지 않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아마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으니까 大隊長이 그 部隊의 그 지역에 있어서 제일 先任責任者라면은 그것은 大隊長이 決定할 수 밖에 없고 中隊長이 그 地域에서 最高 先任者고 그 사람만이 決定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中隊長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小隊長이 小隊別로 똑 떨어져있는 경우도 있고……

○李仁濟委員 제가 말씀중에 막아서 죄송한데 제가 물어 드린 것이 틀리지 않다고 하면 제가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證人 鄭鎬溶 틀리지 않습니다.

○李仁濟委員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李仁濟委員 아까 말씀중에 戰鬪에서 우리 兵士는 敵軍을 언제나 原則적으로 射殺할 수 있지만……

委員長님 제가 朴泰權委員의 남은 시간을 할애받았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다녔습니다.

○李仁濟委員 다 썼습니까? 좋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지금 質問하신 것만 끝마치시지요.

○李仁濟委員 그러면은 그 質問을 바꾸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證人은 지난번에 아까 便衣服을 가지고 온 것도 내가 作戰에 관여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戒嚴分所長인 蘇俊烈씨가 민과委會 나와서 뭐라고 證言한 줄입니까? 그 대목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언제 상황이냐면요 24日날 외곽에 있는 空輸部隊를 飛行場에 있는 24師團 兵力과 交代配置시키는 상황입니다. 당시 空輸部隊司令官이 鄭鎬溶將軍인데 鄭將軍하고 상

황을 숙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空輸部隊을 光州市民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철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師團이 飛行場에 있고 空輸部隊이 市外廓에 있는데 바꾸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鄭鎬溶將軍이 캐피탈의를 했어요 그래서 報告를 해서 交代를 시켰습니다.

證人!

○證人 鄭鎬溶 기억합니다.

○李仁濟委員 證인이作戰에 관여를 안했습니까? 光州에 여러번 내려갔었고 또 便衣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作戰에 필요한 옷 아닙니까? 옷이라든가 다른 것 作戰에 관련한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證人 鄭鎬溶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指揮官이 우리 空輸部隊을 指揮함에 있어서 필요한 助言도 할수가 있고 또 空輸部隊이 任務遂行을 하는데 필요한 잠자는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까지를 다 지원할 그러한 責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저도 기억을 합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소준열將軍하고 移動 配置하는 그 얼마나 중요한……

○證人 鄭鎬溶 아니 移動問題가 아닙니다. 소준열將軍께서 저한테 말씀한 것은 空輸部隊이 光州市民들에 대해서 인상이 나쁘다 그러니까 空輸部隊 사람들은 光州市民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안 띄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空輸部隊이 그렇게 인상이 나쁘다면 아예 空輸部隊 옷도 입히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李仁濟委員 좋아요 한가지만 全斗煥 保安司令官이 光州抗爭期間동안에 光州에 내려온 일이 있지요?

○證人 鄭鎬溶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 기억에는 없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제가 그거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도 保安司令官이 光州에 내려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일도 없고 제가 만나보지도 못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矯導所에서 作戰한 3空輸旅團의 兵士가 직접 봤습니다. 證人は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李仁濟委員 이상으로 이제 本委員의 質問을 마치면서 딱 한마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歷史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비치는 法廷이다 이랬습니다. 다만 그 歷史의 판결이 언제나 늦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證人は 중요한 歷史的인 光州抗爭事件 거기에 어쩔 수 없는 主役입니다. 언젠가 歷史의 法廷에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이 빠르나 늦으나만 문제지요. 우리 모두가 다 숙연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거짓없이 진술하고 심판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證人 오래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李海瓚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時間은 20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平和民主黨의 李海瓚委員입니다.

證人 오랜 時間 證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質問 하나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 집안에 한 식구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財産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 강도보고 나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證人 鄭鎬溶 質問입니까?

○李海瓚委員 예.

○證人 鄭鎬溶 글썽요 강도보고 그거 흥쳐가지 말라고 해야 되겠지요.

○李海瓚委員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證人 鄭鎬溶 예.

○李海瓚委員 80年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소수의 軍部가 평화롭게 사는 國民들의 基本秩序를 파괴한 그런 행위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保安司令官을 맡고 있던 全斗煥少將은 12.12로 해서 下剋上을 일으켰고 國保衛를 만들려는 企圖를 했고 5.17戒嚴擴大措置를 使喚을 해서 內閣機能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大統領에 就任한 뒤로는 立法會議라고 하는 大統領令으로 立法機關을 만들어서

國會的 機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首
警司를 맡고 있었던 盧泰愚將軍은 바로 9師
團을 大統領의 命令없이 部隊를 서울로 移動
했었고 5月20日에는 首警司 統制下에 있는
兵力을 이용해서 國會的 機能을 정지를 시키
는 內亂罪를 범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이 있음)

그리고 特戰司를 맡고 있었던 鄭鎬溶將軍은
下剋上을 범했던...

(場內 騷亂)

조용히 하십시오 民正黨 委員들 光州에 대
해서 眞相을 규명하려면 조용히 하시고 반성
하십시오.

최세창이 바로 特戰司令官 자기의 上司를
총을 쏘고 連行한 그런 旅團長을 아무런 事
後 調査도 없이 光州에 또 파견해서 그 사
람으로 하여금 光州市民들을 학살하게 했고
그 후에 證人은 國保委 委員이 되어서 이런
內亂에 함께 했습니다. 바로 흔히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體制를 부정하고 社會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戒嚴을 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犯罪가
어디있습니까?

自由民主體制를 蹂躪을 하고 憲法의 基本秩序
를 蹂躪하는 것보다 더 社會秩序를 만들고
國民들을 虐殺하는 것보다 더 큰 犯罪가 어
디 있습니까? 本委員은 이런 얘기를 한 마
더 해 두고자 합니다. 懲役을 가면 窃盜나
強姦을 한 사람들은 未遂로 그친 사람들이
懲役이 삽니다. 성공을 하면 懲役을 더 많
이 받습니다. 그런데 內亂을 犯한 사람들은
유명한 유기천 教授의 刑法總論에 보면은
「內亂罪는 未遂에 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內亂을 성공하면은 바로 法을 執行하
기 때문에 罪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
니다. 內亂을 未遂에 그치면은 無期懲役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든 首警
司 特戰司 保安司 이 3司의 司令官들은 內
亂에 성공을 해서 既遂가 되었기 때문에 아
직 刑罰에 처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중
에서 한 사람이 이제 國民의 審判에 의해서
百潭寺로 쫓겨갔고 한 사람이 證人으로 나와
있고 한 사람이 現職大統領에 지금 있음

니다. 바로 證人은 現職 國會議員입니다. 證人
이 現職 國會議員에 나오기 위해서 大邱에서
어떤 宣傳을 했는가를 本委員이 알아보았습
니다. 이것이 證人이 大邱에서 뿌린 有權者
들에게 뿌린 選舉「팜플렛」입니다. 그 중에
光州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마디로 軍은 훌륭
했다 나는 물러가지만 軍이 나쁘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軍을 보호하겠다 軍은 최선을
다했다 現場에는 안 가 보았지만 特戰司令官
으로서 旅團長 大隊長의 報告를 받았는데 過
剩鎮壓은 없었다고 한다 釜山 馬山 서울「메
모」때도 鎮壓에 나섰었다 光州에만 유난스럽
게 한 것은 아니다 釜山에도 가서 市民들을
무자비하게 毆打한 사실이 있었지요 바로 이
런 句節도 있습니다. 戒嚴軍은 M16小銃밖에
携帶하지 않았다 그런데 M16으로 숨진 사람
은 40名뿐이다 나머지는 武器 車輛을 奪取한
不良輩들에 의해 일어났다 自動車를 奪取하여
자기들끼리 갈가기도 하고 戒嚴軍을 향해 돌
진 死傷者를 냈다 과연 이것이 지금 聽聞會
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하고 일치하고 있
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것
이 證人이 選舉「팜플렛」에서 光州에서 받은
勳章이 여기있습니다. 證人이 그 동안 받은
勳章의 寫眞입니다. 이것이... 이 여러개의
勳章중에서 어느 것이 光州에서 받은 忠武武
功勳章寫眞입니까? 보십시오. 이중에서 어느
것입니까?

○證人 鄭鎬溶 잘 안 보입니다.

○李海瓊委員 그 勳章말에 鄭鎬溶 그는 훗날
가장 존경받는 軍人으로 歷史에 記錄될 것
이다 지금 歷史에 記錄되고 있습니다. 政治
란 무엇인가? 政治란 國民이 願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國民들이 光州市民들을
그렇게 虐殺하기를 願했습니까? 鄭鎬溶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歷史의 轉換期에서
만약에 鄭鎬溶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光州市民의 虐殺도 없었고 우리 社會는 평온
했고 5共非理와 같은 처참한 歷史의 惡循環
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隸下部隊가 證
人의 隸下部隊가 光州에서 한 蠻行의 寫眞
한 장입니다.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랬지요. 제가 說明을 해 드리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것 說明할 것 없이 이리

주세요. 제가 가까운데서 볼테니까요. 이리 주세요.

○李海瓚委員 제가 說明을 드리고서 드리겠습니다. 屍身을 이렇게 모아놓고 죽은 屍體들을 모아놓고 얼룩무늬의 空輸部隊들이 寫眞記念撮影을 했습니다. 여기 웃는 얼굴은 차마 보일 수가 없어 가지고 그어서 雜誌에 報道를 했습니다. 그래 國民들을 이렇게 虐殺하고 記念撮影을 하는 그것이 國民의 軍隊입니까? 이것이 한 마디로 軍人は 光州에서 활동했습니까? 證人! 證人は 오늘 午前부터 이제까지 아주 당당하게 유연하게 유창한 말로 弄辯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證人は 光州에서 勳章을 받은 사실을 8年동안 숨겨왔고 光州市民에 대해서 나에게 왜 책임을 묻느냐고 당당하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聽聞會 과정에서 證人の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CAC狀況室 한구덩이에 空輸旅團의 指揮本部를 설치했지요? 그것은 앞에서 證人이 證言했습니다.

그 다음에 増派된 3旅團 11旅團의 旅團指揮本部도 거기에 설치할 했습니다.

그리고 特戰司 戒嚴司令部 報告 狀況日誌 여기에 보면 特戰司가 戒嚴狀況에 관련하여 별도의 報告를 하고 있습니다. 2軍과는 별도로... 特戰司의 金少領이라는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2軍과는 별도의 報告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特戰司가 가져간 裝備를 보면 U-87이라고 하는 「모르스」부호를 사용하는 無電機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無電機는 언제든지 特戰司令部와 수시로 交信할 수 있는 無電機입니다. 그리고 바로 證人이 25日 서울에 가발을 구하러 全斗煥 保安司令官을 만나러 올라 왔다고 그랬습니다. 全斗煥 保安司令官이 가발장사합니까? 保安司의 어느 部隊가 가발을 취급합니까?

바로 편의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證人이 서울에 구하러 올라 왔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現地에서 指揮體系가 二元化되고 있다 라는 것의 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31師團에 配屬을 시키고도 별도의 報告를 하고 있고 31師에 配屬을 시키고도 31師에도 狀況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狀況室을 이용하지 않

고 CAC司令部에서 狀況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作戰指示를 하고 있고 特戰司令部와 바로 交信할 수 있는 無電機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고 곧이어서 나올 尹興禎證人の 證言에 의하면 한번도 11空輸라든가 3空輸라든가 20師團의 増派를 CAC司令部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證人は 18日 점심직후에 金在命 陸軍本部 作戰參謀長으로부터 3空輸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11空輸로 교체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랬습니다.

證人! 18日 狀況은 午後 國防部에서 提出한 資料에 의하면 午後 4時부터 狀況이 展開되었습니다. 午後 4時부터 展開가 되었는데 점심직후에 그런 部隊를 가지고 내려 가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별도의 指揮體系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몇가지 점의 情狀을 들어 볼 때 證人の 지금까지의 證言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證人は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證人の 意見을 좀 말해 보십시오.

○證人 鄭鎭洛 예. 저의 기억은 제가 內亂에 참가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한번도 內亂은 한 일도 없고 다음에 U-87을 가지고 간... U-87은 그것은 部隊裝備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無電機는 그 無電機가 編制裝備인데 그것을 두고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것은 혼련을 나가든지 어디에 나가든지 그것은 의례껏 들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性能上 「모르스」부호에... 우리가 CW通信이라고 합니까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旅團本部를 어떻게 해서 31師團內에 둘 수가 있습니까? 31師團에 配屬된 것도 아닌데 旅團은...

그러나 그 CAC에는 거기에 作戰中隊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는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旅團의 本部들은 아마 現場에 차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1旅團이라든가 3旅團같은 것은 다음에 光州問題가 진짜 심각하게 된것이 18日 午後 4時 이후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陸軍本部에서 판단하기에 달렸습니다. 제가 더 増派를 시키

했다고 한 일은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한번도 없고 또 제가 또 20師團을 내려가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位置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가지로 이렇게 추측이나 이것은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제 말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다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 事態를 이제 하나하나 더 상세하게 現場에서 조명이 되고 할때니 그때 다 參考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그렇게 하겠읍니다.

○證人 鄭鎬溶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는 하나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李海瓚委員 예. 證人의 證言을 일단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몇가지를 더 확인하겠읍니다.

3空輸旅團은 證人의 隸下部隊 旅團이죠?

崔 雄將軍이 旅團長이죠?

○證人 鄭鎬溶 아닙니다. 崔世昌將軍이 旅團長입니다.

○李海瓚委員 11空輸旅團長?

○證人 鄭鎬溶 예. 崔 雄將軍이 旅團長입니다.

○李海瓚委員 崔 雄將軍이 지금 어느 나라의 大使를 하고있죠?

○證人 鄭鎬溶 예.

○李海瓚委員 그 分의 證言에 의하면 20日 午後 戰敎司에서 作戰指揮에 관한 會議가 下午 6時頃에 있었다고 그러합니다. 그 會議에서 自衛를 위한 發砲를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證人 鄭鎬溶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李海瓚委員 이런 사실은 報告는 들으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런 具體的인 會議가 있다 없다 하는 報告는 못들었고 제가 22日 내려가니까 自衛權 發動의 指示가 있었다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

○李海瓚委員 戰鬪詳報를 만들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 자리에 旅團長들은 다 모였죠?

○證人 鄭鎬溶 제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證言을 합니까?

○李海瓚委員 몰라요?

이 상황이 끝나고나서 光州狀況이 끝나고나

서 戰鬪詳報를 만든 사실은 있죠?

○證人 鄭鎬溶 그 戰鬪詳報는 그것은 司令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旅團의 參謀들이 만듭니다.

○李海瓚委員 됐읍니다.

바로 이 자리에 지금 證人은 參席하지 않았다 라고 證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證人으로 나올 것입니다. 崔 雄將軍은 證人이 參席했다 라고 證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證人 鄭鎬溶 저는 한번도 그런 얘기 들어 본 일이 없어요.

○李海瓚委員 11空輸旅團의 參謀長인 양대인씨를 아시죠? 그 分의 證言에 의하면 24日 孝村驛부근에서 空輸旅團하고 戰敎司 兵力하고 오인해서 交戰한 사실이 있죠?

○證人 鄭鎬溶 예.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 交戰狀況 얘기를 듣고 證人이 崔 雄旅團長을 불러서 現場에 나가보도록 提示한 사실이 있지요?

○證人 鄭鎬溶 그 기억은 없읍니다마는 제가 직접 現場에 나갔읍니다.

○李海瓚委員 직접 나갔읍니까?

○證人 鄭鎬溶 예.

○李海瓚委員 누구누구가 나갔읍니까?

○證人 鄭鎬溶 그때 아마 7旅團長하고 11旅團長하고 그렇게 나갔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李海瓚委員 그것도 作戰問題가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나가신 것이죠?

○證人 鄭鎬溶 물론이죠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나가 봐야죠.

○李海瓚委員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 戰鬪敎育司令官의 指揮統制를 받고 있었더라면 이런 部隊가 매복해서 서로 어디 있는지 흔히 알 수가 있을 텐데 바로 作戰指揮體系가 2元化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部隊끼리 오인이 發生한 것입니다.

두번이나 發生을 했죠? 이 외에도 또 한번 있지요? 그래서 12名의 兵士가 그렇게 죽어갔읍니다. 개죽음을 한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저 李委員님! 말이죠.

○李海瓚委員 指揮官들의 이런 잘못된 판단 잘못된 作戰指揮 이것이 수많은 兵士와 수많은 市民을 무고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李委員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라면요……

○李海瓚委員 바로 光州市民만이 희생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죽어가고 다치고 팔부러지고 다리병신된 그 軍人들도 사실은 少數軍部政權의 희생자인 것입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電話를 했습니다. 아침에 出動하려고 하는데 電話를 해서 당신이 불안하다고 그 真相을 밝히겠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負傷兵이라고 그러길래 여보시요! 당신도 참 가련한 희생자입니다. 이 真相이 규명이 되어야 당신의 팔다리를 잘라간 根本原因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낼 수 있다고 그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밝히겠다고 그랬습니다.

證人! 證人이 데리고 있던 部下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희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지금 말씀은 11旅團의 移動命令은 제가 내리고 戰敎司 步兵學校敎徒隊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敎徒隊의 作戰命令은 戰敎司에서 내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진짜 2元指揮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도 11旅團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라고 指揮해 본 일이 없고 命令을 내려본 일이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자꾸 사실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李海瓚委員 됐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전부다 상세하게 調査를 해주사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그것은 나중에 차후 調査過程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그리고 거기 現場에 나간 것은……

○李海瓚委員 되었습니다.

○證人 鄭鎬溶 들어 보십시오.

○李海瓚委員 그 정도의 答辯으로 本委員의 質問에는 충분합니다. 다음 한가지 마지막 質問을 하겠습니다.

證人께서는 現場에서 指揮를 안했다라고 줄곧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련의 資料를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31師團長은 이미 20日 午後부터 아니 아무

리 양보해도 21日 午前부터는 作戰에 대한 指揮權을 거의 박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戰敎司 參謀長도 證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尹興禎 당시 戰敎司司令官은 22日 10時에 遞信部長官으로 起用인지 차출인지 뽑아져 울려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蘇俊烈少將은 당시 21日午後 5時에 現地에 도착 합니다.

따라서 現地狀況을 18日부터 27日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證人하고 31師團長하고 두사람이었습니다. 尹興禎將軍은 뒤의 狀況을 몰랐고 蘇俊烈少將은 앞의 狀況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光州에서 얼마나 作戰指揮權을 행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部隊를 配屬을 받아서 그리고 31師團長은 指揮權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 狀況을 앞뒤를 全般的으로 알고 自己 隸下部隊였던 것을 指揮한 책임은 바로 證人에게 있고 그 功過로 인해서 忠武武功勳章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고 訊問者가 의견을 얘기한 것이니까 答辯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訊問者가 答辯을 요구하지 않고 정리한 것입니다. 의견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후에 하세요.

20分안대 民主黨에서 적지않게 時間이 초과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張石和委員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分을 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證人에게 單問單答式으로 묻겠습니다.

그동안 證人의 答辯에 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證人은 光州抗爭에 관해서 道義的 責任을 느낀다고 그랬지요?

○證人 鄭鎬溶 예.

○張石和委員 그러면 光州抗爭에서 發砲의 法的 責任者는 누구라고 보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自衛權發動을 指示한 사람입니다.

○張石和委員 누구입니까? 그것이……

○證人 鄭鎬溶 現場에 있어서 現場에 있었을 것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는 戒嚴司令官이 그것을 하달한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現場指揮官하고 戒嚴司令官이 法的 責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證人 鄭鎬溶 張委員께서는 法律을 잘 아실 텐데 그것을 몰라서 저한테 물으십니까?

○張石和委員 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에 證人은 道義的 責任만 느낀다고 했는데 또 이 자리에 證人으로 선 것도 全斗煥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證言臺에 섰다 이렇게 證言 하셨는데 證人의 道義的 책임으로 보아서도 또한 國民으로 부터 光州抗爭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鄭鎬溶 물론입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光州抗爭이후에 「하와이」에 간 일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간 기억이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렇다면 물겠습니다.

최근 本委員에게 「하와이」에서 온 한 僑民이 提報를 했습니다.

저기에 따르면 證人이 그 당시 「하와이」에 와서 韓國放送에서 肉聲으로 녹음을 하면서 光州抗爭에서의 發射命令은 證人 自身이 했다고 하고 放送을 한 것을 많은 僑民들이 들었다고 하고 또 그 녹음「테이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證人이 이 사실을 否定합니까?

○證人 鄭鎬溶 아마 그것은 누가 가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나중에 녹음「테이프」를 제시하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녹음「테이프」를 제시해도 좋은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張石和委員 가짜인지 아닌지는 그 당시 녹음「테이프」鑑定申請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戰敎司令官에게 이 作戰에 관해서 諮問하고 助言하고 도와주었다고 했지요?

○證人 鄭鎬溶 필요할 때 의논상대가 되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렇다면 이 戰敎司令官이 光州抗爭에 관해서 指揮責任이 일단은 있다고 보지요.

○證人 鄭鎬溶 張委員께서 그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指揮責任이 있겠지요.

○張石和委員 당연히 法的으로 指揮責任이 있다고 證人이 是認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法的 指揮責任이 있는 戰敎司令官에게 諮問하고 助言하고 도와주었던 것이 이것이 傍助犯 教唆犯 내지는 共犯이 되는 것입니다.

證人! 그것을 아십니까?

○證人 鄭鎬溶 무슨 犯罪을 저질렀습니까?

○張石和委員 아니 證人이 是認하시기를 戰敎司令官이 光州抗爭에 관해서 法的인 책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是認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作戰에 관해서 諮問하고 助言하고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證人 鄭鎬溶 全南北地域에 있어서의 戒嚴司令官이었었고…

○張石和委員 그 밑에 戰敎司令官이 있었지요?

○證人 鄭鎬溶 아니지요. 바로 그 분이 戰敎司令官입니다.

그래서 全南北地域에 대한 戒嚴業務는 어디까지나 指揮責任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蘇俊烈將軍은 아시다시피 全南北地域 戒嚴分所長이기 때문에 全南 全北을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全南地域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은 31鄉土師團長입니다. 그래서 31鄉土師團長은 삶든 종든간에 光州市 및 全南地域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法的으로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全北地域은 35師團長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張石和委員 됐습니다.

證人이 戰敎司令官에게 法的인 책임이 있다고 是認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戰敎司令官에 대해서 諮問하고 助言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證人이 그 法的責任에 대한 教唆犯 傍助犯 共犯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證人이 是認 안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月27日날 鎮壓作戰은 누가 指示했습니까?

○證人 鄭鎬溶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證人이 忠武武功勳章을 部隊員들의 功績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證人이 비유하기를 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딸의 功勞로 證人이 勳章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딸과 證人인 아버지와 生死를 같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딸의 功勞라면 아버지의 功勞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딸과 아버지가 같이 勳章을 光州抗爭의 鎮壓功勞를 세웠기 때문에 이와같은 勳章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戰敎司令官을 證人이 作戰에 諮問하고 助言하고 도와주기 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鎮壓作戰에 證人이 關여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證人이 勳章을 받은거지요?

○證人 鄭鎬溶 글썽요. 勳章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部隊가 참가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위에 있는 指揮官도 참가했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指揮官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部隊의 功勞에 따라서 그 指揮官의 勝敗도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光州事態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 特戰司令官이 約 6個月이 되었을 때 입니다. 그 간에 指揮官에게 勳・表彰을 준다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일정 시간동안의 業績 등등을 평가해서 주는 것이지 兵士들처럼 어느 하나의 「케이스」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시간이 없습니다.

單問單答式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단히 答辯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번째 證人이 光州抗爭 현장에 나간 것은 矯導所에만 갔다고 그랬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5月24日 오후 2時경에 證人의 隷下部隊인 11旅團과 步兵學校가 우발적으로 충돌해서 死傷者가 發生한 현장에 갔었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안 했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事故 현장이니까 部隊 방문의 개념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事故 현장에 간것은 틀림없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제가 指揮部나 旅團本部에 간 것은 결국은 矯導所하고 指揮所 그 狀況室에 있는...

○張石和委員 그러면 그것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하셔야겠지요.

좋습니다.

일곱번째 아까 12·12事態 關聯者들은 不法한 行爲를...

○證人 鄭鎬溶 그렇다면 또 말씀을 할 것이 있습니다. 統合病院에도 갔읍니다. 患者慰問하러 혹시 그것도 얘기 안 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張石和委員 됐읍니다. 다 말씀하셔야지요. 12·12事態 關聯者들이 不法한 行爲를 했다고 했는데 證人이 證人의 部下를 不問에 부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證人이 나중에 大統領의 추후 裁可가 났기 때문에 안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行爲時 法에 의해서 行爲時에 不法 行爲가 됐으면 大統領의 裁可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處罰해야 됩니다.

證人이 處罰 안했다고 하는 것은 證人의 職務遺棄입니다.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大統領께서 그 후에 追認을 하셨고...

○張石和委員 追認을 하셔도 나중에 追認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 行爲는 어디까지나 不法行爲입니다.

그것은 證人이 職務遺棄를 한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예. 알겠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5月17일에 있었던 全軍主要指揮官會議에서 國防은 內憂外患에 관한것이다. 지금은 內患의 時代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기억이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제가 證人이 10月23日字 週刊朝鮮 조남준記者와 「인터뷰」한 내용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證人의 陳述입니다.

여러 階層의 國民들이 참여하는 非常對策機構라도 만들어 國民들의 의사를 代辯하자는 뜻의 發言을 했습니다. 證人이 그렇게 陳述했어요. 사실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때 그러한 것이 記錄이 나왔는데 사실이냐고 그래서 8年前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러나 이런 것이 公式記錄이라면 나는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記者들이

그러면 인정하는 前提下에서 얘기를 합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非常對策會議로 되어 있고 또 이쪽은 非常對策機構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非常對策機構라는 그런 것을 저보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아마 무슨 學國內閣이나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國保委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또 그런 機構가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좋아요.

○證人 鄭鎬溶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제가 5월17日 主要指揮官會議를 하는데 저보고 國保委를 제안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연 그런 일이 없고 44名의 證人이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全斗煥司令官이 軍의 序列上으로는 비록 낮은 위치였지만 實力者였다. 이렇게 陳述한 바가 있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당시 全斗煥司令官이 實力者인 것은 證人이 是認했지요?

○證人 鄭鎬溶 예. 是認합니다.

○張石和委員 예. 좋습니다. 是認했구만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國會解散問題 얘기가 나왔읍니까?

○證人 鄭鎬溶 예. 전혀 論議한 바가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렇습니까?

또한 지난 88年5월에 月刊京郷 이태원記者와 이와같이 「인터뷰」한 일이 있지요?

○證人 鄭鎬溶 記者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張石和委員 예.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證人이 “戒嚴令下의 軍作戰에 問責이니 處罰이니를 들고 나오는 것은 言語道斷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張石和委員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까?

○證人 鄭鎬溶 아니 그 앞뒤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張石和委員 時間이 없어서 그렇니다.

戒嚴令下의 軍作戰에 問責이니 處罰이니를

들고 나온 것은 言語道斷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요. 그렇게 딱 대서 물으면 제가 錄音器도 아니고 어떻게 記憶을 합니까? 그 앞뒤 文脈을 보면 제가 이해를 하겠읍니다.

○張石和委員 잘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事態가 악화되자 發砲與否를 묻는 急電이 날아와서 나는 指揮系統 안에 서 있지 않았지만 절대 發砲不可命令을 내렸읍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 저하고 「인터뷰」한 記事입니까? 그것은 記者가 마음대로 쓴 것입니까?

○張石和委員 「인터뷰」한 記事입니다.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證人 鄭鎬溶 그러면 어디 한번 보십시오.

○張石和委員 時間이 없는데... 이것 88年5월에 여기 다 했는데...

○證人 鄭鎬溶 제 寫眞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인터뷰」한 것입니까?

○張石和委員 여기 보여 드리세요.

○證人 鄭鎬溶 제 寫眞이야 어디가서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것 보세요. 빨리 좀 보고 돌려주세요. 물어야 되니까... 時間이 지금 얼마 안남았읍니다. 그것 대충 아시지요?

○證人 鄭鎬溶 이것은 「인터뷰」한 記事가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이태원記者가 虛僞로 이와같은 글을 썼다는 것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소리 한 일은 전연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

세번째 “銃劍으로 國法秩序를 違反한 것은 叛亂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한 일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張石和委員 전연 없습니까?

또 네번째 法統으로 본다면...

○證人 鄭鎬溶 張委員 말이지요. 그것은 記者가 마음대로 쓴 것을 가지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 記者를 불러서 좀 물어보십시오. 그 記者한테...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태

원記者를 證人으로 申請하지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證人은 無條件 모른다고 하니깐 이것이 지금...

○證人 鄭鎬溶 언제 무조건 모른다고 했습니까?

○張石和委員 「인터뷰」까지 했는데 전연 「인터뷰」한 일이 없다고 하니깐 제가 답답해서 지금 다시 묻는 것입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니까 그것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張石和委員 다시한번 證人 申請하겠습니다. 제가.....

證人이 오늘 證言을 하는 것을 보면 證言의 내용이 상당히 성실하지 못합니다.

대충 제가 綜合하건대 80年度 12月 13日에 特戰司令官에 全斗煥씨의 功勞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5·18光州抗爭에서 어떠한 功勞를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光州抗爭에 證人이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參與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證人 鄭鎬溶 그런 것은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光州市民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 제가 있습니다.

왜 찢었니? 왜 쏘았니? 어디로 데려갔니? 이 세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證人! 光州市民들의 의문점 중에 왜 찢었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證人의 隸下部隊인 7空輸旅團 11空輸旅團 3空輸旅團이 단단한 진압봉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大檢으로 찢은 희생자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證人은 알고 있지요?

○證人 鄭鎬溶 모릅니다.

○張石和委員 그것은 戒嚴司도 그 당시 6月6日 다 發表했는데... 28名 打撲傷 刺傷으로 死亡했다고... 그것, 모르십니까?

○證人 鄭鎬溶 여기에 통계 숫자가 있는데요...

○張石和委員 모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空輸部隊員들은 도대체 왜 5月18日 투입 초기부터 것처럼 잔인하게 악랄한 수법으로 진압봉으로 구타하고 군화발로 짓밟고 大檢으로 찢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現場에 없어서요.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現場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것은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의 隸下部隊에서 다 거기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직접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證人이 報告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모른다고 잡아 베십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요 저는 그러한 報告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張石和委員 報告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鄭鎬溶 그래서 現場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것은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市民들이 提起하는 두번째 의문, 왜 쏘았니? 이 문제입니다.

證人은 光州抗爭 당시에 제일 처음 發砲가 언제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현재 기록에 의하면 21日 道廳 앞에서 13時30分에 최초로 多數에 의한 威脅射擊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威脅射擊입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空輸部隊의 경우는 이와 같이 대낮에 非武裝市民들에게 集團發砲를 해도 좋다고 教育을 시켰습니까?

○證人 鄭鎬溶 威脅射擊이라는 것은 殺傷의 目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정말 그러한 威脅射擊을 하지 않고서는 극히 위급할 때 그러한 威脅射擊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非武裝市民들에게 集團發砲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듣기에는 그 때 이미 一部 시위대는 武裝을 하고 戒嚴軍에다가 射擊을 가했다는 報告를 듣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와 같은 報告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證人 鄭鎬溶 물론 事後입니다마는 그 現場에 있던 大隊長들이 다 서한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大隊長들을 여기에다가 召還해서 그 現場의 事態를 생생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張石和委員 그 당시 現場에 있었던 金宗培

證人이 지난 번에 나와서 證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연 市民들이 武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에 그 武裝軍人들을 물리
치기 위해서 「버스」 한臺 들었습니다. 거
기에다가 武裝軍人들이 發砲를 한 것입니다.
먼저 武裝軍人들이 發砲했습니다.

金宗培證人이 그렇게 분명히 證言했습니다.

證人! 그것 모르십니까?

○證人 鄭鎬溶 그러면 金宗培證人만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大隊長 얘기도 들어봐도 해
로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金
宗培證人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쪽의 大隊長은 또 그렇게 金宗培證人이 안
본 것도 보았는 사실이 있을 테니까... 그
래서 이렇게 흑백을 밝히기 위해서 진실을
찾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聽聞會가...

○張石和委員 金宗培證人의 證言에 따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軍人이 잘못 發砲한
것이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金宗培證人
말 대로라면요.

○委員長 文東煥 終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時間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張石和委員 사실을 밝혀 보십시오.

또 세번째로 光州市民들이 제기하는 疑問은
어디로 데려갔나? 도대체 이 屍體들을 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整理하겠습니다.

그리고 證人은 어디로 데려갔니? 하는 本
委員의 質問에 證人은 答辯을 거부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時間이 많이 지났어요.

○張石和委員 제가 整理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證人은 오늘 國民들을 많이 속이고 있습
니다. 어떤 면에서 속이나? 그 동안 證人
은 忠武武功勳章을 받은 사실을 숨겨왔습
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證人은 國民을 속
였습니다. 이와같이 國民을 속인 것은.....

○證人 鄭鎬溶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번도 武功勳章을 받았다 하는 것을
숨긴 일이 없고 忠武武功勳章을 받았다는 것
을 숨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勳章 탔다고 보는 사람마다 그러면 내가 무
슨 勳章 탔다 무슨 勳章을 탔다 그래야 됩니까?

○張石和委員 그 勳章얘기는 報告가 나오자

證人이 여기 와서 시작한 것입니다.

證人이 國民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文東煥 張委員! 이제 그만큼 해
두세요.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7時5분에 續開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56分 會議中止)

(19時13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기에 會議를 續
開하겠습니다.

그러면 民主正義黨의 李敏燮委員 20分 訊問
해 주십시오.

○李敏燮委員 李敏燮委員입니다.

시간은 저희가 8分 더 남았기 때문에 그것
까지 필요하면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장 아침부터 열네분의 委員들이 鄭
鎬溶證人을 상대로 당시 光州狀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진실을 추구하고자 묻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결론부터 내려놓고 여기서
저기에 강요하는 듯한 이러한 答辯을 요구하
거나 또 答辯을 마다 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마치 여기가 真相을 추적하는 곳이
아니라 政治宣傳場과 같이 되는 이러한 상황
을 볼 때 정말로 우리 特委를 기대하고 있
는 이 國民들에게 정말로 저는 죄송한 마음
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訊問에 들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가만히 있어요. 얘기 다 해놓고 우리가 좀
얘기하는데 무슨...

質問에 앞서서 한두 가지를 분명히 지적하
고 質問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國家元首를 모독
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本
聽聞會 特委活動의 과정에서 나오고 있음을 심
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바로 제 옆에 앉아계십
니다마는 李海瓚委員께서 發言하는 과정에서
80年5月 당시 國會 封鎖問題와 관련해서 首
都警備司 隸下에 33師團兵力이 이 봉쇄를 함
으로써 內亂에 관여되었다 하는 發言을 했습
니다.

이것을 확인한 결과 명백히 首都警備司 傘
下가 아니고 그 당시 首都軍團 隸下의 部隊
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련없는 部隊과 관

런해서 現職 國家元首를 모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委員長이 真相을 확인하고 분명히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文東煥委員長, 辛基夏幹事와 司會交代)

그 다음 방금 市民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本特委가 규명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李海瓚委員長께서 제시한 당시 空輸部隊가 市民을 射殺하고 기념촬영을 했다는 이 사진에 대해서 80年 당시에 空輸部隊員은 防彈服 등 實戰服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여름 服裝에 簡素服차림입니다. 저도 방금 옆에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자신은 67年 金新朝가 오기 전에 莞島의 對間諜事件이 있었던바 莞島作戰後 犯人射殺後 찍은 것이 아닌가 또 그러한 것으로 안다 하는 이러한 제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진은 本 特別委員會가 이 시간에 정식으로 증거로 채택해서 우리가 真相을 규명해줄 것을 委員長한테 정식 動議합니다.

○李海瓚委員 잠깐만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내 發言중이에요. 나중에 끝나거든 하세요.

○委員長代理 辛基夏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訊問時間이 되기 때문에 訊問을 해주시고 議事進行發言은 다음에 필요가 있으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래서 이상과같은 두가지점에 대해서 委員長이 政派를 초월해서 정말로 엄격한 中立的 입장에서 중대한 문제니만큼 소명하고 응분의 조치가 있도록 해줄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鄭鎬溶證人께서는 아침부터 나와서 많은 반복되는 質問에 대한 答辯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촛점이 모아지고 또 이미 모든 真相이 거의 부각되고 있는 점은 두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로는 과연 그 당시에 證人께서 光州를 왕래하면서 作戰指揮權을 행사했는가 또 그 作戰指揮權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發砲의 경위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모든 焦點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 당시에 戒嚴軍을 光州에다가 事前配置해서 또 意圖적으로 光州市民을 자극해서 그러한 상황의 악화를 통해서 어떠한 執權의 음모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두가지 점에 대해서 모든 焦點이 모아지고 어느 정도 사실이 부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은 우리 國民이 내릴 것으로 저는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또 副次的으로 光州真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12·12에 있어서 證人의 역할이 어땠던가 하는 데도 많은 공세가 있고 여러가지 身上的 개인에 관한 많은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두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잠깐 아직까지 거론이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묻고 또 아직 여과되지 않은 점을 간출하게 質問하고자 합니다.

먼저 5月17日 全北에 있던 7旅團 그 地域은 軍事機密이 돼서 밝히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旅團의 將兵들이 갑자기 出動命令을 받았습니다. 光州로 내려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당시의 月刊朝鮮 지난 7月號를 보면은 35大隊 大尉 朴아무개 이 사람은 바둑판하고 배구공을 쟁거가지고 現地로 이렇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은 당시 이 7旅團이 出動하면서 과연 事前에 光州에 관한 어떤 作戰指針을 隸下部隊까지는 下達하지 않고 移動을 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통상 部隊移動을 할 때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彈藥도 가져가고 또 기타 필요한 裝備도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光州로 移動하는 將兵들도 軍이 나가면은 별일 없겠지 그래서 學校에 駐屯해서 거기에서 教育訓練도 받고 또 휴식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구공을 알다시피 저희들 軍隊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배구를 시키고 또 식사후라든가 일과후에는 將兵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기나 바둑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措置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아울러서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李敏斐委員 그러면은 隷下部隊의 將兵들이나 一線將校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旅團長이나 또 大隊長 이러한 사람들은 光州로 移動될 때에 거기의 상황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作戰을 해야 된다는가 하는 그런 事前知識도 없이 現地로 가는 것이지요?

○證人 鄭鎬溶 저는 시간이 급해서 7旅團은 移動前에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떠한 指針이나 作戰概念을 얘기해 본 일도 없고 다만 그것은 2軍에서 어디로 가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陸軍本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어디의 우리 部隊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2軍指示에 의거해서... 왜냐 일단 2軍의 作戰統制下에 들어갔으니까 그 部隊을 어디로 보낸다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2軍司令官의 概念에 의거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李敏斐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러나 그때 지휘들이 생각하기는 5·17 擴大戒嚴으로써 유난히 光州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事態가 나라라고는 아무도 아마 상상도 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전혀 이러한 事態가 나라라고는 상상도 안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將兵들도 의예것 戒嚴이니까 또 學生들 시위가 있으니까 또 근원지가 되는 學校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學生들 의논할 때도 없고 하니까 學生示威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敏斐委員 그러니까 出動할 당시만 해도 거기 土兵이나 또 指揮官이나 이런데 어떤 강력 鎮壓이다 또 이런 事態를 악화시킬만한 그러한 여러가지 강력한 행동 또는 충돌 이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별다른 指示없이 내려갔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部隊가 아까 말씀으로 이게 軍의 用語로 생각하는데 逐次的으로 17日날은 7旅團이 내려가고 다음 18日에는 11旅團이 또 19日에는 3旅團이 현지로 가고 또 그 다음에 20師團이 내려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는데 이것은 역시 그 당시에 상황을 예기치를 못했다가 점차적으로 사태가 확대됨으로써 취해진 그러한 조치로써 이해를 하면 되

는 것입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李敏斐委員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렇게 逐次的으로 하기 보다는 일시에 신속히 部隊를 배속함으로써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지 않고 미연에 회생을 줄이면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당시에 현지에서 만약 지휘를 하셨다면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지난 입장입니다마는...

○證人 鄭鎬溶 陸軍本部에서 部隊活用計劃을 수립을 할 때 저는 거기에 없었고 상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陸軍本部에서는 대략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서울에는 이만한 兵力이 있어야 될 것이다. 또 光州는 이만한 兵力들이면 충분할 것이다. 또 可用한 兵力이 얼마나 되는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래서 최초 할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울은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잠잠하고 光州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逐次的으로 계속해서 거기다가 兵力을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李敏斐委員 예. 알겠습니다.

당시 光州에서 초기상황에서 가장 민감하게 또 市民들을 자극했던 것이 流言蜚語中の 하나가 慶尙道 軍人이 全羅道에 와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그 空輸團에 慶尙道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현지에 내려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진압을 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空輸團의 편성 내지는 구성과 그 당시 33 35大隊의 구성에 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지역별로라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지금 大韓民國 國軍內에 慶尙道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뭐 軍部隊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다만 그 郷土師團이 어느 지방에 있는 郷土師團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비율은 차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그 당시 7空輸는 全羅北道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있는 全北 全南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他 旅團 서울에 있는 旅團이나 또는 판데 있는 旅團보다는 오히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분께서도 다 軍隊生活해 보셨으니 잘 알겠습니다마는 慶尙道軍隊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李敏燮委員 예, 알겠습니다.

당시 初期狀況에 있어서의 과연 作戰指揮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역시 郷土師團이던 31師團 師團長에게 作戰責任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鄭 雄師團長은 20日 이후에는 作戰權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 그러나 軍에서는 21日 下午 4時까지는 空輸旅團에 대한 作戰權을 행사했다 하는 그런 엇갈린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아까 證人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空輸旅團은 21日 下午 4時 이후에 다시 戰鬪敎育司令部로 환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판단과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아시는대로... 그 당시 안 제셨습니까...

○證人 鄭鎭溶 그 部隊의 作戰統制權의 해임은 戰敎司令官만이 할 수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 당시 그 3個旅團을 指揮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환원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鄭 雄師團長이 적극적인 指揮責任을 이행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환원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證人 鄭鎭溶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狀況에서 또 어떤 事態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대 그 당시 20師團이 내려와서 20師團이 거기에 가담이 되었으니까 결국 20師團長이 指揮할 수도 있고 또 3個旅團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폭이 크고 또 郷土師團은 원래 그러한 作戰을 하는 데는 指揮部나 이런 등등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指揮幅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도 戰鬪詳報에 의해서 알 뿐입니다.

21日 16時附로 指揮系統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그러나 그때 郷土師團長이 20日부터 指揮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잘 조사를 해 봐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職務遺棄가 됩니다.

○李敏燮委員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조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21日 下午 1時半 道廳앞에서의 交戰에 관한 문제입니다.

空輸旅團이 그 당시 道廳안에 兵力이 있었고 31師團兵力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관해서 확인하고 계신지요?

○證人 鄭鎭溶 최초부터 31師團과 空輸部隊가 같이 光州市內의 治安維持를 위해서 任務를 받고 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軍 發表에 의하면 그날 下午 4時에 空輸旅團의 作戰指揮權은 戰鬪敎育司令部로 환원됐다 해서 下午 1時半 현재는 作戰指揮가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道廳앞에서의 그 충돌에 있어서도 있어서도 그 作戰指揮責任은 31師團長한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證人 鄭鎭溶 그것은 당연한 판단입니다.

○李敏燮委員 그 이후에 3個旅團은 다시 戰敎司令部로 환원됐다 하더라도 鄭 雄師團長이 31師團에 대한 指揮는 계속해서 鎮壓作戰까지도 그대로 계속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鎭溶 제가 戰鬪詳報를 보니까 27日 마지막 作戰에 있어서도 31師團이 중요한 作戰部隊의 하나입니다. 그때까지 鄭 雄將軍이 31師團을 指揮한 것도 사실입니다.

○李敏燮委員 예, 저는 軍에서 士兵밖에 하지 않았습니까마는 이 指揮의 二元體系다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제 個人的으로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긴박한 狀況 시시각각 충돌이 이루어지고 희생이 나는 이러한 狀況에서 證人이 서울과 光州를 그렇게 왕래하면서 과연 직접 指揮權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證人 鄭鎭溶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李敏燮委員 이것은 證人이 당시 경험하시지

못한 狀況에 관해서 光州問題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어 보려고 그러합니다.

암매장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 朝鮮大學 뒷산에 많은 시체를 우리 兵士들이 암매장 했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市廳 청소차에 시체를 대량 실어서 어디 암매장 했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이 暗埋葬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本特委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 당시에 作戰事後에 暗埋葬問題에 관해서 部隊長이나 어디로부터 듣고 이해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證人 鄭鎬溶 저는 暗埋葬했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아마 暗埋葬과 假埋葬을 잘못알고 하는 얘기가 아닌지 屍體가 있으면 급한 상황하에서는 假埋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했다가 나중에 적절한 處理部隊가 처리를 책임진 사람한테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屍體를 길거리나 이런 데에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인정상으로도 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軍隊가 있어서는 戰鬥이 있을 때 일단은 다 假埋葬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거기다가 참말 철모를 놔둬가지고 표시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참 銃劍을 뽑아서 거기다 철모를 걸어놓고 우리 이와 같은 데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도 합니다.

그것 假埋葬입니다. 暗埋葬이라는 것은 어떠한 犯罪를 저질러 가지고 그것을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을 暗埋葬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을 잘못 어떻게 혼동사용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暗埋葬을 했으면 아직도 발표가 안되었으면... 그런데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그후 죽은 사람의 별도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暗埋葬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또 軍隊라는 것은 犯罪集團이 아닙니다. 그러니 犯罪를 일으키지도 않는 집단이 무엇때문에 사람을 暗

埋葬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李敏燮委員 그런데도 아직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고 한데 그 뒤에라도 혹시 그러한 얘기를 못들으셨다니까 그 뒤에도 못들은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證人 鄭鎬溶 저는 지금까지 暗埋葬했다는 얘기는 아무 데서도 못들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 뒤에 어디서 발견되었다거나 하는 軍 자체의 報告같은 것은 혹시 못 들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武器被奪問題에 관해서 本委員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武器被奪이 예방될 수 있었다면 그 총들이 상당히 가볍고 또 회생을 적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全南各地에 급속히 확산된 이러한 事態가 좀 더 예방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武器被奪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 部隊 作戰指揮責任者의 경우...

○證人 鄭鎬溶 통상 武器庫는 그것이 職場일 때는 職場中隊長한테... 職場長에게 일단 1次的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警察일 때는 警察派出所나 警察署에서 또 豫備軍武器庫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戒嚴下이기 때문에 결국 戒嚴下에 있어서의 全的인 책임인 그 郷土師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郷土師團長 밑으로는 거기 地域에 할당이 되어 있는 聯隊場 또 그 밑의 大隊長 이런 식으로 책임이 내려가게 됩니다.

○李敏燮委員 당시에 이것은 다음 尹興禎證人한테 물을 것입니다마는 당시 李煥性 戒嚴司令官도 自衛權發動 지시를 할때 指示文에 보면 武器被奪을 당할 경우에 그 책임은 그 책임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그것은 軍法會議에 회부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이 문제에 관해서 後續措置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被奪의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鎬溶 그 후에 무슨 軍法會議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만 그때 鄭 雄師團長이 그런 등등의 책임을 물어서 補職解任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의 調査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死亡者數라고 생각을 합니다.

8년동안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꼭 우리가 밝히는 것이 이 事態의 真相을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戒嚴當局은 死亡者를 190名으로 발표했는데 政府當局이 193名으로 지금 이렇게 集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死亡者 190名으로 이렇게 集計했던 사정을 혹시 아시는지?

○證人 鄭鎬溶 최초 戒嚴司에서 死亡者發表를 그 당시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였었고 行政力이 없어서 정확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死亡者數가 1,000名까지도 되고 2,000名까지 되는 좋은 또 하나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戒嚴司에서 그것을 그 사실을 歪曲하거나 무슨 은닉을 하거나 또는 조작할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行政狀態가 나빠서 확실하게 集計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 1次發表가 80年 5月31日 있었고 2次發表가 80年 6月5日 3次發表가 80年 7月25日 있었습니다.

이때 189名으로 發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追加의으로 發表가 없었는데 85年10월에 總理께서 國會發表할 때 189名에서 그후에 몇사람이 더 追加申告되어서 193名이라고 發表를 했습니다.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런데 今年度 7月5日 國防長官께서 190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 3名이 줄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누구 어느 젊은 사람이 자기 繼母한테 원한을 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기 繼母 자기 동생까지 자기 동생이 일곱살인가 여덟살인가 아주 어린애입니다. 까지 사살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그렇지만은 戒嚴軍에 의해서 被殺 되었다는 人員에 넣을 수는 없지만 않느냐 그렇게 해서 3名을 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래서 오늘날은 公式的으로 190名으로 集計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軍人이 23名 警察이 4名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이 死亡者問題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朝鮮大學校 民主鬭爭委員會에서는 約 2,000名 정도라고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光州問題에 관해서는 가장 광범위한 소식을 듣고 계시는 金大中 平民黨總裁께서도 昨年 12月 大統領選舉時에 白書에서 1,000名 이상 정도다 여기 本特委 證言에서 그 근거로서 글라이스틴 大使한테 이것을 들었다는 말씀을 밝혔읍니다.

또 최근 KBS 인터뷰에서는 數百名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死亡者에 관해서는 적어도 정말 그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그동안 또 어느 면에서 어떤 위압감을 느껴서 신고를 못했다 이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합해져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밝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政府가 신고받은 것 보면 死亡者 10名 行方不明者 102名 이렇게 나왔읍니다마는 역시 이런 것을 종합해 볼때 우리 證人께서는 현재 死亡者 數字를 結論的으로 모두 단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얼마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더...

○證人 鄭鎬溶 이 범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政府에서 死亡者數를 뭐 일부러 숨긴다든지 또는 造作했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李敏燮委員 오늘 긴 時間동안 우리 歷史앞에 眞實이 밝혀지고 특히 그동안 여러가지로 또 오해를 받아 오셨던 證人께서 그 입장과 그 당시의 役割이 정확히 밝혀져서 정말로 眞實이 確認되는 그런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다.

또 아울러서 또 하나 -우려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眞相이 어떤 政派의 理解에 얽매어서 眞實이 湖塗되거나 또는 가려지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깊은 우려를 하면서 저의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基夏 李敏燮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所屬 趙贊衡委員 訊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 15分 배정되어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20分으로 되어 있는데요.

○委員長代理 申基夏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趙贊衡委員 平和民主黨 趙贊衡委員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되고 있는 證人의 僞證을 듣고 지금 온 國民이 激怒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質問에 들어가겠습니다.

證人은 午前 證言에서 80年5月22日 朴忠勳國務總理가 光州에 오서가지고 戰敎司에서 싸움이 發言云云한 것을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趙贊衡委員 그런데 당시 31師團長 鄭雄將軍의 陳述에 의하면 鄭雄將軍은 證人의 싸움이 發言을 할 때 바로 맞는 편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證人의 그와 같은 發言을 들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사실은 아닙니다.

○趙贊衡委員 지금 鄭雄委員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證人 鄭鎬溶 글쎄 國會에서도 그 本會議에서도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싸움이 한다는 것이 戰敎司에서 나온 말이야! 하는 이 있음)

그 당시에는 싸움이같은 用語도 發生이 안되었을 때입니다. 싸움이가 유행한 것은 아마 最近에 그런 싸움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 光州事態 80年度에는 그런 싸움이라는 用語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常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저기가 다 全羅道 사람들이 아닙니까?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 가운데에서 제가 뭐 간이 부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全羅道사람 모조리 싸 죽여야 된다고 光州놈 싸 죽여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같은 國會議員으로서 常識에서 判斷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趙贊衡委員 예. 아니오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地域感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또 光州勃發의 原因중의 큰 原因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次後 이 점에 대해서는 鄭雄議員과 對質을 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질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5月18日 初期鎮壓에 나선 空輸部隊員들의 모습이올시다. 잘 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戰鬪服에 얼굴에는 投石防禦用防帽을 쓰고 銃을 등에다가 엮비슷하게 메고 한 손에는 大劍을 다른 한 속에는 사시미 박힌 死殺用指壓棒을 든 모습이었는데 맞습니까?

○證人 鄭鎬溶 맞지 않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런 報告를 들은 일이 없습니까?

○證人 鄭鎬溶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또한 그 空輸部隊員들은 당시 얼굴은 붉어져있었고 눈은 슬기운과 殺氣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런 作戰 중요한 任務를 遂行할 때 절대 술을 먹인다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常識바깥의 얘기입니다.

○趙贊衡委員 다음 7空輸戰鬪詳報上에 記載된 光州 作戰地域의 一般的인 특징으로 이렇게 記載되어 있습니다.

金大中追從勢力 및 極烈分子들이 光州地域學生 그리고 住民을 煽動 操縱하여 騷擾事態는 布告令에도 불구하고 光州地域에만 유난히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記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質問에 대한 答辯만 해주세요. 내용은 읽어드렸으니까……

○證人 鄭鎬溶 글쎄 제가 7空輸戰鬪詳報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一般的인 특징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趙贊衡委員 아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내

용이 맞느냐 안맞느냐만 答辯해 주시면 됩니다. 證人은...

○證人 鄭鎬溶 글썽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趙贊衡委員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맞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 어느 부분입니까?

○趙贊衡委員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다음 證人の 隷下部隊인 空輸部隊가...

○證人 鄭鎬溶 아. 여기에 있구만요.

金大中追從勢力 및 極烈分子들이 光州地域學生 및 住民을 煽動 操縱하여 騷擾事態는 布告令에도 불구하고 光州地域에서만 유난히 惡化되고 있었음... 예.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맞지요?

○證人 鄭鎬溶 예.

○趙贊衡委員 그러면 다시 조금해서 물겠습니다. 그러면 그 金大中追從勢力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이것을 作成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趙贊衡委員 證人은 잘 모르십니까? 證人은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證人 鄭鎬溶 예.

○趙贊衡委員 내용은 모르신다... 證人の 隷下部隊인 空輸部隊가 陸作命에 의거 2軍司令部에 作戰統制가 配屬되고 戰敎司를 거쳐서 31師團에 再配屬되었고 證人은 그와같은 作戰配屬이 딸이 시집가는 심정이었고 또한 證人이 光州에 간 목적은 시집간 딸이 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려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시부모나 男便이 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民間에서... 民間人에게서 그 配屬이라든가 作戰統制라든가 하는 것을 그것은 軍隊...

○趙贊衡委員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證言을 確認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證人 鄭鎬溶 예. 했습니다. 軍隊用語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래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趙贊衡委員 證人이 아까 證言한 내용이기

때문에 確認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本委員도 앞으로 質問할 때 딸이 空輸部隊라고 하고 사위는 31師團이라고 하고 시아버지는 戰敎司 다시 말해서 LAC하고 비유해서 다음 質問을 하겠습니다.

證人은 7空輸部隊가 시집간지 이틀만인 5月 20日 午前에 사돈마을 光州에 처음 내려가서 戰敎司 狀況室 및 7空輸本部 事務室에 들어가 지고 7空輸團長을 만났다고 아까 午前에 證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당시 7旅團長 崔 雄將軍은 시집가서 잘 있고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던가요?

○證人 鄭鎬溶 7旅團은 崔 雄將軍이 아니고 신우식將軍입니다.

○趙贊衡委員 예. 신우식將軍은 잘 있다고 했습니까?

○證人 鄭鎬溶 시집간 얘기는 안했고요... 시집가는 얘기는 저도 안했습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7空輸本部가 男便되는 31師團에 가있지 않고 어떻게 시아버지인 戰敎司에 가서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證人 鄭鎬溶 이것이 이제 자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습니다.

7旅團自體는 2軍에 作戰統制가 되어 있습니다. 7旅團自體는... 그렇다면 7旅團長은 2軍 作戰統制下에 있습니다. 31師團에 配屬이 된部隊는 7旅團長은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고 거기에 있는 2個 大隊 그러니까 大隊長은 31師團의 指揮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7旅團長은 7旅團의 部隊가 31師團에만 간 것이 아니고 大田에도 갔고 全州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31師團長이 어떻게 7旅團長을 指揮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되고 그것은 軍의 作命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軍隊問題가 되어서 단 이해가 안가시는 것같은데요.

○趙贊衡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戰敎司에 가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래서 7旅團長의 입장도 마

찬가지입니다.

光州에 그런 일이 있으면 7旅團長도 거기
가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趙贊衡委員 예. 좋습니다.

31師團長이던 鄭 雄將軍의 陳述에 의하면
5月20日 12時 이후부터는 空輸部隊에 대해서
사실상 作戰統制 指揮權을 剝脫 당했다고 하
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신 일 있으니까?

○證人 鄭鎬溶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趙贊衡委員 證人은 光州에 여러번 내려가
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光州에 가서 31師團에 한번이라
도 들러본 일이 있으니까?

○證人 鄭鎬溶 가본 일이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없지요?

○證人 鄭鎬溶 예.

○趙贊衡委員 당연히 제일 먼저 가보아야 할
소위 사위가 되는 作戰 統制部隊인 31師團에
는 왜 한번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證人 鄭鎬溶 31師團長을 CAC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언제 만났습니까?

○證人 鄭鎬溶 20日 만났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때 만나가지고 示威鎮壓에 대
한 論議가 있었던가요?

○證人 鄭鎬溶 무슨 鎮壓에 대해서 크게 뭐
論議한 적은 없고...

○趙贊衡委員 단 한번 만나셨지요?

○證人 鄭鎬溶 그 部隊가 거기 갔으니까 제
가 그때 CAC에 戰敎育司令部에 가니까
거기에 뭐 會議가 있어서 왔더군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고...

○趙贊衡委員 예. 좋습니다. 묻는 것만 答辯
해 주세요.

○證人 鄭鎬溶 저는 師團司令部에는 갈 필요
가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필요가 없다. 本部에는 갈 필
요가 없어서 안했다...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런 것이 아니고 딸인 空輸部
隊와 形式上 婚姻申告만 했지 실제로는 夫婦生
活을 않고 서로 別居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글썽요. 그것은 뭐 別居를
했다면 그것은 뭐 잘못이고 선량한 시어머니
나 선량한 查頓間이면 가서 딸을 만나면 남
편말 잘 들으라고 그러고 시아버님 시어머님
잘 모시라고 그러지 너 내 말만 들어라 이
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서 그런 것 한 일이 없습
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證人은 정작 가보아야 할데는 가보
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저는 그때 敎育司令部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旅團長 다 만났고 31師團長도
만났고 그러면 제가 目的達成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올라왔지요.

○趙贊衡委員 그러면 證人은 주로 空輸部隊
...

○證人 鄭鎬溶 제 생각은 現地에 사살나가
보았으면 했는데 다 그때들은 전부 다 거리
에 나가서 「데모」를 막는다고 部隊員들이 다
나가고 있으니 現地에 제가 갈 수도 없고
가 보아야 大隊長 얼굴도 못보는 형편입
니다.

그런 狀況下에서 그래서 現地에는 못가보고
司令部만 다녀왔을 뿐입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證人은 空輸部隊 本部에 있으면서 쏘아라
죽여라 하고 이렇게 空輸部隊를 직접 指揮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렇지 않습니다.

○趙贊衡委員 戰敎司 戰鬪詳報와 證人의 證言
에 의하면 公式文書上으로는 空輸部隊에 대한
31師團의 作戰統制權이 5月21日 16時 戰敎司
로 轉換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번 質問이 있었습
니다. 있었는데 왜 作戰統制權이 轉換되었는
지 與否에 대해서 尹興禎 戰敎司司令官이나
혹은 여타 空輸部隊長들로부터 報告받은 사실
이 있습니까?

○證人 鄭鎬溶 없습니다. 또 전연 議論받은
바도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이유가
31師團長이 5月19日 23時頃 空輸部隊에 師團
作戰命令 3號로 無血鎮壓命令을 함으로써 소
위 強硬鎮壓에서 穩建鎮壓으로 轉換하였는데

空輸部隊가 이에 불만을 가지고 一方的으로 作戰統制를 拒否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不可能한 얘기입니다.

○趙贊衡委員 당시 戰敎司 尹興禎司令官은 5月 22日 10時로 轉役이 되었지요?

○證人 鄭鎬溶 예, 대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尹興禎將軍이 自意에 의해서 轉役되었다고 보십니까? 他意에 의해서 轉役되었다고 보십니까?

○證人 鄭鎬溶 그때 閣僚로 들어가니까 轉役한 것 아니겠습니까?

○趙贊衡委員 그렇습니까?

證人도 알다시피 軍은 軍으로서의 頂上을 오르는 것이 軍의 理想이고 꿈이라고 봅니다.

尹將軍이 自意에 의해 入閣했다고 보십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으니... 그러나 入閣을 하려면 옷은 벗어야지요. 現役으로 入閣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趙贊衡委員 光州抗爭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기에 抗爭初期에 全般的인 狀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尹將軍을 轉役시키고 또 入閣시키는 그런 이유는那邊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것은 그 당시 指揮를 하신 李煥性將軍님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분이 결심하고 그분이 한것이니까요.

○趙贊衡委員 尹將軍이 證人の 陸士 先輩이고 또 당시 尹將軍의 鎮壓方法이 온전한 方法으로 措置한데 대해서 證人과 같은 당시의 實勢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人事措置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鄭鎬溶 蘇俊烈將軍도 저의 先輩입니다. 그리고 尹將軍도 先輩고요. 그래서 先輩니까 뭐 그런 것은 없고 또 穩健措置를 해서 불만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전연 關與한 바가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證人은 陸軍參謀總長 당시인 84年 美國에 가신 일이 있으십니까?

○證人 鄭鎬溶 84年度 몇월입니까?

○趙贊衡委員 달은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美國에 가서가지고 「워싱턴」DC에 있는 우래옥이라는 韓國食堂에서 식사를 하신 일이 있지요?

○證人 鄭鎬溶 예, 간 일이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때 수많은 僑民들이 물려와가지고 殺人魔 鄭鎬溶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抗議를 한 事實이 있다는데 事實입니까?

○證人 鄭鎬溶 수많은 僑民은 아니고요 열한 두어명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잔뜩 뭘 들고 그렇게 우래옥을 제가 그때 軍隊에서 간 留學生들 위로를 하기위해서 제가 「워싱턴」DC에 가깝게 있는 우리 軍人들을 오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大領級도 留學가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少領級도 있고 또 「워싱턴」DC의 韓國의 大使館에는 많은 또 우리 軍人이 勤務를 하고 있습니다. 武官以下... 그래서 總長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 長官이나 이런 사람이 가면 僑民들을 초청을 해서 위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僑民概念은 아닙니다마는 軍人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래 갔더니 장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때 제 婦人하고 같이 갔읍니다. 같이 갔는데 그 入國에 때려죽인다 또 殺人魔 제가 그 殺人魔이나 무슨 虐殺의 元兇이라는 소리를 한번 두번 들었읍니까?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眞實이 밝혀졌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려니까 제 앞을 딱 막습니다. 그래 제 집사람이 못내린다 그러고 저를 불드는데 제가 그랬읍니다. 이것은 제가 초청했으니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린다 그래 당신은 事態를 봐서 정 위험하거든 당신 車 타고 가라 그러고 저 혼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殺氣騰騰한 기세는 「쇼」였었던 것 같습니다. 통과하고 제 집사람도 통과하고 들어갔읍니다.

○趙贊衡委員 묻는 것만 答辯해 주십시오.

그런 事實이 있었지요?

○證人 鄭鎬溶 예,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證人은 그 당시 그런 抗議를

받고 아무 말 하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證人은 그 당시 光州抗爭에 책임을 느낀 나머지 그런 모욕을 받고도 아무 말 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까?

○證人 鄭鎬溶 누구한테 아무 말도 안합니까?

○趙贊衡委員 그 僑民들한테...

○證人 鄭鎬溶 僑民들 그 殺氣騰騰한데 저 혼자 가서 큰소리하다가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趙贊衡委員 時間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證人 鄭鎬溶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호스트」라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殺氣騰騰했어요.

○趙贊衡委員 그랬습니까?

○證人 鄭鎬溶 殺氣騰騰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먹살을 잡고 따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趙贊衡委員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證人은 全斗煥씨가 政權奪取를 위하여 벌인 叛亂劇인 소위 12·12事態에 遲刻參加한데 대한 만회의 術策과 忠誠心에 血眼이 되어가지고 光州抗爭이라는 歷史的 慘劇을 유발시킨 現場責任者로서 지금이라도 望月洞 墓所앞에 가서 謝罪하며 最後를 바쳐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현재 國民의 良心이요 輿論이라고 보는데 證人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證人 鄭鎬溶 제가 가서 謝罪하고 참 哀悼의 뜻을 표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贊成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鄭鎬溶이 보고 아부하는 놈이다 한 사람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12·12事態에 遲刻參與를 해서 그것가지고 點數를 따기 위해서... 그런 소리는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趙贊衡委員 이상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예. 趙贊衡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平和民主黨所屬 趙洪奎委員 訊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15分입니다.

○趙洪奎委員 證人께서는 지금 白潭寺 食客으로 가 계시는 全斗煥씨하고 친구되지요?

○證人 鄭鎬溶 예.

○趙洪奎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鄭鎬溶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證人은 아까 答辯中에 軍의 政治介入을 反對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證人은 물론이고 가장 친한 친구인 全斗煥씨 그리고 盧泰愚씨 그리고 그 세 사람의 直屬部下들까지 1979年 12月12日 12·12事態이후 당시 政治指導者들이던 3金씨에 대해 공공연히 비판하는 등의 政治活動을 했고 5·17以後에는 國保委라는 政治機構를 통하여 直接的인 政治活動을 했고 드디어 세친구 가운데 全斗煥씨가 먼저 7年間 大統領 그 다음 全斗煥씨로부터 指名을 받은 盧泰愚씨가 現在 大統領 지금...

(場內騷亂)

조용히 해요 지금 訊問을 한다고... 訊問! 조용히 해요. 訊問 하는데... 發言權언어서 發言해요.

(場內騷亂)

○委員長代理 辛基夏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 委員님들 조용히 하세요.

여러 委員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는 聽聞會場입니다. 혹 訊問하시는 委員님의 말이 자기 個人的 意思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訊問하시는 委員과 證人사이의 對話로서 이어져야지 訊問하시는 委員의 중간에 혹 자기 個人 委員의 意思와 反한다고 그래서 訊問過程을 중단시키는 것은 聽聞會의 本質에 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訊問이 끝나고 나서 議事進行節次가 聽聞會의 本質에 反한다든가 國會法 기타 法律에 反한다고 하면 이러한 節次를 委員長이 또 잘못 進行했다고 한다면 議事進行發言을 얻으셔서 委員長의 議事進行에 적극 協調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參酌해서 議事進行에 參考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協調해 주시고 이제 趙洪奎委員님 訊問해 주시기 바라고 訊問途中에 다른 委員에게 發言權을 드릴 수 없는 것이 法の 趣旨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趙洪奎委員님 訊問해 주세요.

○趙洪奎委員 지금 그 당시 세 強者중 마지막 남은 證人은 지금 執權與黨의 代表物望에 올라 있을 뿐 아니라 次期大統領候補감으로가

지 指目받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軍의 政治 介入을 反對한다고 한 證人의 答辯은 答辯時 間을 때우기 위한 答辯이지 솔직한 심정의 答辯이라고 評價할 수 없다는 것이 本委員의 견해입니다.

本委員은 특히 1980年 5月18일부터 恣行된 光州市民大量虐殺事件 당시 證人이 서울과 光州를 오르락 내리락할 때 서울에서 아까 證人도 인정한 당시 實力者인 全斗煥保安司令官과 어디서 만나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 세 그 當事者들이 사실대로 實吐하지 않는 한 白潭寺 부처님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우리 國會가 光州良民虐殺事件의 真相을 캐내는 데 있어 다른 부분은 어느정도 캐낼 수 있어도 最高責任者의 索出部分에 있어서는 全斗煥씨에게 最終責任이 있다는 推斷만 가능할 뿐 결국 眞實은 白潭寺 계곡에 묻혀버릴 可能性이 높다고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특히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 證人이 答辯하는 가운데 5·18光州良民虐殺 당시 어린이나 中高等學生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힘주어 말하는 대목을 듣고서 사실을 사실대로 캐내기 위해서는 이런 聽聞會정도의 방법이 아닌 더욱 강력한 調査方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證人께서 光州良民의 被害를 특히 어린 學生들의 被害아직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우선 어린 學生들의 被害만이나마 먼저 알려 드리고 訊問하고자 합니다.

바로 며칠전 光州市 教育委員會는 5·18당시 희생된 中高等學生 15名에게 來年2月 卒業式에 名譽卒業狀을 주기로 決定했습니다.

그 名單중 男女高等學生은 전영진 박성용 김명용 황호길 양창근 안종필 문재학 女高生은 박현숙 박금희 中高生들은 박기현, 김완봉 방광범君등입니다.

그분아닙니다. 당시 銃傷에 의한 負傷者의 경우 10세미만 짜리만해도 김유성 5살 유수미 10살 이희정 6살 김상진 7살 임채명 9살 김내향 5살 그밖에도 既申告되었거나 그 후 追加申告된 10세미만의 犧牲者는 여기에서 모두 列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 5·18당시 空輸特戰部隊員들이 계엄군으로 光州에 가서 天人共怒할 殺傷行爲를 자행한 사실은

이미 内外國民이 다 알뿐 아니라 바로 그 사실때문에 全斗煥씨도 謝罪하고 盧泰愚大統領이 謝罪하고 政府가 補償金까지 주겠다는 이 마당에 유독 證人만이…… 그 당시 空輸特戰部隊의 司令官인 證人만이 光州良民의 被害者 가운데 가장 가슴아프게 슬픈 사연의 被害者들인 어린 學生들이 희생된 事實自體를 모른다고 하니 證人으로부터 과연 어떤 사실을 캐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제 스스로 의심하면서 지금 이 시간 光州市民들이 그 동안 쌓이고 쌓였지만 참고 참아온 울분과 원한이 또다시 온 몸에 치밀어 올라서 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까닭에 지금 저의 심경은 證人을 相對로 訊問을 하느니 차라리 冊床을 치면서 痛哭이나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證人께서는 5月21日 새벽에 空輸特戰部隊員을 光州市內에서 빼냈으면 犧牲者가 적게 났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證人이 指揮權을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措置했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證人! 證人은 指揮權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軍의 指揮體系上 形式的要件일뿐 당시 最高實力者인 全斗煥씨의 親舊로서 自他가 公認하지않을 수없는 實勢중 實勢이고 또 그때 판국이 5·17로 「쿠데타」를 하는 판국에 證人의 隸下部隊인 空輸特戰部隊는 문자그대로 特殊戰鬪部隊로서 그 가운데에서도 釜馬事態를 鎮壓한 功績이 있는 部隊를 光州에 投入했을 때 그 部隊員들 특히 指揮官들이 곧 原隊復歸할 그 部隊員의 司令官이 現地에 내려와 있을 때 그 司令官에게 狀況報告도 안하고 命令指示도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判斷이고 다대수 우리 國民들의 心證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證人은 아까 答辯중에 그 어떤 報告도 안 받고 命令도 안했다고 하면서도 유난스럽게도 꼭 한가지 당시 31師團長인 鄭 雄將軍이 現地の 空輸部隊指揮官에게 警察만으로는 示威鎮壓이 불가능하니 道廳으로 出動하라고 命令했다는 그 사실만은 證人이 大隊長으로 부터 직접 報告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本人에게 불리한 것은 報告를 안받았고 他人에게 불리한 것은 報告를 받

있다는 證人の 答辯態度를 보고서 저는 證人 이 과연 그 용맹무쌍한 空輸特戰部隊司令官인 가 나아가 지금 현재 그토록 막강한 執權與 黨의 重鎮인가에 대하여 한가닥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證人은 또 말하기를 暴動鎮壓方式이 警察과 軍이……

(場內騷亂)

○委員長代理 辛基夏 조용히 해 주세요!

○趙洪奎委員 質問이 길 수도 있잖아요!

質問이 계속 되잖아요! 마지막 質問이니까 들어요! 좀 들어요! 質問이 긴 것도 짧은 것도 있잖아요! 오늘은 좀 길게 하겠어요. 質問을 質問이 딱 한가지…

(場內騷亂)

○委員長代理 辛基夏 조용히 해 주세요!

訊問事項은 가사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중에서 前提되는 聽聞會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물어보고 듣는 것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時間內에서 관계되는 사실을 말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自己意思와 反한다고 그래서 訊問節次를 中斷하지 마시고 訊問을 妨害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趙洪奎委員님! 趙洪奎委員님! 옆에 다른 委員님들의 말에 닦하지 마시고 또 다른 委員님들도 協助해 주셔서 곧 訊問이 끝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잘 協助해 주셔서 趙洪奎委員님 계속 訊問해 주시고 그 동안에 조금 中斷되었던 것은 보태어 드리겠습니다.

○趙洪奎委員 證人은 또 말하기를 暴動鎮壓方式이 警察과 軍이 다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꼭 같다면 왜 軍을 投入하겠느냐고 反問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本委員은 警察의 鎮壓方式보다 더욱 강력한 方式의 鎮壓方式을 軍이 취했다는 사실을 間接적으로나마 是認해 준 데에 대하여 不幸중 多幸이라고 생각하면서 軍가운데서도 普通部隊과 空輸特戰部隊의 鎮壓方式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5·18당시 光州에서 지금 다시 생각만해도 무서운病이 되살아나는 空輸部隊의 過剩鎮壓 아니! 大量虐殺이 恣行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 目擊者들이며 被害者들인 光州市民이나 全南道民들이 아닌 餘他 地域의 우리 國民들까지도 이제는 그 實相의

윤곽이나마 짐작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側面에서 이 聽聞會에 나온 證人의 기여를 어느 정도 評價합니다.

오늘 本委員은 證人의 證言을 듣고 몇가지 매우 의아스러운 疑問을 갖게 되었습니다.

證人의 證言에 따르면 자신의 隸下部隊를 光州에 시집보내고 걱정이 많아서 사돈집에 자주 갔다고 했는데 그 시집간 딸인 그 部隊는 친정어머니격 이라고 自稱한 證人의 指揮도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시집쪽 命令을 받았다는 確證도 없는 상태에서 온갖 苦은 일을 저지른 셈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敵陣에 뛰어들어가 自體적으로 혁혁한 戰果를 올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그것도 戰時도 아닌 平時에 敵國도 아닌 自國안에서 그런 部隊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疑問인 것입니다. 이런 疑問에 대해서는 常識을 가진 우리 國民이 判斷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더 이상 言及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證人에게는 5月26日 밤 10時頃 당시 光州戰鬪兵科司令部 司令官인 蘇俊烈將軍으로부터 光州를 武力鎮壓하겠다는 말을 듣고 외로운 判斷을 하셨다고 말하면서 歷史의 罪人이 될지도 모르니 上部에 報告하라고 助言해서 蘇將軍이 李煥性戒嚴司令官에게 電話로 報告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證人의 그 證言을 듣고 歷史의 罪人이 될지도 모른다고 일찌기 그때 豫測한 慧眼에……

○證人 鄭鎬溶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歷史의 罪人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趙洪奎委員 놀라움을 表하면서 그래 우리 故鄉出身인 蘇俊烈將軍에게만 歷史의 罪人이 되게 한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당시 實力者들 證人을 포함한 그 「스트롱맨」들의 비정한 強心臟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證人처럼 무서운 사람을 상대로 訊問하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質問합니다.

證人에게 묻습니다.

첫째 證人의 隸下部隊가 그 유명한 光州戰鬪에서 혁혁한 戰功을 세움으로써 그 部隊의 功으로 證人이 忠武武功勳章 그러니까 倭敵을